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일 반 회 계  
교 도 작 업 특 별 회 계  
범 죄 피 해 자 보 호 기 금

법 무 부

# I . 일 반 회 계

# 1. 세 입

|       |
|-------|
| 사 업 명 |
| 토지대여료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토지대여료 | 457          | 1,277     | 1,277 | 1,277 | 1,277 | -     | -       |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토지대여에 따른 수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1,282 | 511  | 457  | 1,059 |

|       |
|-------|
| 사 업 명 |
| 건물대여료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건물대여료 | 578          | 349       | 349   | 349   | 349   | -     | -       |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건물대여에 따른 수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311  | 569  | 578  | 661  |

|        |
|--------|
| 사 업 명  |
| 기타재산수입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기타재산수입 | 101          | 339       | 339   | 339   | 339   | -     | -       |

가.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출납 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
  - 보조금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각종 국고예금계좌 이자 수입 등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95   | 123  | 101  | 137  |

|         |
|---------|
| 사 업 명   |
| 별금 및 과료 |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별금 및 과료 | 1,342,139    | 1,704,236 | 1,704,236 | 1,461,803 | 1,461,803 | △242,433 | △14.2   |

## 가. 법적 근거

### 1) 검찰 별금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회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③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 **검찰청법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사무규칙**

### 2) 출입국 벌금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사증, 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3.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19. 제33조의2를 위반한 사람
20. 제69조나 제70조를 위반한 사람

○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4.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6.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7.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8. 제51조제1항·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제93조의2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9. 제63조제5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제7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72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이나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한 사람
4. 제74조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사람
5. 제7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6. 제76조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7.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제102조(통고처분)

-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④ <생략>

## 나.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1,392,687 | 1,409,531 | 1,342,139 | 1,215,517 |

|           |
|-----------|
| 사 업 명     |
| 몰수금 및 추징금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몰수금 및 추징금 | 125,164      | 168,839   | 168,839 | 111,163 | 111,163 | △57,676 | △34.2   |

가. 법적 근거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형사소송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리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나.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117,170 | 97,183 | 125,164 | 122,372 |

| 사 업 명 |
|-------|
| 과태료   |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과태료 | 12,895       | 12,167    | 12,167 | 12,167 | 12,167 | -     | -       |

### 가.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447조(재산형 등의 집행)
  -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재판)
  -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결정의 고지)
  - ①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 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나.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8,509 | 9,978 | 12,895 | 11,731 |

| 사 업 명 |
|-------|
| 징계부과금 |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징계부과금 | 63           | 283       | 283   | 283   | 283   | -     | -       |

## 가. 법적 근거

###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과금)

-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징계부과금 등

##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48   | 108  | 63   | 18   |

|       |
|-------|
| 사 업 명 |
| 변상금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변상금 | 56           | 72        | 72    | 72    | 72    | -     | -       |

가. 법적 근거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毀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 나. 세입 개요

-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81   | 334  | 56   | 498  |

|       |
|-------|
| 사 업 명 |
| 위약금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위약금 | 372          | 687       | 687   | 687   | 687   | -     | -       |

가.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②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세입 개요

-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위약금

##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293  | 468  | 372  | 425  |

|       |
|-------|
| 사 업 명 |
| 가산금   |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가산금 | 3            | 12        | 12    | 12    | 12    | -     | -       |

#### 가. 법적 근거

#####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나. 세입 개요

- 각종 경비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95   | 5    | 3    | 690  |

|          |
|----------|
| 사 업 명    |
| 기타경상이전수입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기타경상이전<br>수입 | 1,995        | 7,980     | 7,980 | 7,980 | 7,980 | -     | -       |

가. 법적 근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구역 및 대한민국에  
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3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나. 세입 개요

-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미국측 공무상 손해배상 분담금
  -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대한민국 안에서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분담금
- 명예퇴직수당 및 교육훈련비 반환 등

##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12,414 | 4,170 | 1,995 | 2,529 |

|           |
|-----------|
| 사 업 명     |
| 면허료 및 수수료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면허료 및<br>수수료 | 4,083        | 1,225     | 1,225 | 1,225 | 1,225 | -     | -       |

가. 법적 근거

-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5조(법조윤리시험의 시행)
  - ②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지정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13조(응시수수료)
  -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의 신청)
  -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신청 등)
  -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 법조윤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수수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수수료, 각종 출입국허가증 발급 민원수수료 등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2,140 | 2,703 | 4,083 | 4,559 |

|       |
|-------|
| 사 업 명 |
| 기타잡수입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기타잡수입 | 1,131        | 1,429     | 1,429 | 1,429 | 1,429 | -     | -       |

가.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9조(감정대상 및 기간)
  - ①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여 법원 또는 검찰 및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의뢰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4조(비용)
  - ① 피감정인에 대한 급양 및 수용비, 진료비, 감정료 등 감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전액 의뢰기관으로 징수한 후 이를 국고에 세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수수료, 폐기물 및 불용품 매각대 등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1,294 | 1,088 | 1,131 | 965  |

| 사 업 명             |
|-------------------|
|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면허료 및<br>수수료<br>(수입대체) | 14,069       | 14,313    | 14,313 | 14,313 | 14,313 | -     | -       |

#### 가.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원칙 예외-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함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수료)
 

법 제7조 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원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1통당) : 2만원

#### 나. 세입 개요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시 징수하는 수수료로 2011회계연도부터 수입대체경비로 지정

####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13,595 | 13,955 | 14,069 | 15,522 |

|               |
|---------------|
| 사 업 명         |
|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기타잡수입<br>(수입대체) | 564          | 526       | 526   | 526   | 526   | -     | -       |

가.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원칙 예외-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함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의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나. 세입 개요

-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료로 2011회계연도부터 수입대체 경비로 지정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531  | 560  | 564  | 577  |



|         |
|---------|
| 사 업 명   |
| 기계기구매각대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기계기구<br>매각대 | -            | 22        | 22    | 22    | 22    | -     | -       |

가. 법적 근거

|                                                                                                                                                                                                                                                      |
|------------------------------------------------------------------------------------------------------------------------------------------------------------------------------------------------------------------------------------------------------|
| <p>○ 국유재산법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p> <p>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p> |
|------------------------------------------------------------------------------------------------------------------------------------------------------------------------------------------------------------------------------------------------------|

나. 세입 개요

-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매각대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    | -    | -    | -    |

|           |
|-----------|
| 사 업 명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기타고정자산<br>매각대 | 3            | 716       | 716   | 716   | 716   | -     | -       |

가. 법적 근거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관리법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달청장은 제37조 제1항에 따라 매각을 요청받은 불용품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불용품의 매각을 요청한 중앙관서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li> </ul> </li> </ul> |
|-----------------------------------------------------------------------------------------------------------------------------------------------------------------------------------------------------------------|

나. 세입 개요

- 건물, 기계기구를 제외한 기타 내용연수 1년 이상의 완성재(증축 포함) 매각 수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10   | 11   | 3    | 8    |

## 2. 세 출

| 사 업 명             |  |  |  |  |  |  |
|-------------------|--|--|--|--|--|--|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실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000 | 1031   | 300                  |
| 명칭 | 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국가송무수행 및<br>공익법무관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국가송무수행 및<br>공익법무관 운영 | 3,719        | 2,273        | 2,273 | 2,879        | 2,879 | 606         | 26.7                |

### 4. 사업목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소송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수행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소송의 경우 정부 각 부처 지휘
- 헌법재판의 경우 정부가 당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하여 수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공익법무관을 배치,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법률복지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전 항)
- 헌법재판소법(제25조, 제44조)
- 정부법무공단법(전 항)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전 항)
- 공익법무관관리지침(법무부예규656호)

### ② 추진경위

- 1951.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효율적 수행 및 소송사무의 적정 관리 도모
- 1988. 9.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어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출
- 1994. 12.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5년도부터 사법시험합격자 중 병역미필자를 군복무에 갈음하여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임용,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소송 등에 종사
- 2007. 12. 정부법무공단법 공포('07. 12. 21. 시행) 및 정부법무공단 출범에 따른 정부부처 소송예산 현실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7. 5. 8.)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7년~계속(국가송무수행), 1995년~계속(공익법무관운영)
- 사업규모 : 국가소송(접수 11,207건, 처리5,566건)  
행정소송(접수 45,505건, 처리 26,659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 국가소송 업무 흐름도



### ○ 행정소송 업무 흐름도



| 사 업 명    |  |  |  |  |  |  |
|----------|--|--|--|--|--|--|
| 국가배상금 지급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실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000 | 1031   | 301      |
| 명칭 | 법무활동 | 국가송무수행 | 국가배상금 지급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국가배상금 지급 | 354,758      | 200,000      | 200,000 | 300,000      | 300,000 | 100,000     | 50.0                |

### 4. 사업목적

-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 배상(단, 특별회계·국방부 소관 제외)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 ② 추진경위

- '67년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의한 국가배상금 및 소송비용지급을 목적으로 추진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1967년 ~ 계속
- 사업규모 : 법원판결금(298건, 749,550백만 원), 배상심의회결정금(103건, 788백만원),  
소송비용확정액(349건, 6,321백만원), 소송비용(2,499건, 577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전국 14개 고·지검에서 예산 집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가소송, 행정소송과 관련 있는 정부 각 부처 및 소송에서  
승소한 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 → 배상신청  
또는 국가소송 제기 → 배상결정 또는 확정판결 → 배상금 지급(전국 14개 고·지검  
에서 예산 집행)



| 사 업 명       |  |  |  |  |  |  |
|-------------|--|--|--|--|--|--|
|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실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000 | 1036       | 300        |
| 명칭 | 법무활동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 462          | 416          | 416 | 395          | 395 | △21         | △5.0                |

### 4. 사업목적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 등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여 공단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공단이 국가 등의 소송수행,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2

② 추진경위

- 국가로펌으로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당기간 예산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다른

공단과 달리 설립 첫해에만 운영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다 보니 상당부분 적자가 발생하였고,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해 업무부담 가중됨

- 이는 업무처리에 지장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소송 등에서 국가 등의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2011년부터 국가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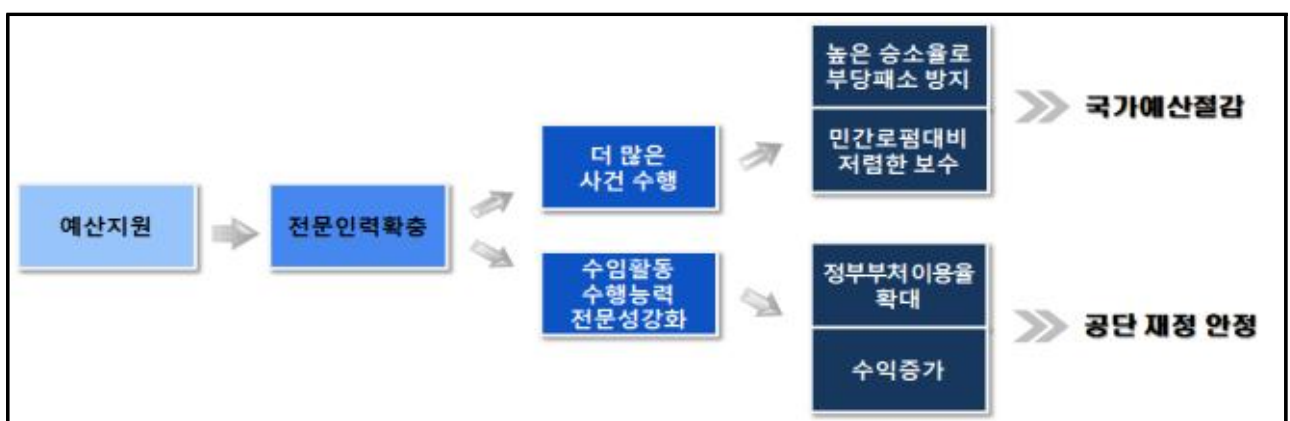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규모 : 소송 1,721건, 법률자문 2,703건, 연구용역 4건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정부법무공단
- 사업 수혜자 : 정부법무공단(궁극적 수혜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보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정부법무공단        | 정액       |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 제1호, 제21조의2 |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실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000 | 1032          | 300           |
| 명칭 | 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국제거래 및 국제<br>통상법률 지원 | 1,210        | 1,138        | 1,138 | 1,096        | 1,096 | △42         | △3.7                |

### 4. 사업목적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등 국제규범의 성안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규범의 통합을 선도하고, 성안된 국제규범의 연구 및 국내입법 반영을 통해 선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민·상사 법제 구축
- FTA, BIT, RCEP 등 각종 통상협상에서 타부처에 대한 법률지원 실시 및 법률 서비스, 지식재산권 집행, 투자 분야 협상 직접 수행과 통상법 연구, 통상 전문 학술지('통상법률') 발간을 통해 국가적 통상 역량 강화에 기여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등으로 성공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등으로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 「국제투자·비즈니스가이드」 발간, 국내외 법률설명회 개최 등으로 중소기업의 국제분쟁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ISD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 지원
- 한편,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각국 중앙당국과의 협력 하에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국과의 법무협력협정 체결 등 교류, 한국법센터 지원 등으로 대한민국 법무행정의 외연 확대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법무실) 제3항 제9호, 제9의2호, 제9의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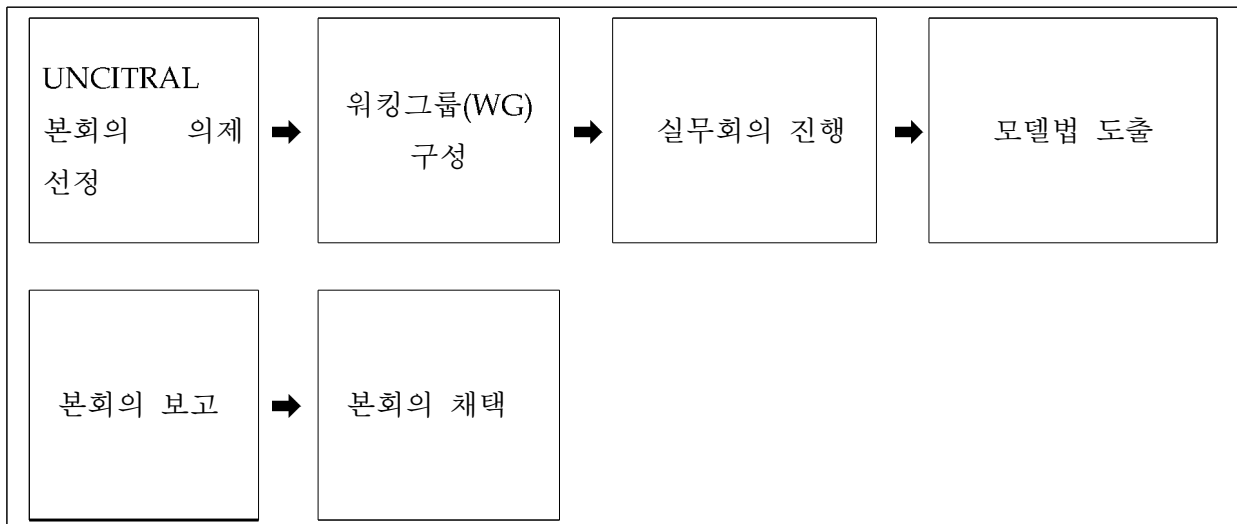
### ② 추진경위

- 2018. 2. 27.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 2018. 3. 7. 제4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 2018. 3. 20.~23. 공정거래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ICN 총회 참석 (인도 뉴델리)
- 2018. 3. 29.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업무협약 체결
- 2018. 5. 3. 미국 중앙당국과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이행현황 관련 회의
- 2018. 1.~6.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사건 지원(누계 41건, 2018. 신규 4건)
- 2018. 1.~6. FTA, BIT, RECP 등 총 29회의 협상 및 대책회의 참가
- 2018. 1.~6.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누계 160명)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누계 28곳)
- 2018. 1.~7.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총 7회 개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운영(총 209건 자문)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지원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4~ 계속사업
- 사업규모 : 2018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실무진 회의 참석 (26회), FTA 협상과정 참가 (24회),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진행(422건)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 사 업 명            |  |  |  |  |  |  |
|------------------|--|--|--|--|--|--|
| 개발도상국법제정비지원(ODA)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실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000 | 1032          | 305                |
| 명칭 | 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ODA)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개발도상국<br>법제정비지원(ODA) | 154          | 167          | 167 | 161          | 161 | △6          | △3.6                |

### 4. 사업목적

-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우리나라의 법제 및 노하우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관심과 전수요청 증가
- 법제정비 지원을 통한 법치주의의 확립은 장기적인 원조효과가 크고, 높아진 위상에 발맞추어 국제사회에의 기여 필요성 증대
- 법무한류(K-Law) 사업의 주무부서로서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 성과 축적 및 개발도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5조 제1항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등), 제9조 제3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법무실) 제5항 제5호, 제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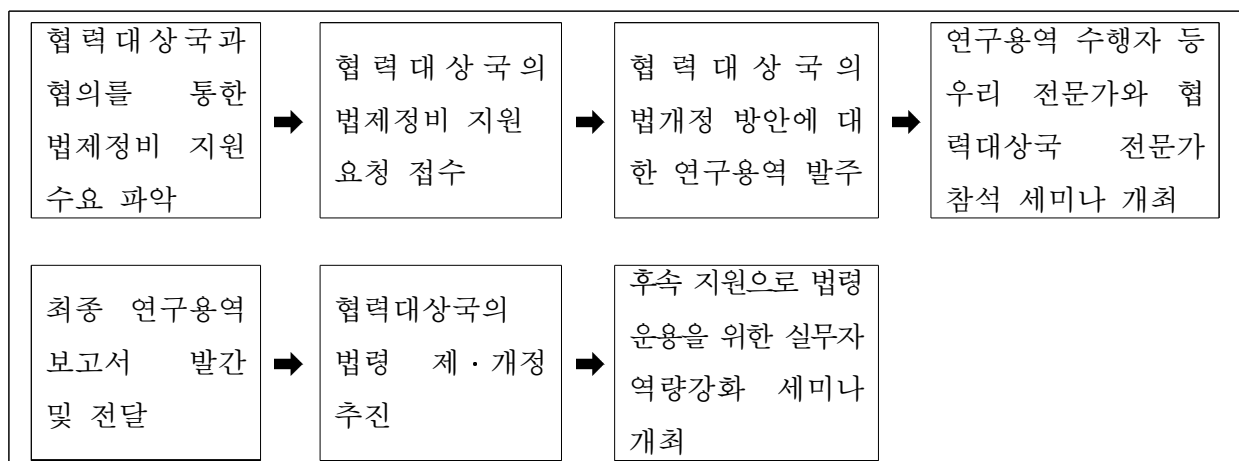
### ② 추진경위

- 2018. 4. 몽골 법률구조법제 및 법률구조공단 현대화를 위한 제2차 국제세미나 개최
- 2018. 7. KOTRA와 협업하여, 「파라과이 외국인투자자 옴부즈맨제도 정비 지원을 위한 국제세미나」 현지 세미나 개최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1~ 계속사업
- 사업규모 : 2018년 해외 현지 국제세미나 4회(몽골, 파라과이, 라오스, 캄보디아), 국내 국제세미나 1회(파라과이) 개최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
|-----------|
| 사 업 명     |
| 기업환경지수 개선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실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000 | 1032          | 307       |
| 명칭 | 법무활동 |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 기업환경지수 개선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기업환경지수 개선 | 305          | 298          | 298 | 298          | 298 | -           | -                   |

### 4. 사업목적

- 각국의 기업환경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를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성과를 세계은행과 각국에 알려 기업환경지수 상승을 도모
- 투자유치 확대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기업환경 개선방향을 도출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7조(법무에 관한 사항), 제32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법령 연구), 제10조, 제11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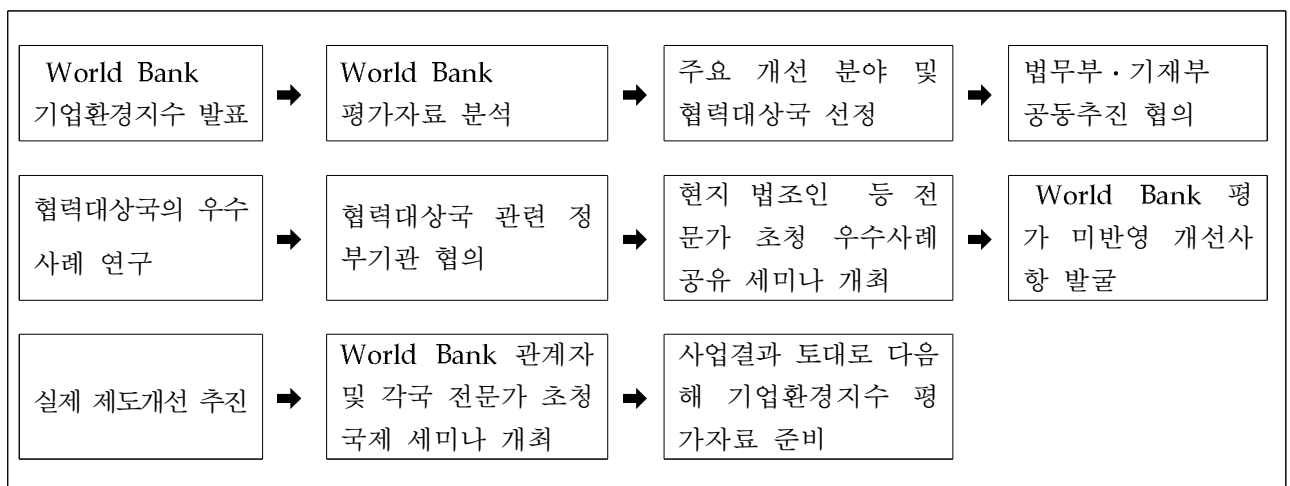
## ② 추진경위

- 법무부·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우리나라와 협력 대상국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현지 세미나 개최, 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으로 협력 대상국의 기업 환경개선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지수를 상승시켜 투자유치 확대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환경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 2018. 6.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노르웨이 현지 세미나 개최
  - 2018. 6.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개선 영국 현지 세미나 개최
  - 2018. 8. 러시아 기업환경 법제개선을 위한 현지 컨퍼런스 개최
  - 2018. 11. 기업환경지수 서울 국제컨퍼런스 개최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기업환경지수개선 국제컨퍼런스 개최 1회, 해외 현지세미나 개최 3회(노르웨이, 영국, 러시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우리나라 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실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000 | 1033       | 300         |
| 명칭 | 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국민편익증진<br>법제정비 | 1,229        | 1,157        | 1,157 | 1,041        | 1,041 | △116        | △10.0               |

### 4. 사업목적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사법령의 지속적 정비와 효율적 시행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경제 활성화 실현에 기여
- 국민의 재산관계·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생의 기본법인 민법과 그 밖의 민사법령을 선진화
- 50년 만의 민법 전면개정, 재판의 실효성 확보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법령 정비
- 기타 민원 질의·해설 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집합건물법·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시행령 등
- 정부조직법 제27조(법무에 관한 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제9조 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법령 연구, 법무자료 발간 및 도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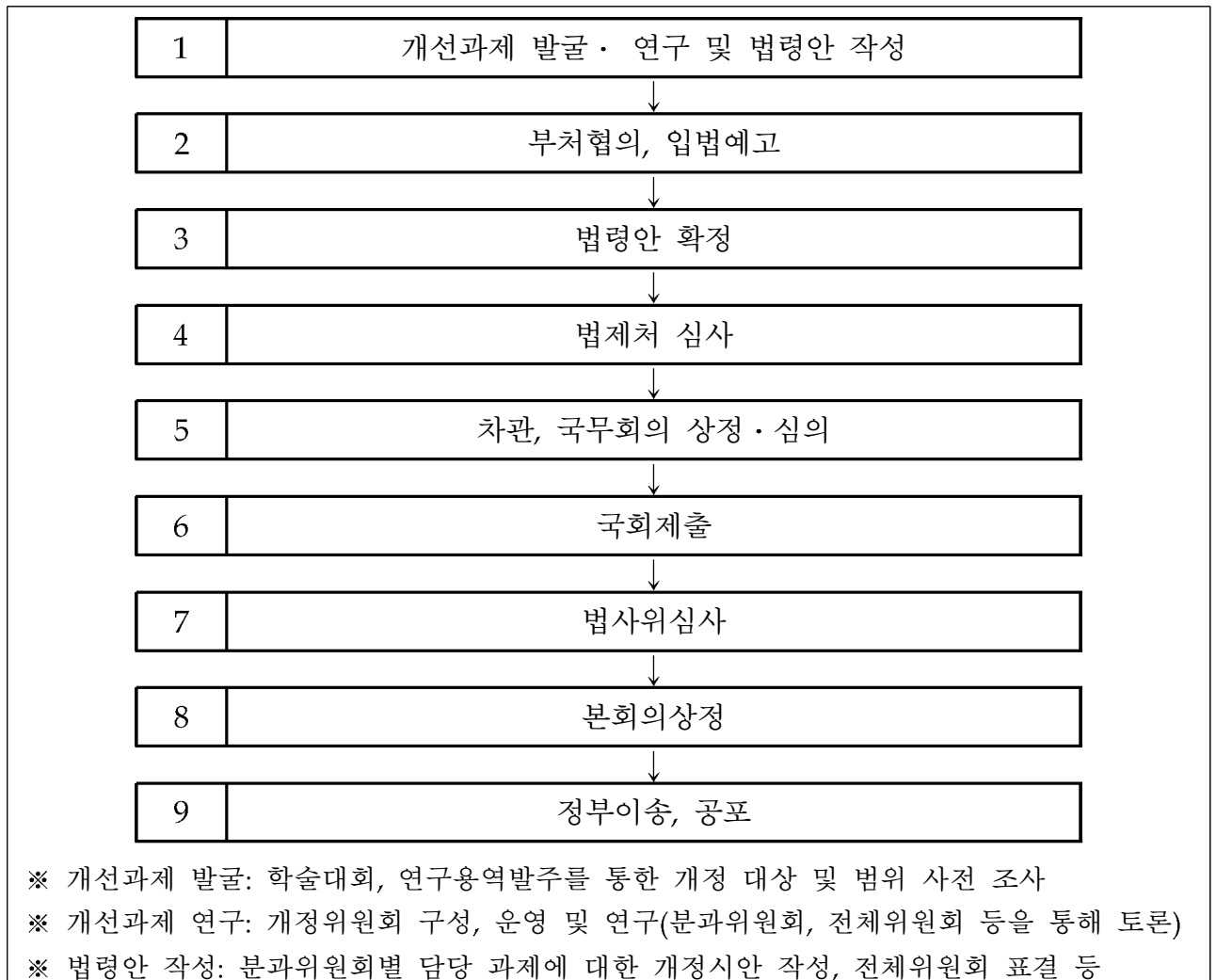
### ② 추진경위

- 2018.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8. 3.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18. 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18. 9.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8. 10.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0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민법 등 75개 법령(법률 49개, 대통령령 등 26개)에 대한 제·개정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실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000 | 1033       | 304                 |
| 명칭 | 법무활동 |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 2,401        | 4,596        | 4,596 | 3,459        | 3,459 | △1,137      | △24.7               |

### 4. 사업목적

- 상사 관계 법령의 체계적 정비로 기업 활동의 기본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선진화
-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창업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의 기반 마련과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기업규제 개선사항의 지속적인 발굴과 상사법 분야의 주요 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 개최 등 상사 법제 분야 선진화를 위한 법제 연구 추진
- 상사법 분야의 주요 국내외 학회 및 회의 참여 등을 통해 상사법제의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이론과 실무, 글로벌 스탠더드가 조화된 선진 상사 법제 구축

-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창업보육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 새로운 기부 방법인 공익신탁 제도 정착을 통해 기부와 나눔의 문화 확산
- 소송 외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로 사회갈등비용을 감소시키고, 국제중재사건 유치에 위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재도약의 발판 마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상법, 상법시행법, 상업등기법, 신탁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등
- 정부조직법 제27조(법무에 관한 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법령 연구)

### ② 추진경위

- 2018. 2. 최고금리인하 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 2018. 5. 어음만기 단축 위한 전자어음법 시행
- 2018. 11. 「상법」 보험편 개정
- 2018. 11. 세계은행·중국정부 공동주최 기업환경개선 컨퍼런스
- 2018. 11.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집단소송제 확대도입」 등 공정경제 추진을 위한 「공정경제전략회의」 공동주최
- 2018. 12. 제한능력자 개편 관련 개정 「상법」·「상업등기법」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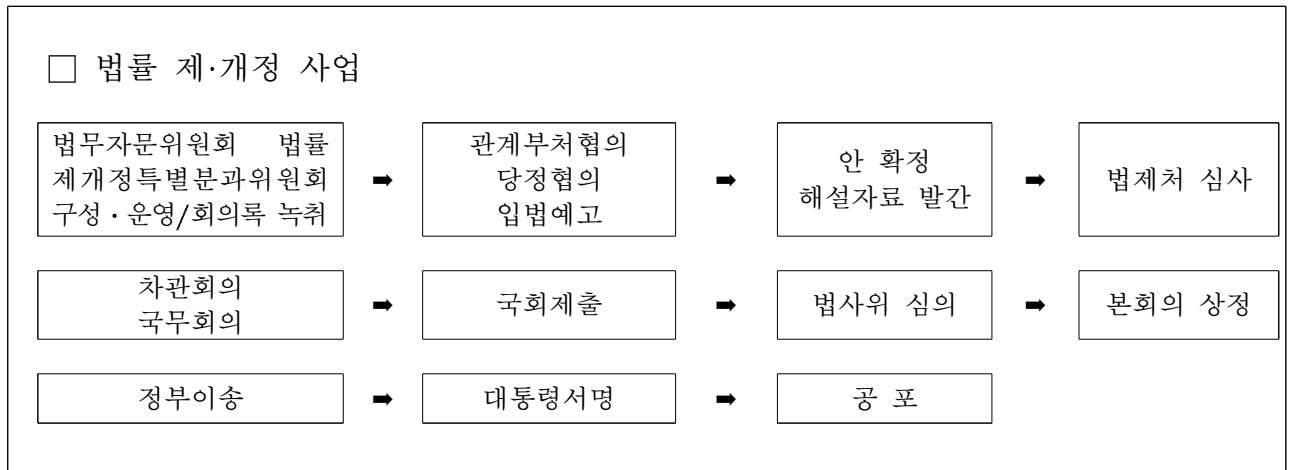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7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선진법제포럼 개최,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기업,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대한상사중재원       | 정액       | 중재법 제40조 등       |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실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000 | 1038          | 300          |
| 명칭 | 법무활동 |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공증제도운영 및<br>활성화 | 1,938        | 572          | 572 | 714          | 714 | 142         | 24.8                |

### 4. 사업목적

-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선진법률서비스 인프라 구축
  - '10. 8. 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 전자공증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
  - '18. 1. 부터 화상공증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강화
- 공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분쟁예방 및 선진 법률문화 조성
  - 공증제도의 예방사법기능을 강화, 서민 법률분쟁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선진법률문화 조성으로 공정한 사회 구현
  -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공증인 직무교육, 공증사무 감사·징계 등 공증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증인법 제78조(감독기관),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80조(서류의 검열), 제81조(이의신청),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제83조(징계의 종류), 제84조(징계기관),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제85조(징계위원회), 제85조의2(징계협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제85조의3(제척 사유), 제85조의4(과태료의 집행), 제85조의6(위임규정), 제85조의7(「형사소송법」등의 준용)
- 공증인법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 등의 보존 등),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제66조의10(위임규정),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보급)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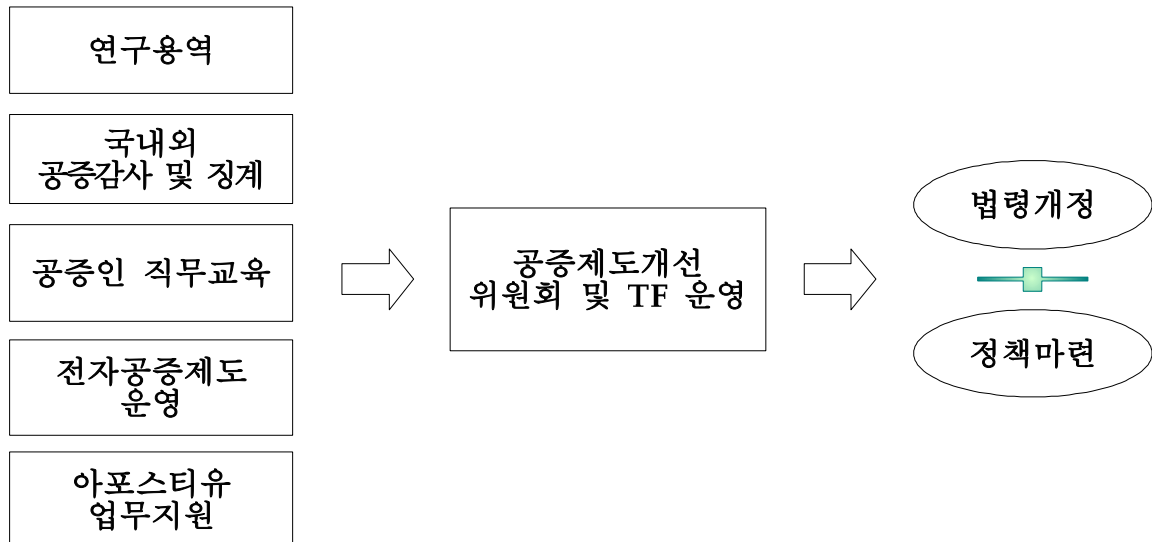
- 2017. 12. 화상공증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개정 공증인법 공포·시행
- 2018. 1. ~ 12. 총 176곳 공증사무소 감사, 1회 공증징계위원회 개최, 총 31명 징계(임명공증인 2명, 인가공증인 14곳, 공증담당변호사 15명)
- 2018. 2. ~ 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 구축 완료
- 2018. 5. ~ 6. 지정공증인 대상 전자공증시스템 시범서비스 운영
- 2018. 6. 19. 화상공증제도 시행을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및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2018. 6. 20. 화상공증제도 시행

##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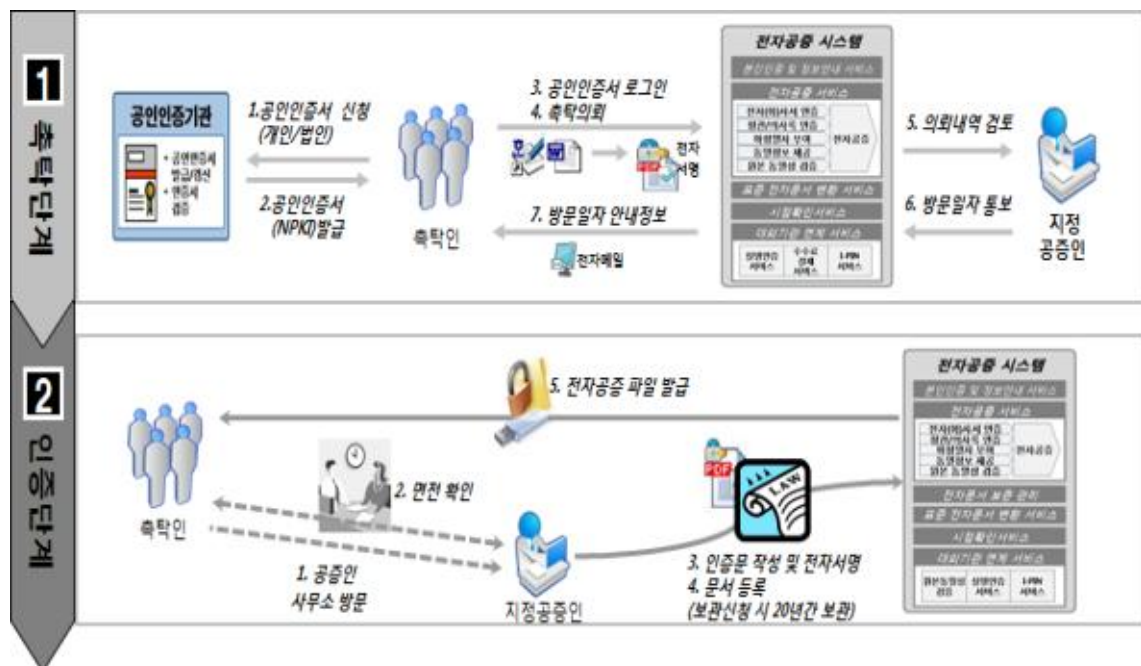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09 ~ 계속
- 사업규모 : 공증인 335명·곳(임명공증인 77명, 인가공증인 258곳), 공증처리건수 약 276만건('18. 1. ~ 11.)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 공증제도 업무 절차



## - 전자공증시스템 진행 절차



|            |
|------------|
| 사 업 명      |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실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000 | 1038          | 303        |
| 명칭 | 법무활동 |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변호사제도의<br>선진화 | 1,089        | 2,378        | 2,378 | 925          | 925 | △1,453      | △61.1               |

### 4. 사업목적

- 법조환경 변화에 따라 변호사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변호사 관리·감독 및 비위예방 강화,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등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의뢰인과 변호사의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 추진
- 법조윤리협의회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지원, 민·상사 법률의 지속적·체계적 연구 및 한국법률가대회 개최를 위한 한국법학원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 변호사법 제41조(설립절차)
- 변호사제도개선 및 징계 :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설치) 등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 제89조의3(법조윤리협회의의 조직·운영 및 예산)
-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지원 :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0항
- 한국법학원 지원 :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2조(보조금)

### ② 추진경위( 18년 추진실적 2~3개 정도만 작성해주세요)

#### ○ 변호사제도 개선(위원회 운영 등)

- 2018. 5. ~ 6. 제3기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출범 및 운영
- 2018. 6. 제4기 마을변호사 1,409명 신규위촉
- 2018. 7. 매경 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마을변호사 수상
- 2018. 12.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행사 개최

####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

- 2018. 1. 수임자료검토특별위원회 개최
- 2018. 1. ~ 12. 법조윤리 교육 실시(총 8회)

#### ○ 변호사시험합격자 실무연수 지원

- 2018. 5.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실시

#### ○ 한국법률가 대회

- 2018. 10.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 ○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

- 2018. 1. ~ 2018. 12. 민·상사 전문연구 과제 실시·결과물 산출
- 2018. 12.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법원·법무부·한국법학원)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사업규모 : 제도개선위원회 2개분과, 변호사 등록인원 25,698명, 법조윤리관련 수임자료 심사 895명, 징계개시신청 등 233명,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561명('18.말 기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변호사제도의 선진화), 민간경상보조(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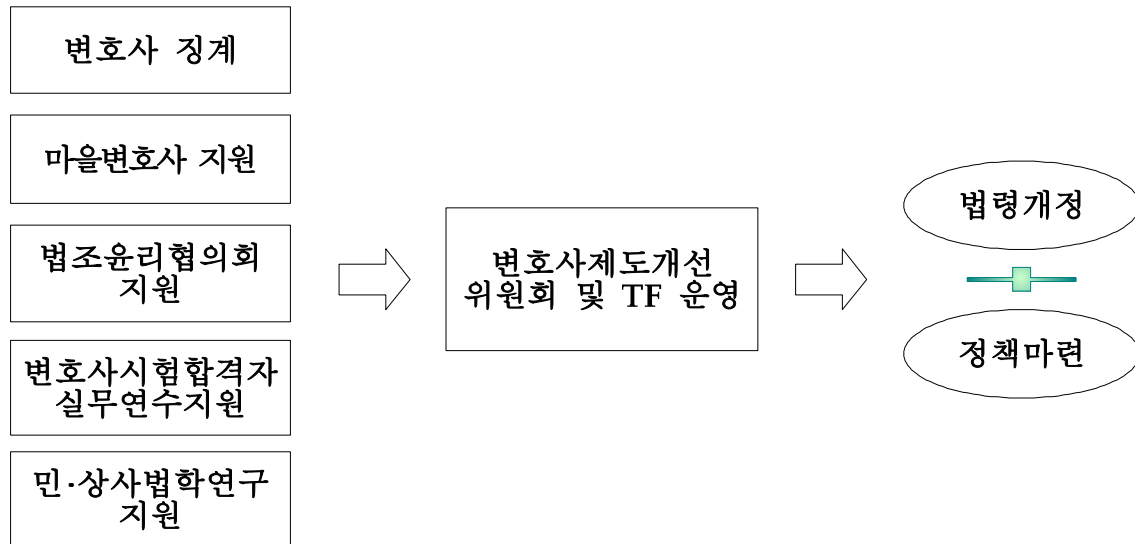
연수 지원)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법무실), 법조윤리협의회, 한국법학원, 대한변호사협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변호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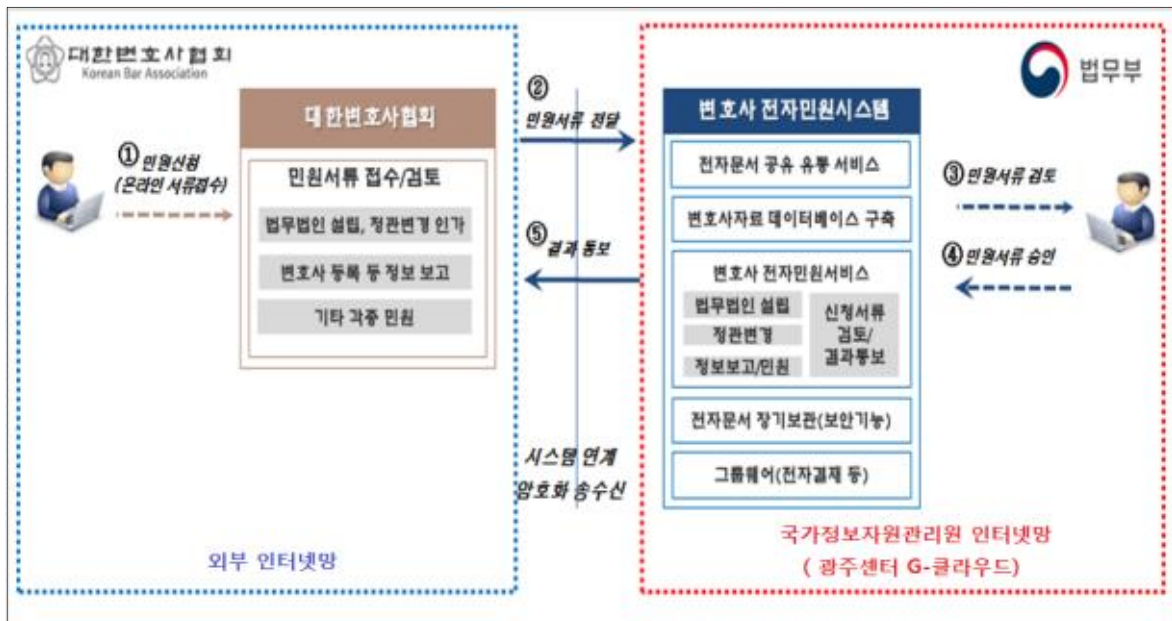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법조윤리협의회       | 정액       | 변호사법 제89조의3      |
| 한국법학원         | 정액       | 한국법학원육성법 제2조     |
| 대한변호사협회       | 정액       | 변호사법 제21조의2      |

## 7. 사업 집행 절차

- 변호사 제도개선 등



-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법무법인 설립, 정관 변경 등 처리 절차)



| 사 업 명             |  |  |  |  |  |  |
|-------------------|--|--|--|--|--|--|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실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000 | 1035  | 300            |
| 명칭 | 법무활동 | 법조인양성 | 변호사시험및법조윤리시험관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변호사시험 및<br>법조윤리시험 관리 | 3,715        | 3,190        | 3,190 | 3,199        | 3,199 | 9           | 0.3                 |

### 4. 사업목적

-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능하고 참신한 법조인 선발
- 법률시장 개방 등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구축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 조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변호사시험법 제3조(시험실시기관)
- 변호사시험법 제8조(시험의 방법)

### ② 추진경위 : 18년 부분 작성

- 변호사시험 : 2007. 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로스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2. 1월 최초 변호사 시험 실시(매년 1회 실시), 2018년 제7회 시험 실시
- 법조윤리시험 : 2009.8. 변호사시험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호사 시험 필수 과목 중의 하나인 법조윤리시험을 2010. 10. 9. 최초 실시(매년 1회 실시), 2018년 제9회 시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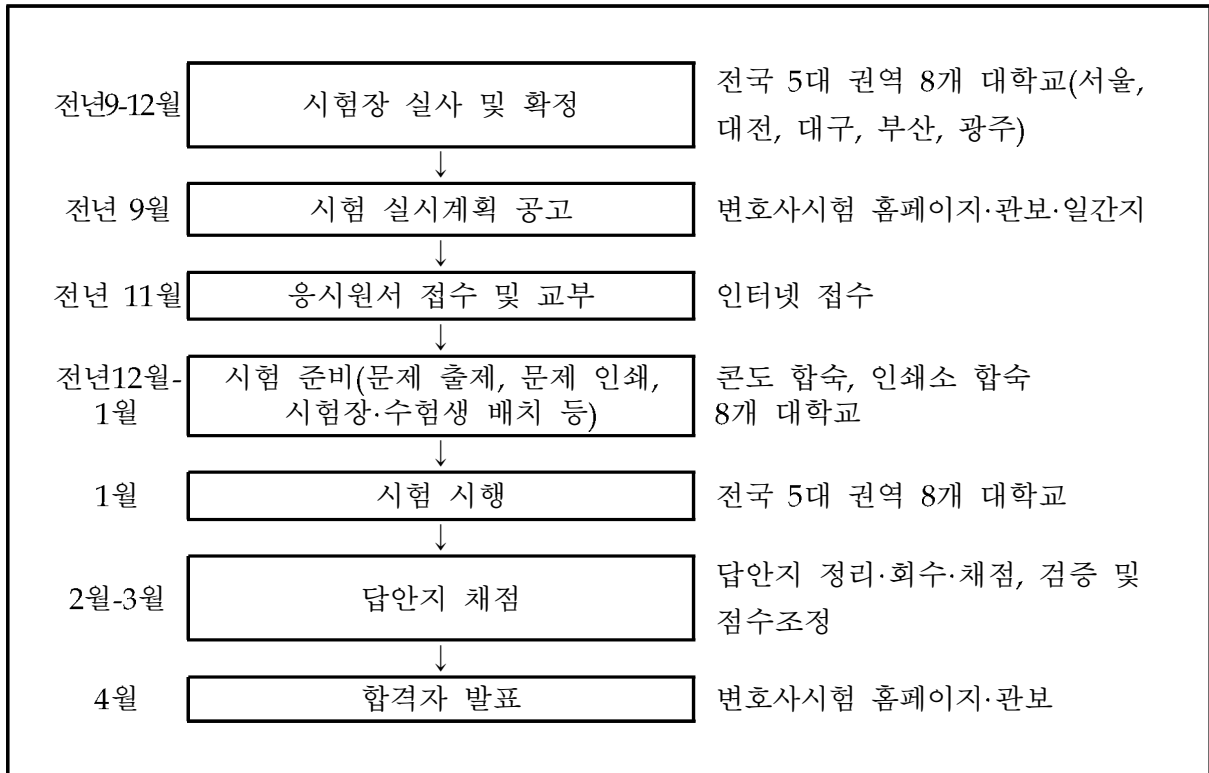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18년 변호사시험) 3,240명 응시/1,599명 합격  
( '18년 법조윤리시험) 2,863명 응시/2,724명 합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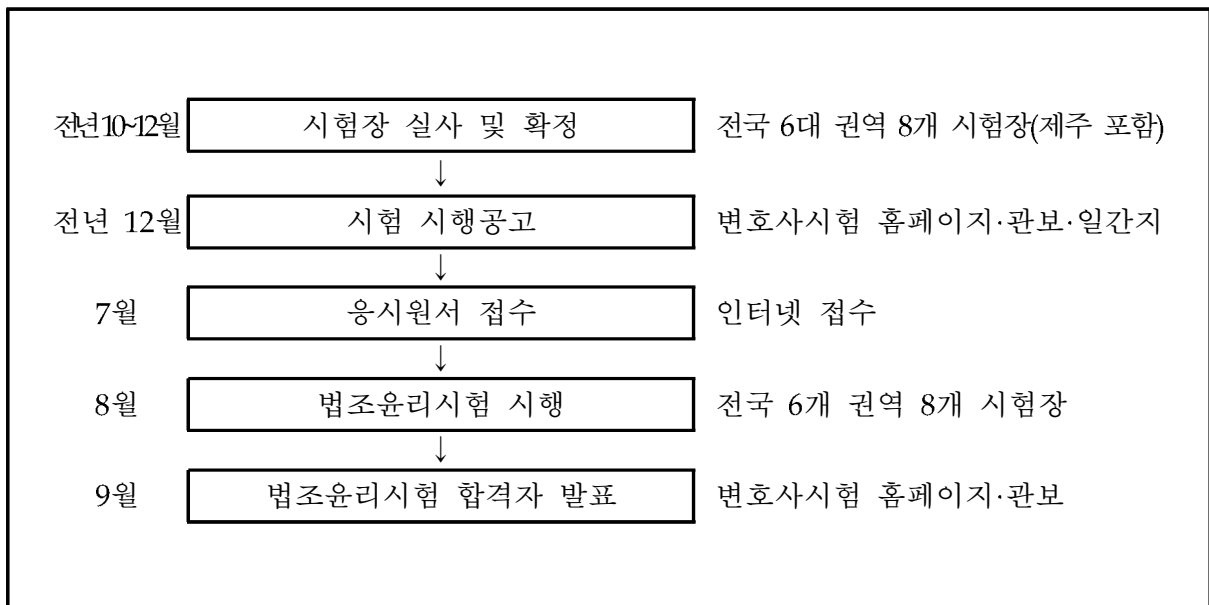


## 7. 사업 집행절차

### ○ 변호사시험



### ○ 법조윤리시험



| 사 업 명         |  |  |  |  |  |  |
|---------------|--|--|--|--|--|--|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실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000 | 1041          | 300           |
| 명칭 | 법무활동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통일대비<br>법률통합 실질화 | 562          | 503          | 503 | 504          | 504 | 1           | 0.2                 |

### 4. 사업목적

-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통일법제 통합DB 내실화, 북한법령 및 통일대비 법률쟁점 심층 연구로 통일대비 법무인프라 확충 및 통일준비를 구체화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에관한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9조 제3항 제22호 내지 제24호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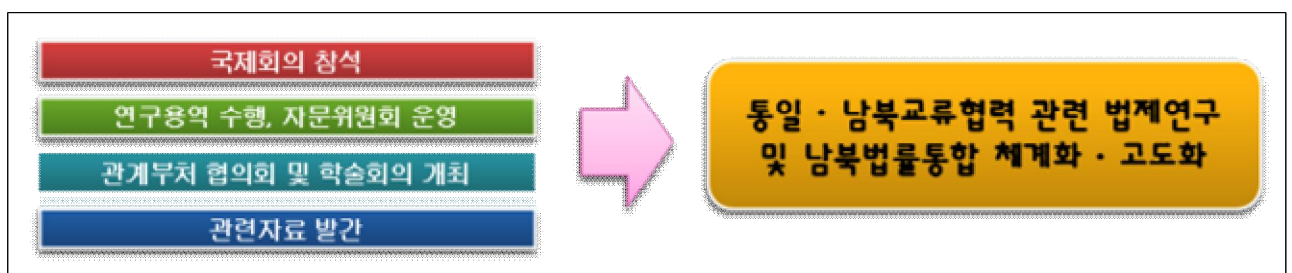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은 ① 법무부 및 각 부처의 법률통합 작업을

- 실질적으로 지원, ② 남북법률통합(안)을 곧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비,
- ③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2002년 '베니스위원회 참여사업' 목적으로 최초 예산 배정
  - ※ 베니스위원회는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
- 2006. 6. 1. 베니스위원회 정회원국 가입
- 2006년부터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연구'로 사업명칭 변경 및 사업 목적 확대
- 2010. 2. 정부의 대북정책 공유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축적된 통일 법제 관련 연구성과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연 4회)
- 2011년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률통합(안) 마련 등을 위한 '통일대비 남북법률 통합 실질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 배정
- 2012. 5.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연구 사업'과 '통일대비 남북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을 과목구조 개편하여 하나의 단위 사업인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으로 통합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규모 :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 제7기 통일과법률 아카데미 운영, 통일법제 통합DB 운영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 사업 수혜자 :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법률구조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인권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 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10  | 1131 | 300  |
| 명칭 | 인권활동 | 법률구조 | 법률구조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응자 | 국고보조율(%) | 응자율 (%) |
|----|----|----|----|----|----------|---------|
|    |    |    | O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법률구조  | 47,742       | 50,264       | 50,264 | 54,761       | 54,761 | 4,497       | 9.0                 |

### 4.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송대리,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소외 계층의 기본적 인권옹호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택임대차 법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 도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 제12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7조 【재판받을 권리】
- 법률구조법 제2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책무】

- 법률구조법 제4조 【보조금의 지급】
- 법률구조법 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 법률구조법 제7조 2항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국가 부담의무】
  - 사회·경제적 약자(대통령령으로 규정)에 대해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비용을 부담
- 법률구조법 제10조 【사무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5조 【예산의 지원】
  - 국가는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추진경위

- '56. 8. 여성법률상담소 창설
- '72. 7. 대한법률구조협회 발족, 법률구조사업 추진
- '87. 7. 법률구조법 제정
- '87. 9.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
- '88.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법인 등록
- '94.12. 법률구조법 개정(공익법무관 법률구조 업무 종사)
- '96. 6.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사건 법률구조
- '00. 7. 대한법률구조공단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 법률구조 실시
- '02. 5.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법인 등록
- '08. 3. 법률구조법 개정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17년 법률구조실적
  -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가사 등 법률구조 149,446건, 형사변호 17,791건, 법률상담 1,373,195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민사, 가사 등 법률구조 16,666건, 법률상담 130,918건)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민사, 가사 등 법률구조 4,807건, 법률상담 19,110건)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사업 수혜자 :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등 사회·경제 약자
  - 범죄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업인, 임금채불근로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등
  -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임대차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 반환, 임차주택 유지수선의무, 기타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당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수지차보전    | 법률구조법 제4조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수지차보전    | 법률구조법 제4조        |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수지차보전    | 법률구조법 제4조        |

## 7. 사업 집행절차

###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 중기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1월)</li> <li>· (제출) 공단 → 법무부</li> </ul> |



|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제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구조사업 예산 편성 및 제출(5월)</li> <li>· (수립) 법률구조 실적, 국정과제 등 검토</li> <li>· (제출) 공단 → 법무부</li> </ul> |



| 사업계획 편성 및 승인신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편성</li> <li>○이사회 의결 및 법무부 승인 신청(12월)</li> </ul> |



| 법률구조사업 수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구조 절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보고(월별·분기별·연도별)</li> <li>· 국정과제 등 관리</li> <li>○공단 업무 자체평가 및 직원 성과관리(반기별)</li> <li>○기재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li> <li>· 고객만족도 제고 계획 수립 및 추진(연중)</li> <li>○감사실의 정기·특별감사 실시</li> <li>○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실시</li> </ul> |

### 법 무 부

| 중기사업계획의 검토 및 제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검토 및 제출(1월)</li> <li>· (제출) 법무부 → 기재부</li> </ul> |



| 예산 제출 및 협의·확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출 및 협의) 법무부→기획재정부(6·8월)</li> <li>○(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 기획재정부 → 국회(9~12월)</li> </ul> |



| 사업계획 승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12월)</li> <li>· 사업의 적정성, 예산 편성지침 준수 여부 등 검토</li> </ul> |



| 사업 집행의 관리·감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추진 현황의 관리·감독(월 1회)</li> <li>·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li> <li>·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등 국정과제 추진상황 관리·점검 및 점검 결과 총리실 보고(정기·수시)</li> <li>○예산 집행 실적 감독(분기)</li> <li>· 세출예산 집행지침 준수 여부 등</li> <li>○인권구조과 지도점검(수시)</li> <li>· 예산집행 및 사업운영 실태 등 현장 점검</li> <li>○감사담당관실 정기감사</li> <li>· 법률구조사건 처리 실태, 국고보조금 집행 적정성, 예납금·보관금 관리 현황, 사건처리 규칙 준수 여부</li> <li>○결산 승인(익년 4월)</li> </ul> |



| 기재부, 국회, 감사원(관리·감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li> <li>○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및 국정감사</li> <li>○ 감사원 감사</li> </ul> |

| 사 업 명             |  |  |  |  |  |  |
|-------------------|--|--|--|--|--|--|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인권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100 | 1131 | 301                  |
| 명칭 | 인권활동 | 법률구조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br>법률홈닥터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서민 법률보호를<br>위한 법률홈닥터 | 4,005        | 4,227        | 4,227 | 4,418        | 4,418 | 191         | 4.5                 |

### 4. 사업목적

-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
-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 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출장·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27조 제1항(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9호 및 제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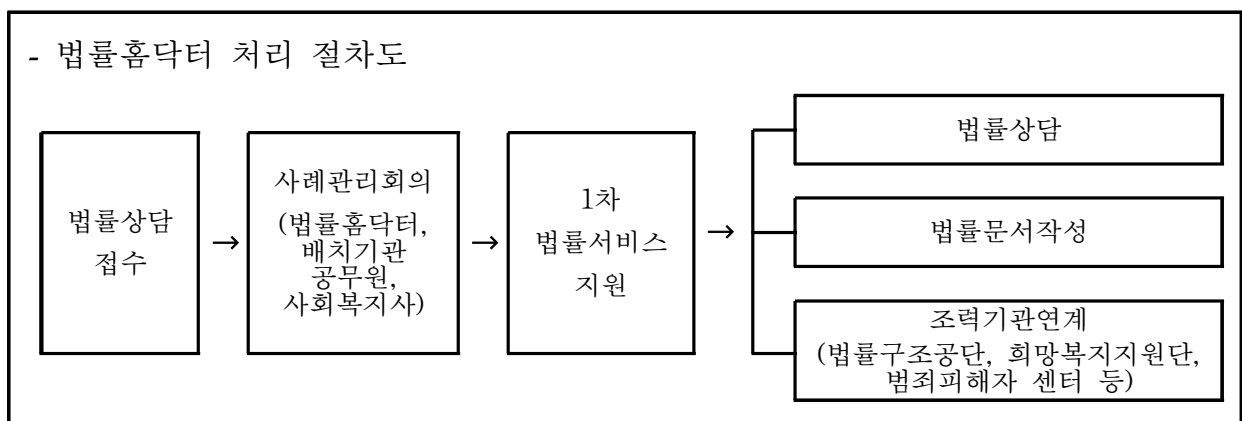
- 법률구조법 제2조의2 제1항,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 제3호, 제7조 제1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제3항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1. 4.~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에 연구용역 시행
  - 2011. 4.~2012. 3.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시범사업」 실시
    - ※ 강서·광진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공익법무관 3인을 1명씩 배치
  - 2011. 7. 제8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중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세부과제로 선정
  - 2012. 5. 법률홈닥터 20명 정식채용, 지방자치단체 11곳, 사회복지협의회 9곳 배치
  - 2014. 국정과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세부과제로 선정
  - 2014. 5. 법률홈닥터 20명 신규 채용, 배치기관 20곳에서 40곳으로 확대
  - 2017. 법률홈닥터 20명 신규 채용(‘17. 2월 10명, ‘17. 5월 10명), 배치기관 40곳에서 60곳으로 확대
  - 2017. 국정과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세부과제로 재선정
  - 2018. 5.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65곳으로 확대
  - 2018. 12.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재조정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2년부터 ~ 계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률복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 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인권교육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인권국    | 예산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100 | 1133 | 300  |
| 명칭 | 인권활동 | 인권교육 | 인권교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응자 | 국고보조율(%) | 응자율 (%) |
|----|----|----|----|----|----------|---------|
| 0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인권교육  | 212          | 219          | 219 | 219          | 219 | 0           | 0                   |

### 4. 사업목적

- 「국가 법질서 확립」의 전제조건인 국가 공권력 작용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기능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행정 분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사업 지속 추진
-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 등 흥미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영상물·책자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각종 교재를 개발하고,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권교육 강사진을 양성하는 등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 구축
- 전문성과 현실 적합성 높은 인권교육을 지속하여 법무행정 공무원의 인권에 관한 소양과 인권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인권침해 사건 사전 예방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 2 제2항 제12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제5부,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리정부 2차보고서에 대한 최종건해 제7장(2006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우리정부 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건해(2006년 제20항), 사회권규약위원회의 1995년 최종건해 제16항

## ② 추진경위

- 2006. 5. 법무부의 정부 내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인권국 설립
- 2018. 8. 수립·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제2부 제7장)에서 인권교육은 그 주요 이행과제 중 하나
- 법집행 작용의 현실과 법무행정 공무원의 직무 특성 및 수사관과 피의자, 교도관과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무 적합성 높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법무·검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필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사업규모 : 법무·검찰공무원 약 31,100명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 7. 사업 집행절차

### 인권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 ○ 인권감수성훈련

- 교육대상자 선발→내부강사에 의한 교육실시→교육대상자 사전·사후설문 조사→인권의식향상도 측정 결과 도출

#### ○ 외부강사 교육

- 교육협조의뢰(일선기관 및 외부강사)→방문교육 실시→보고서제출→연말 세미나 개최

#### ○ 검사 및 수사관 1:1 참여·체험형 교육

- 교육대상자 선발→실습교육 실시→외부강사 피드백→보고서제출

| 사 업 명                    |  |  |  |  |  |  |
|--------------------------|--|--|--|--|--|--|
|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인권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100 | 1133 | 301                      |
| 명칭 | 인권활동 | 인권증진 |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법무·검찰<br>조직문화 개선을<br>위한<br>양성평등교육 | 149          | 150          | 150 | 100          | 100 | △50         | △33.3               |

### 4. 사업목적

- 법무·검찰 조직 내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별·세대 간 소통강화 등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정립
-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검찰 조직문화 기반 마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사업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양성평등 기본이념), 제18조(성인지 교육),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성인지 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 등)

### ○ 추진경위

- 2012년도부터 '양성평등교육' 예산 확보하여 교육 실시
  - ※ '18년까지 7년간 집합교육 등 19,050명(340회) 교육 실시
- 법집행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신뢰 받는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인식전환 교육 필요
  - ※ 법무검찰의 성인지 교육 필요성 지적 등(2009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시)
- 성인지감수성 제고, 소통강화 등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도모
  - ※ 경직된 조직문화와 소통부재가 법무검찰 조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법률신문 '12. 4. 3.)
- 법무검찰의 여성검사·공무원 증가에 따른 조직 내 실질적 양성평등문화 정립 필요
  - ※ 법무공무원 20.8%(6,610명/31,731명), 검사 29.4%(610명/2,076명) : '17.12.31.현원 기준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계속
- 사업규모 : 검사, 법무·검찰 공무원 등 매년 약 2,700여명 교육 실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무·검찰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 법무·검찰 양성평등교육 추진계획 수립

- 각 직렬별 양성평등교육 대상 인원 및 횟수 확정
- 법무연수원(연계교육), 양성평등교육진흥원(집합교육) 등과 교육일정 등 협의
- 법무·검찰 양성평등교육계획 수립

### ○ 양성평등교육 시행

- 집합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운영 1박2일, 2박 3일) : 각 직렬별 주무부서 교육대상자 선발 → 확정 → 교육실시 → 사후설문 조사 → 향후 교육계획에 반영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 교육신청 소속기관에 강사 지원
-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 법무연수원 직무교육과정에 연계하여 교육, 강사 지원

| 사 업 명   |  |  |  |  |  |  |
|---------|--|--|--|--|--|--|
| 아동인권 증진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인권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100 | 1133     | 302     |
| 명칭 | 인권활동 | 여성아동인권증진 | 아동인권 증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아동인권 증진 | 179          | 180          | 180 | 171          | 171 | △9          | 5.0                 |

### 4. 사업목적

- 아동학대처벌법 제·개정,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증진 연구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사법영역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및 아동인권 증진을 도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근거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법 제22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 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청구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건관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 근거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5년

- 추진배경 :

- 지난 15년간 아동학대 신고와 판정은 9배 가량 증가(학대판정 '01년 2,105건 → '16년 18,700건)하고, 2016년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로 엮기적인 아동학대사건이 발견되는 등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처벌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아동학대와 아동인권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 한 개 부처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12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복지영역과 사법영역으로 소관사항을 나누어 협력하기로 하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여 '13. 12. 31. 두 법안 국회통과.
- '14. 2. 28. 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범 부처가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 4. 11. 당정협의회, 4. 12. 정책현안점검회, 4. 16. 당정청 협의회, 5. 29.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 '14. 9. 29.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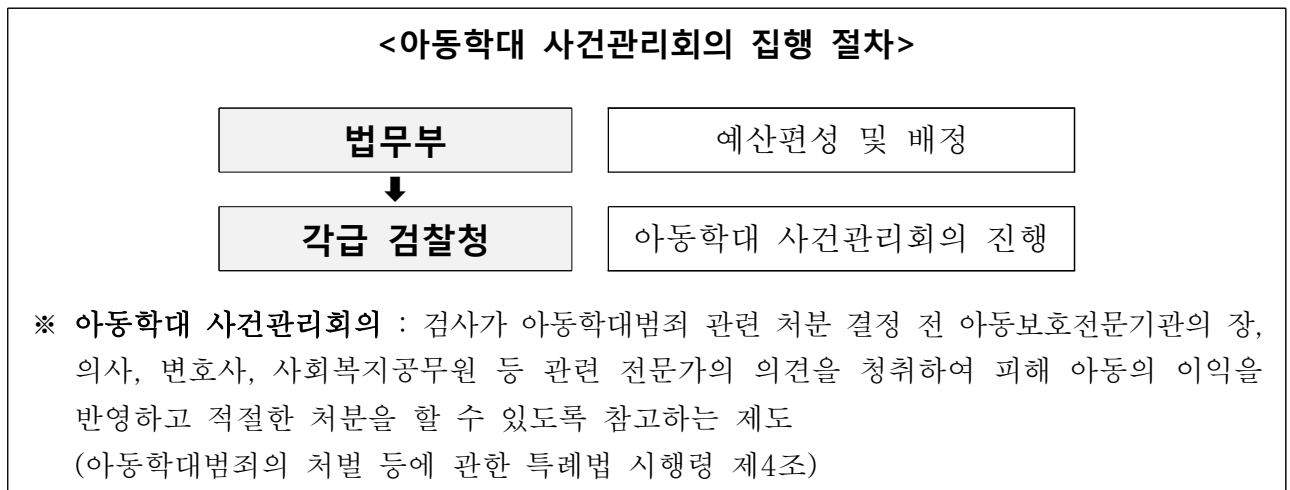
여명에 대한 현장조치·수사·재판·아동보호절차 등 사법영역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교육하게 되었으며, 국내 인권과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됨.

- '16. 3.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법무부·복지부·교육부·여가부·경찰청 등 5개 부처 공동 「범정부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마련.
- ※ '18. 3.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재점검 및 보완
- 이후 신고자 보호제도 법제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교육, 신고의무제 등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활동,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계속
- 사업규모 : 180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18세미만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국제인권역량 강화 및 국제인권DB구축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인권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7000      | 1139   | 300                     |
| 명칭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국제인권증진 | 국제인권역량 강화 및<br>국제인권DB구축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국제인권역량<br>강화 및<br>국제인권DB구축 | 79           | 129          | 129 | 133          | 133 | 4           | 3.1                 |

### 4. 사업목적

-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역량 강화 및 국내인권정책과의 연계 강화
  - 유엔 인권규범에 관한 연구·분석 및 유관부처·민간전문가 협력을 기초로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유엔의 심의·질의·조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통해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인권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인권 보호·증진 체계 발전 도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법무부 인권국은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라 인권옹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 등에 따라 국제인권조약, 법령 등에 대한 조사, 국제인권조약위원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② 추진경위

-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7개의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법무부는 이중 3개 협약에 대하여 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국제인권협약기구의 심의에 대한 대응 절차를 총괄함
- 국제인권매커니즘의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입한 협약 이외에도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특별보고관 방문조사 등 국제기구가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절차가 다양화됨
- 따라서 국제인권업무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국내인권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제인권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통해 국내인권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활용할 필요
- 나아가 시민단체가 국내 현안을 국제인권기구에 진정하는 등 국제기준에 발맞춘 인권정책에 대한 국내적 요구가 증가하고, ICT기술 발전 등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인권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연구할 필요 역시 증가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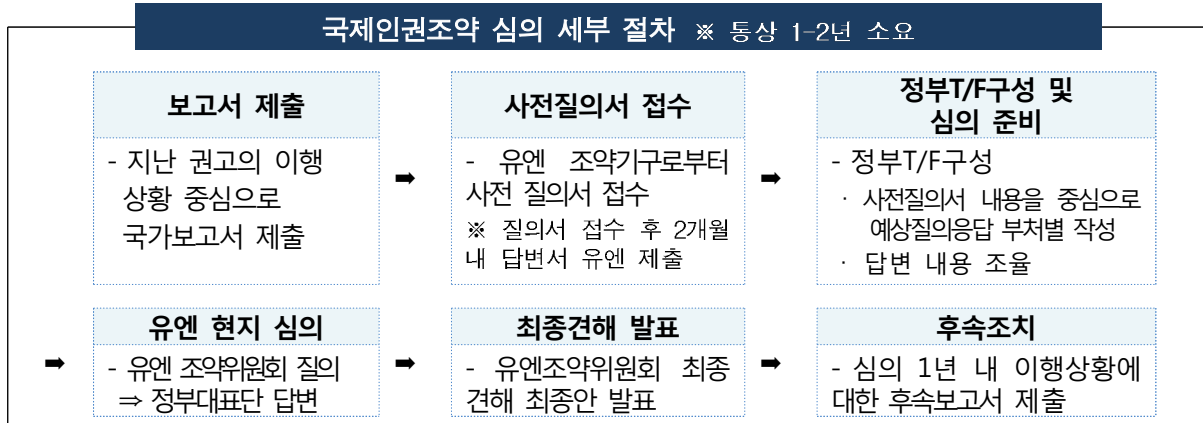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법률영어 에디터 1명, 국제인권 전문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비 등 133백만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인권국
- 사업 수혜자 : 인권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 국제인권조약위원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관련 업무

- 국제인권조약위원회에 제출되는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 대응



- 국제인권조약위원회 등에 제기된 개인진정에 대한 정부답변서 작성
- 기타 국제인권규범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 제출 수시

### ○ 국제인권 현안에 대한 대응업무

- 특별보고관 방문 등 국제인권분야현안 발생시 유관부처 협의

### ○ 강제실종방지협약 등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가입을 위한 연구 및 검토

### ○ 국제인권규범과 국내인권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연구·검토·간담회 개최

| 사 업 명        |  |  |  |  |  |  |
|--------------|--|--|--|--|--|--|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북한인권<br>기록보존소 |    | 020      |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100 | 1139   | 301          |
| 명칭 | 인권활동 | 국제인권증진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북한인권<br>기록보존소 운영 | 1,802        | 269          | 269 | 257          | 257 | △12         | △4.5                |

### 4. 사업목적

- 북한인권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보존·관리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항 ~ 제4항,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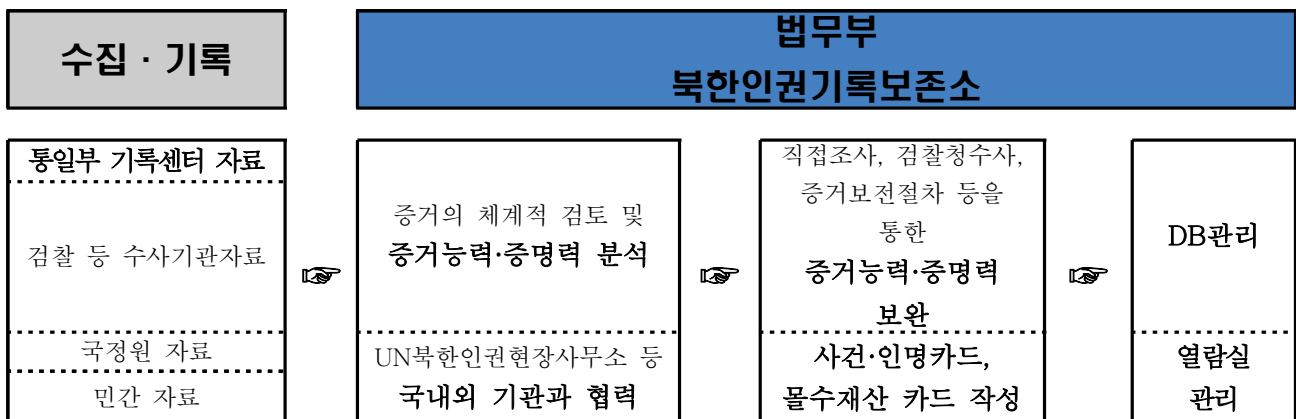
- 사업시작 년도 : 2017년
- 추진배경
  - 북한인권법 제정('16. 3.)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16. 10.)

- 북한인권법 입법취지 : 북한주민의 심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증거 수집 및 이를 통한 인권침해 억제
- UN 등 국제사회 :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 제시
- 국정과제 : 북한주민의 인권 실질적 개선
- 중점과제
  - 북한인권기록의 체계적인 분석·분류·보완
  - 북한인권기록의 DB화
  - 국내외 협력을 통한 법률전문성 활용기반 구축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사업 수혜자 : 북한주민 등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이민정책개발지원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br>정책본부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200  | 1231   | 300      |
| 명칭 | 출입국관리 | 국제이민협력 | 이민정책개발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이민정책개발지원 | 271          | 410          | 410 | 411          | 411 | 1           | 0.2                 |

### 4. 사업목적

- 국제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저출산·고령화사회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의 이민정책 사례연구 및 정책관련 연구용역 실시 등으로 이민정책개발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 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제22조

#### ○ 추진경위

- 외국인정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과 국제교류를 활성화

-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국제역량과 전문성 강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          |                  |

## 7. 사업 집행절차

- 출입국관리해외연구 및 출장계획수립(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위탁교육훈련)  
→ 해외사례연구 출장자 선발 → 출장 및 파견 명령 → 출장업무수행 → 연구  
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 법무부 지식마당 등재(직원 공유) → 직원업무 활용 →  
성과평가(만족도 조사)

| 사 업 명        |  |  |  |  |  |  |
|--------------|--|--|--|--|--|--|
|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br>정책본부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200  | 1231   | 302          |
| 명칭 | 출입국관리 | 국제이민협력 |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IOM이민정책연구원<br>운영 | 1,295        | 1,417        | 1,417 | 1,796        | 1,796 | 379         | 26.7                |

### 4. 사업목적

- 국가간 이주현상을 분석하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연구과제 수행으로 효과적인 외국인정책 수행을 위한 연구원 운영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민간과의 협력) 및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09.6.30)

#### ○ 추진경위

- '07.11.19. 법무부-국제이주기구-경기도 3자간 IOM이민정책연구원 설립 양해각서 체결
- '09.06.30 국제기구인 IOM과 협정체결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IOM이민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외국인정책 관련 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IOM이민정책연구원    | 정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기구인 IOM과의 협정에 의거('09.6.30협정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li> </ul> </li> </ul> |

## 7. 사업 집행절차

- IOM이민정책연구원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 승인 → 국고 교부 → IOM이민정책연구원 사업수행 → 결과보고서 제출 → 결산

| 사 업 명      |  |  |  |  |  |  |
|------------|--|--|--|--|--|--|
|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br>정책본부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200  | 1232       | 300        |
| 명칭 |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출입국사무소<br>시설운영 | 34,303       | 41,311       | 41,311 | 42,061       | 42,061 | 750         | 1.8                 |

### 4. 사업목적

- 출입국 기관 청사 임차료, 공공요금, 유지보수 등 지원으로 원활한 이민 행정 업무 수행  
도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무부령)
- 추진경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출입국관리 소속기관의 시설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          |                  |

## 7. 사업 집행절차

- 소속기관 시설운영비 수요파악 → 예산확보 및 편성 →소속기관 시설운영비 계약→시설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금) 등 예산집행 → 결산

| 사 업 명          |  |  |  |  |  |  |
|----------------|--|--|--|--|--|--|
| 외국인등록증발급수입대체경비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br>정책본부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200  | 1232       | 304            |
| 명칭 | 출입국관리 |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 외국인등록증발급수입대체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외국인등록증발급<br>수입대체경비 | 3,749        | 4,116        | 4,116 | 4,190        | 4,190 | 74          | 1.8                 |

### 4. 사업목적

- 외국인등록증 발급개선을 통한 신분증 위조방지 보안요소 강화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1항
  -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 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2009. 06. 외국인등록증의 허술한 보안요소로 인한 위·변조 관련 문제점 지적
  - 2009. 10. 전문기관 위탁발급, 보안성 강화 등 외국인등록증 개선 추진계획 수립

- 2011. 01.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세부사업 신설 및 ○○○○ 발급 위탁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          |                  |

## 7. 사업 집행절차

-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및 수수료징수 → 등록증 인쇄의뢰 → 발급비용 예산 집행 → 외국인등록증 교부

| 사 업 명   |  |  |  |  |  |  |
|---------|--|--|--|--|--|--|
| 외국인보호관리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br>정책본부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200  | 1233    | 300     |
| 명칭 | 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외국인보호관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외국인보호관리 | 10,561       | 12,487       | 12,487 | 14,474       | 14,474 | 1,987       | 15.9                |

### 4. 사업목적

- 단속 등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된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 시설에 수용하고, 급식·피복·의료관리 등 걱정 처우 후 본국으로 송환함으로써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해제)

#### ○ 추진경위

- 불법체류자 단속 및 강제퇴거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          |                  |

## 7. 사업 집행절차

-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계획 수립(출입국관리법 46조) → 불법고용주 및 외국인 단속(출입국관리법 제18조,21조,47조,81조)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실 및 보호소 수용(출입국관리법 제51조,63조) → 강제출국조치(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사 업 명     |  |  |  |  |  |  |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br>정책본부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200  | 1233    | 300       |
| 명칭 | 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10,682       | 11,610       | 11,610 | 12,337       | 12,337 | 727         | 6.3                 |

### 4. 사업목적

- 단속 등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된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 시설에 수용하고, 급식·피복·의료관리 등 걱정 처우 후 본국으로 송환함으로써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제21조(재한외국인 사회적응 지원, 세계인의날,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 등)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프로그램)
- 난민법 제6조~제45조(난민인정 신청 및 심사, 통역, 난민위원회 설치·운영,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생계비 지원, 재정착난민 수용 등)



○ 추진경위

- '07. 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
- '09. 7. 결혼이민자 대상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실시
- '12.10. 외국국적동포 대상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실시
- '13. 7. 난민법 시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          |                  |

**7. 사업 집행절차**

- 사회통합 계획수립 → 각 기관별 세부계획수립 → 각 기관별 재한외국인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실시 → 결과보고 → 사업별 분석

| 사 업 명         |  |  |  |  |  |  |
|---------------|--|--|--|--|--|--|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br>정책본부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200  | 1233    | 304           |
| 명칭 | 출입국관리 | 외국인체류관리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사회통합프로그램<br>이수제운영 | 6,505        | 6,852        | 6,852 | 7,388        | 7,388 | 536         | 7.8                 |

### 4. 사업목적

- 외국인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언어·문화 등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향후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프로그램)

#### ○ 추진경위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br>운영기관<br>(운영기관 선정 방법 : 공모) | 정액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

## 7. 사업 집행절차

- |                                                                                                                                                          |
|----------------------------------------------------------------------------------------------------------------------------------------------------------|
| <p>▪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계획수립 → 이수제 운영기관 신청(사업계획 제출) → 이수제 운영기관 선정 → 이수제 교육 신청 → 이수제운영기관 교육 대상자 소양평가 → 교육대상자 교육반 편성 → 교육실시 → 평가 → 국적 취득 → 이수제실적보고서 분석 및 평가</p> |
|----------------------------------------------------------------------------------------------------------------------------------------------------------|

|         |  |  |  |  |  |  |
|---------|--|--|--|--|--|--|
| 사 업 명   |  |  |  |  |  |  |
| 검찰청시설운영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3 | 300     |
| 명칭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검찰청시설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검찰청시설운영 | 57,653       | 53,809       | 53,809 | 65,695       | 65,695 | 11,886      | 22.1                |

### 4. 사업목적

- 전국 65개 검찰청 시설의 운용 및 유지 관리를 통한 검찰 수사 지원
- 체계화된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사 보안 강화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구)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동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 2) 추진경위

- 검찰청 시설운영과 관련된 청사유지 및 관리경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 사 업 명             |  |  |  |  |  |  |
|-------------------|--|--|--|--|--|--|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3 | 301                  |
| 명칭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검찰국외훈련 및<br>국제형사협력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검찰국외훈련 및<br>국제형사협력지원 | 5,868        | 6,450        | 6,450 | 6,413        | 6,413 | △37         | △0.6                |

## 4. 사업목적

- 선진 각국의 법률제도·형사정책 연구 및 검찰제도 운영실태 비교·분석을 위한 검사 및 수사관 국외훈련
-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 조약체결 교섭
- 외국 수사기관과의 기관 간 협력협정 및 친선교류
- 국제회의 및 국제형사재판소 참여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757호)
-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9호)
- 범죄인인도법 및 범죄인인도조약,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 국가수형자이송법 및 유럽수형자이송협약 등

### 2) 추진경위

- 법무·검찰의 국제업무 수요 증가
- 검찰공무원이 참석해야 할 국제협상, 국제회의 수요 증가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검찰국외훈련
  - 검찰해외연수 계획수립→ 연수희망자 선발→ 파견명령→ 연수보고서 제출
- 국제형사협력
  - 외교통상부로부터 조약체결의뢰 및 국제회의 참가요청 접수→ 조약체결 타당성·국제회의 참가 타당성 검토→ 예산검토→ 외교통상부에 조약협상회담, 국제회의 참가승인 및 대표단 선정통보 → 사업시행

| 사 업 명      |  |  |  |  |  |  |
|------------|--|--|--|--|--|--|
|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3 | 302        |
| 명칭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과학수사인프라 구축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과학수사인프라<br>구축 | 10,812       | 6,712        | 6,712 | 6,905        | 6,905 | 193         | 2.9                 |

## 4. 사업목적

- 영상녹화 조사를 통한 수사과정의 투명화·과학화로 인권존중의 선진 수사시스템 구현
- 각종 감정·감식관련 첨단 장비도입 및 기법 개발, 전문요원 확충으로 과학수사 역량 강화
- 강력사범 검거율 제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이버범죄 대응 전담인력 운영 및 체계화 구축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2) 추진경위

- 2007. 6.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영상녹화조사팀 구성, 영상녹화조사 관련 증거 방법 다양화 연구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 직무규칙 개정 및 영상녹화 지침마련, 영상녹화조사실 전국청 조기 설치 추진
- 2015. 2.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
- 2016. 12. 기준 전국청 영상녹화 조사실 794실 설치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과학수사장비 도입 및 배정
  - 대검 감정·감식실에서 사용할 감정·감식장비 및 일선 청에 배정할 과학수사장비에 대하여 소요량 파악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 및 수의계약으로 구매 진행 후 배정
- 강력범 검거율 제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유전자감식정보 DB 구축 등

| 사 업 명          |  |  |  |  |  |  |
|----------------|--|--|--|--|--|--|
| 국제형사협력 지원(ODA)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3 | 303            |
| 명칭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국제형사협력 지원(ODA)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국제형사협력지원<br>(ODA) | 750          | 782          | 782 | 743          | 743 | △39         | △5.0                |

## 4. 사업목적

- 아세안 국가에 대한 국제 마약퇴치 지원 사업을 통해 마약 통제역량 강화 및 국제 공조 강화
-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 파견 검사 부담금 및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 사법위원회 부담금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2) 추진경위

- 사전답사 업무협의 → 한국 마약전문가파견 → 수원국 마약관계관 국내 초청 연수  
→ 현지 마약퇴치 캠페인 실시 및 각종 수사 장비 지원 → 고위급 마약류퇴치 국제  
협력회의 초청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 사 업 명        |  |  |  |  |  |  |
|--------------|--|--|--|--|--|--|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4    | 500          |
| 명칭 | 검찰활동 | 검찰업무정보화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검찰업무정보화<br>(정보화) | 33,956       | 31,945       | 31,945 | 30,585       | 30,585 | △1,360      | △4.3                |

### 4. 사업목적

- 검찰업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범죄수법 및 각종 수사 자료 등의 정보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국가 형벌권 강화지원
- 검찰정보화 인프라 개선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운영
- 검찰 정보보안 강화 체계 구축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법률 제14474호)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14579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14080호)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12844호)
-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4호)
- 국가정보화기본법(법률 제13340호)
- 국가정보화기본계획(미래창조과학부)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107호)

### 2) 추진경위

- 1985. ~ 1999. 사건사무 등 검찰업무전산화 사업 추진
- 2003.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 전자 민원시스템 등 구축
- 2007. 정부업무관리, 국가기록관리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 201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 20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RFID 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확산, 전화녹취시스템 고도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 2017.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검찰 특수기록관 운영시스템 개발, 보안 강화를 위한 검찰네트워크 분리 사업 등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및 제안서 작성 → 사업계획 및 제안서 자체평가 → 사업계획 및 제안서 → 외부평가 → 조달청 계약의뢰 → 기술평가 실시 → 가격평가 실시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 사업진행 중간평가 → 검 수

| 사 업 명             |  |  |  |  |  |  |
|-------------------|--|--|--|--|--|--|
| 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3 | 501                  |
| 명칭 | 검찰활동 | 검찰운영 | 침단범죄 및<br>디지털수사(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침단범죄및디지털<br>수사(정보화) | 12,487       | 13,117       | 13,117 | 12,439       | 12,439 | △678        | △5.2                |

### 4. 사업목적

- 범죄증거의 디지털화 및 사이버범죄의 증가에 신속·효율적 대처와 침단범죄 관련 정보 수집 및 수사활동
- 정보화의 역기능인 컴퓨터 관련 범죄의 예방 및 척결
- 디지털화된 범죄증거의 수집·분석방법의 과학화·전문화로 과학수사기반 확충
-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장비, 프로그램의 도입개발 및 전문수사인력 양성을 통한 과학 수사 역량 제고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1995. 8.)

### 2) 추진경위

- 1996. 7. 1.자 ‘개정형법’ 시행에 따라 2개청(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전담수사반 설치
- 2000. ‘해킹·바이러스 등 수사를 위한 수사정보시스템’, ‘해킹 등 컴퓨터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및 지침’개발
- 2004. ‘수사자료 관리 시스템 개발, ‘인터넷이용범죄혐의자 추적시스템’개발
- 2009. 디지털 및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13. 12. 국가 디지털증거송치체계 1차 사업
- 2017. 7. 모바일포렌식도구(MFA 3.5) 개발사업 착수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디스크, DB, 모바일 등) →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분석의뢰 → 분석결과보고서 산출 → 일선 검찰청에 분석결과 통보 및 수사·증거로서 활용

|        |  |  |  |  |  |  |
|--------|--|--|--|--|--|--|
| 사 업 명  |  |  |  |  |  |  |
| 검찰수사지원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5         | 300    |
| 명칭 | 검찰활동 | 수사지원 및 역량 강화 | 검찰수사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검찰수사지원 | 19,387       | 20,074       | 20,074 | 26,794       | 26,794 | 6,720       | 33.5                |

## 4. 사업목적

- 범죄 수사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활동 및 전문 수사역량 강화 지원
- 새로운 양형기준에 상응·조화되는 검찰 사건처리기준 정립
-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검사, 수사관으로 선발하기 위한 심층 실무학습 및 선발 절차 확립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 법원조직법, 동법 시행규칙



## 2) 추진경위

- 기본적인 형사정책 수립, 형사법령정비 등 검찰의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활동을 위해 2004년부터 검찰해외연수 및 수사지도 세제항을 검찰해외연수와 검찰수사지도 사업으로 분리 시행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 사 업 명 |  |  |  |  |  |  |
|-------|--|--|--|--|--|--|
| 수사일반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5        | 301  |
| 명칭 | 검찰활동 |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 수사일반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수사일반  | 66,910       | 77,515       | 77,515 | 86,059       | 86,059 | 8,544       | 11.0                |

## 4. 사업목적

- 검찰 수사 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운용될 수 있도록 제반 지원
- 일반 형사사건 및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786호)

2) 추진경위

- 국가법질서 확립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요범죄 수사 수행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 사 업 명 |  |  |  |  |  |  |
|-------|--|--|--|--|--|--|
| 공안수사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5        | 302  |
| 명칭 | 검찰활동 |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 공안수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공안수사  | 5,823        | 5,601        | 5,601 | 5,264        | 5,264 | △337        | △6.0                |

## 4. 사업목적

-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세력 및 불법 폭력시위 사범에 대한 수사 활동 강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 선거사범, 국가안전위해사범, 불법집단행동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
- 시대 변화에 상응한 공안 역량 강화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공직선거법(법률 제8423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법률 제8424호)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법률 제8364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8158호)
- 근로기준법(법률 제8372호) 등

### 2) 추진경위

- 선거사범의 엄정한 단속 및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공소유지
- 선거사범 수사의 공정성 확보로 편파시비 차단
- 노사분규의 합리적 대처로 선진 노사문화 구현
- 범집행의 노사 형평성 확립 및 노사분규 원인 제거
- 각종 지역·직역 단체의 불법집단행동 엄단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 사 업 명      |  |  |  |  |  |  |
|------------|--|--|--|--|--|--|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5        | 303        |
| 명칭 | 검찰활동 |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국민생활침해사범<br>단속 | 13,018       | 13,354       | 13,354 | 13,191       | 13,191 | △163        | △1.2                |

### 4. 사업목적

- 보이스피싱, 사행성게임장, 불법사금융 등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수사체계 구축
- 조직폭력, 지능형·경제형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강화로 민생치안 확립을 통하여 안정된 서민 생활 기반 조성
- 범죄신고자 등 신변안전조치 지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지원
-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수사 지원
- 대포와의 전쟁 등 신종서민생활침해사범 단속 지원 및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수사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786호)

### 2) 추진경위

- 지능화·홍포화 되어가는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통하여 안정된 국민생활의 기반조성
- 국민생활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민생활침해사범에 총력 수사체제를 갖추어 대응하고, 학원폭력사범 등 청소년기부터 폭력조직 유입가능성을 적극 차단
-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와 서민생활을 불안전하게 하는 민생침해사범 엄단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       |  |  |  |  |  |  |
|-------|--|--|--|--|--|--|
| 사 업 명 |  |  |  |  |  |  |
| 마약수사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5        | 304  |
| 명칭 | 검찰활동 |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 마약수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마약수사  | 4,939        | 4,760        | 4,760 | 4,474        | 4,474 | △286        | △6.0                |

### 4. 사업목적

-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마약류 사범 및 공급조직 적발
- 국내·외 마약사범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지원
- 검찰 주도의 국내 통합 마약수사체제 구축
- 국제마약수사공조 강화로 마약류 밀수 원천 차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 등

### 2) 추진경위

- 1989. 2. 대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 전국 검찰청에 마약수사팀 신설 전국 10개 주요 공항·항만에 검찰 마약분실 설치·운영
- 1996. 11. 전국 검찰청에 「검찰·세관 합동수사반」 편성·운영, 지속적인 마약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수사체제 구축
- 2001. 4. 대검찰청에 마약부를 신설, 전국 34개청에 마약수사팀 구축, 통합수사 체제 전환
- 2009. 3. 공항, 항만 관한 거점청에 인력 재배치하여 전국 36개청에 마약수사팀 구축
- 2011. 5. 마약류공급국가(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와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 신설을 위한 MOU 체결, 2011. 3. - 11. 마약류 공급국가에 대한 마약퇴치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억제
- 2015. 8. 필리핀 북부 루손 지역 필리핀 마약청(PDEA) 7개 지부에 대하여 단속 장비 지원, 직원 교육·훈련을 통한 단속 역량 강화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공조 수사 활성화
- 2017. 12. 전국 6대 강력부 설치 지점(각 1대) 및 인천공항(2대)에 마약류 탐지기 8대 구입·설치 완료하여 신속한 마약류 탐지 및 수사개시 가능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마약류 없는 사회건설」 및 「국제적 마약퇴치·협력 모범국가」 달성을 위하여  
①마약류공급 강력차단 ②마약류수요 철저감축 ③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 ④국제적 협력체제 강화라는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집행

| 사 업 명             |  |  |  |  |  |  |
|-------------------|--|--|--|--|--|--|
| 성범죄등 사회적약자대상 범죄단속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5        | 305                  |
| 명칭 | 검찰활동 |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 성범죄등 사회적약자대상<br>범죄단속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성범죄등<br>사회적약자대상<br>범죄 단속 | 5,054        | 4,561        | 4,561 | 3,306        | 3,306 | △1,255      | △27.5               |

## 4. 사업목적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총력 수사체제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2) 추진경위

- 성폭력 전담검사 T/F 구성 등 검찰의 우수 인력을 성폭력 분야에 배치하여 전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고, TF 운영을 통해 양형기준 정비 및 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마련
-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범에 대한 엄정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 처리기준」 개정·시행('15. 12.)
- '17. 5. ~ '17. 12.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편 등 TF 운영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수사 지침 및 절차 방안 연구, 성폭력 사건 수사매뉴얼 재정비
- '17. 11. 「소년범죄 대책 TF」 운영('17. 11. ~ '18. 4.)을 통해 소년 형사사법체계 및 소년사건의 전문성·다양성 제고 방안 등 논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 사 업 명                |  |  |  |  |  |  |
|----------------------|--|--|--|--|--|--|
| 민관유착비리등 사회공정성저해사범 단속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5        | 306                     |
| 명칭 | 검찰활동 |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 민관유착비리등<br>사회공정성저해사범 단속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민관유착비리등<br>사회공정성 저해사범<br>단속 | 8,017        | 8,350        | 8,350 | 7,741        | 7,741 | △609        | △7.3                |

## 4. 사업목적

-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사 강화
-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비리 척결을 통한 투명성의 구축
- 공공기관 비리, 보조금 비리 수사를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 경제혁신 3개년계획

## 2) 추진경위

- '14. 2. 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실행과제로 '공공기관 비리 근절', '보조금 개혁' 선정
- '14. 5. 19. 대통령 담화, 민관유착비리 척결
- '17. 5. (대통령 공약)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에 대한 엄정한 단속활동 강화, 경제 투명성과 사회 공정성 저해 범죄 엄단,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부패범죄 실효적 단속, 국부유출 비리 엄단, 국고보조금 비리 철저 수사 및 국고 손실 체계적 환수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 사 업 명 |  |  |  |  |  |  |
|-------|--|--|--|--|--|--|
| 공소유지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7       | 300  |
| 명칭 | 검찰활동 | 공판활동 및 형집행 | 공소유지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공소유지  | 1,145        | 1,461        | 1,461 | 1,867        | 1,867 | 406         | 27.8                |

## 4. 사업목적

-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직원교육 등 인적·물적 지원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실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2008. 1. 1.부터 시행)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2) 추진경위

-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적극적 대응
-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토대 구축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 사 업 명        |  |  |  |  |  |  |
|--------------|--|--|--|--|--|--|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7       | 301          |
| 명칭 | 검찰활동 | 공판활동 및 형집행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형집행 및<br>범죄수익환수 | 1,378        | 1,285        | 1,285 | 1,481        | 1,481 | 196         | 15.3                |

### 4. 사업목적

- 국가 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자유형·재산형 미집행자 추적 검거를 통한 사회 질서 유지
- 재산형 집행으로 국가 세입 증대 기여
- 부패범죄, 마약·조직범죄, 경제범죄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범죄자의 은닉 재산 자금 추적, 재산 파악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검찰징수사무규칙(법무부령)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01. 9.27.)
-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2008. 3. 28.)

### 2) 추진경위

- 국가 형벌권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자유형 미집행자 추적 및 검거능력 강화
- 국가 형벌권 집행을 통한 재산형 집행으로 국가 세입 증대
- 범죄수익환수반 운영 강화
- 2006. 5.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범죄수익환수전담반 출범
- 2010. 7.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 전국 청 오픈
- 2014. 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추징금 집행 강화 방안 수립·시행
- 2015. 12. KICS 외국인 신원조회 시스템 구축·운영
- 2017. 1. 사회봉사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판단기준 정립
- 2017. 2. 노역장유치 집행대상자 신병관리 철저 재지시
- 2017. 7. 벌과금 분납, 납부연기 확대 시행
- 2017. 12. 벌과금 집행유예 제도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지시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 사 업 명 |  |  |  |  |  |  |
|-------|--|--|--|--|--|--|
| 형사보상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7       | 302  |
| 명칭 | 검찰활동 | 공판활동 및 형집행 | 형사보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형사보상  | 36,039       | 33,213       | 33,213 | 33,213       | 33,213 | -           | -                   |

### 4. 사업목적

-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경비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형사소송법
-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 ② 추진경위

- 1957년 형사보상법 제정으로 보상금 지급 개시
- 2008년 무죄비용 보상제도 도입
- 무죄판결·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적정 지급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정당성 유지 및 증대
-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에게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선임료 등 보상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 사 업 명 |  |  |  |  |  |  |
|-------|--|--|--|--|--|--|
| 형사법정비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검찰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300 | 1338    | 302   |
| 명칭 | 검찰활동 | 형사사법선진화 | 형사법정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형사법정비 | 377          | 439          | 439 | 438          | 438 | △1          | △0.2                |

## 4. 사업목적

- 시대 변화에 상응하는 형사법 개정
- 법규위반 정도에 따른 행정형벌 처벌 기준 마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 법령상 근거

- 2006. 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형사실체법 정비과제 법무부 위임
- 2006. 8. 30. 대통령 지시사항(50개 핵심과제 등에 대하여 비전2030 추진지시)

## 2) 추진경위

- 2007. 4. 24. 국무회의에서 비전 2030 법무부 소관 사법개혁과제로 형법 등 형사실체법 정비보고
- 2012. 8. 인신매매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각칙 일부개정안을 국회 제출, 2013. 3. 5. 국회 의결, 4. 5. 공포·시행
- 2014. 6. 다수의 생명 침해를 야기한 중대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
- 2015. 12. 9.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형사소송법’개정안 국회 통과
- 2017. 8. 스톡킹처벌법 제정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 사 업 명   |  |  |  |  |  |  |
|---------|--|--|--|--|--|--|
| 교도소행정지원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교정본부   | 0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    | 공공질서및<br>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500 | 1531  | 300     |
| 명칭 | 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교도소행정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50%(어린이집)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교도소행정지원 | 21,191       | 27,116       | 27,116 | 30,178       | 30,178 | 3,062       | 11.3                |

## 4. 사업목적

- 전국 교정시설 행정경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화 도모
- 어린이집 운영으로 여성 공무원 육아부담 해소
-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지원으로 민간 위탁 교정시설 효율성 제고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37조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제수형자이송법」

② 추진경위

- '04년 교정공무원 사기진작 및 교정행정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업 신설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56개소, 민영교도소 1개소, 직장어린이집운영 6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및 법정민간대행(민영교도소)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직장어린이집        | 50%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
| 재단법인 아가페      | 90%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

## 7. 사업 집행절차

|       |                 |                |
|-------|-----------------|----------------|
| 전년12월 |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
|       | ↓               |                |
| 1월    |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
|       | ↓               |                |
| 1-12월 | 각 기관별 사업 집행     | 교정기관(민영교도소 포함) |

| 사 업 명           |  |  |  |  |  |  |
|-----------------|--|--|--|--|--|--|
|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교정본부   | 0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    | 공공질서및<br>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500 | 1531  | 302          |
| 명칭 | 교정활동 | 교도소운영 |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교정시설 장비운용<br>및 현대화 | 86,607       | 67,062       | 67,062 | 65,915       | 65,915 | △1,147      | △1.7                |

## 4. 사업목적

- 전국 교정기관 노후시설·장비 유지보수, 수용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전자경비시스템 설치, 수용거실 출입문 자동화 등 시설·장비 현대화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② 추진경위

- '95년 노후 교정시설의 적정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교정시설 및 장비운용 사업 신설



- '07년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라 인력 중심의 교정시설 경비체계를 전자시스템을 통한 경비체계로 전환하는 등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교정시설현대화 사업 신설
- '16년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으로 통합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56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                 |                |
|-------|-----------------|----------------|
| 전년12월 | 익년 법무부 예산 확정    | 국회→기획재정부→법무부   |
|       | ↓               |                |
| 1월    | 정기배정 계획에 의한 재배정 | 기획재정부→법무부→교정기관 |
|       | ↓               |                |
| 1-12월 | 각 기관별 사업 집행     | 교정기관(민영교도소 포함) |

| 사 업 명            |  |  |  |  |  |  |
|------------------|--|--|--|--|--|--|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교정본부   | 0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    | 공공질서및<br>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500 | 1532        | 300           |
| 명칭 | 교정활동 | 재소자 수용 및 교화 | 교정시설수용관리및공공요금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교정시설 수용관리<br>및 공공요금 | 211,970      | 197,038      | 197,038 | 205,740      | 205,740 | 8,702       | 4.4                 |

## 4. 사업목적

-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자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지원
- 수용자 처우(급량, 피복, 보건의료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수용자 생활용품 지급확대 등으로 기초생활 환경 개선
- 급식수준 및 피복품질 향상 등으로 수용자 처우개선에 기여
- 외부병원 진료 확대를 통한 수용자 건강권 강화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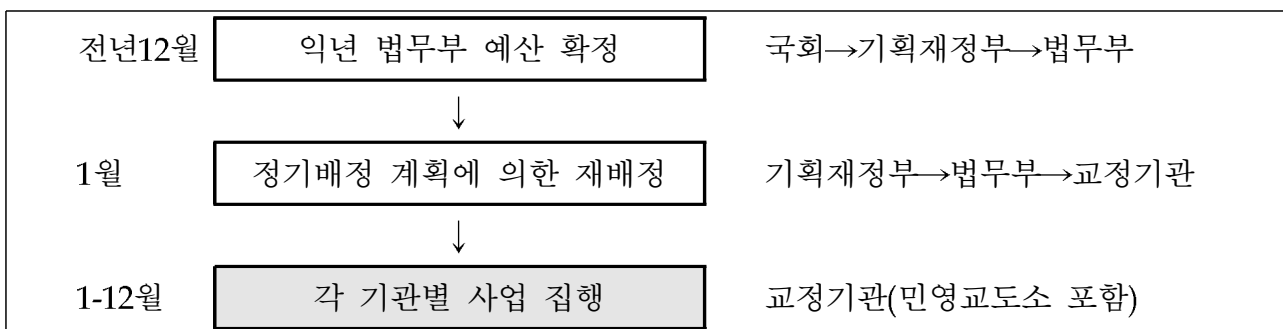
## ② 추진경위

- 수용자 급량, 피복, 보건의료 등 수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소자수용관리 사업 신설
- '04년 수용환경 개선 등에 따라 급증하는 공공요금 적정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 신설
- '16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으로 통합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56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교정교화 (1532-301)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6  | 교정본부   | 0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    | 공공질서및<br>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500 | 1532        | 301  |
| 명칭 | 교정활동 | 재소자 수용 및 교화 | 교정교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교정교화  | 7,189        | 7,358        | 7,358 | 7,675        | 7,675 | 317         | 4.3                 |

## 4. 사업목적

- '교정활동의 궁극적인 핵심사업'으로 수용자의 출소 후 재범방지를 목표로 시설 내 성폭력사범 및 마약사범 등에 대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
- 심리치료센터(정신질환사범, 성폭력, 아동학대사범 등), 분류센터(재범·폭력 고위험군), 혈액투석센터, 교화방송센터, 위치추적관제센터 등 수용처우 전문센터 운영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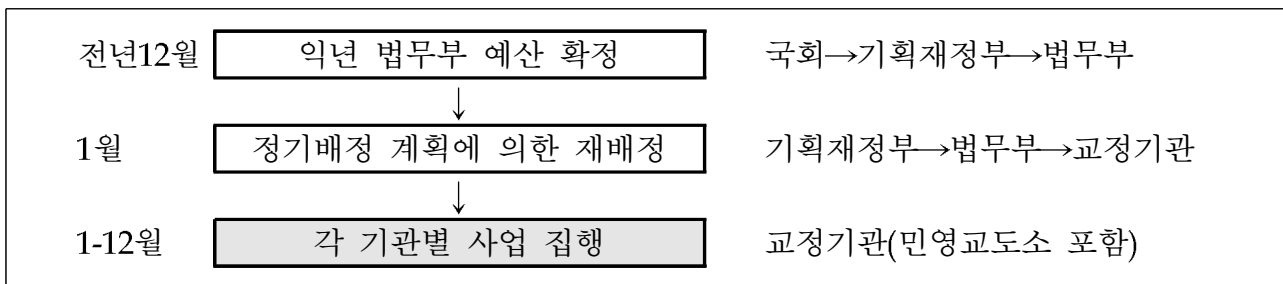
### ② 추진경위

- 수용자 재범방지교육 강화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03년 사업 신설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56개소, 심리치료센터 등 2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4  | 범죄예방정책국 | 일반회계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범죄예방정책국 | 일반회계 |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600   | 1631     | 304         |
| 명칭 | 범죄예방활동 | 범죄예방기관운영 |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범죄예방기관<br>시설운영 | 7,308        | 6,084        | 6,084 | 7,545        | 7,545 | 1,461       | 24.0                |

### 4. 사업목적

-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의 시설 및 장비를 유지 관리 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시설비, 임차청사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등 지원
  - 소년원 : 보호소년들을 수용,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치료재활교육 등을 통해 안정된 사회복귀 지원 및 재비행 방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학교폭력 가해자 및 비행 초기단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
  - 치료감호소 :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정신질환, 마약·약물 중독,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 범법자 등의 수용,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을 방지
  - 보호관찰소 : 법원 등으로부터 보호관찰·수감명령·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 받은 대상자에 대해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치료감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② 추진경위

#### - 소년보호기관

- 1942. 4. 조선교정원 개원(현, 서울소년원)
- 2007. 7. 부산, 광주 등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12. 6. 서울남부, 서울북부, 대구,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 2013.11. 순천, 전주,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 2014.12. 부산동부, 울산,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 - 치료감호소

- 1987.11. 치료감호소 개청(대통령령 제12232호)
- 2004. 1.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18252호)
- 2005. 8. 치료감호법 제정
- 2009. 1. 성폭력치료재활센터 개청
- 2011. 6. 성폭력치료재활센터 200병상 신축

#### - 보호관찰소

- 1989. 7. 전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개청
- ~ 현재 19개 보호관찰소, 39개 보호관찰지소, 5개 심사위원회,  
위치추적관제센터 2개 등 총 64개 기관운영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94개 기관(보호관찰소 58, 위치추적관제센터 2,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16, 치료감호소 1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94개 기관(보호관찰소 58, 위치추적관제센터 2, 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16, 치료감호소 1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소년원생수용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4  | 범죄예방정책국 | 일반회계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범죄예방정책국 | 일반회계 |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600   | 1632 | 300    |
| 명칭 | 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 소년원생수용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소년원생수용 | 16,844       | 18,360       | 18,360 | 18,807       | 18,807 | 447         | 2.4                 |

## 4. 사업목적

-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송치된 보호소년들을 수용, 이들에게 교과교육과 직업능력 개발훈련, 인성교육, 치료재활교육 등으로 안정된 사회복귀 지원
- 법원으로부터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대행 소년원에 위탁된 소년을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실시하여 처우지침 제공 및 재비행 방지교육
- 자립생활관 운영으로 무의탁 소년원 퇴원생의 완전한 사회정착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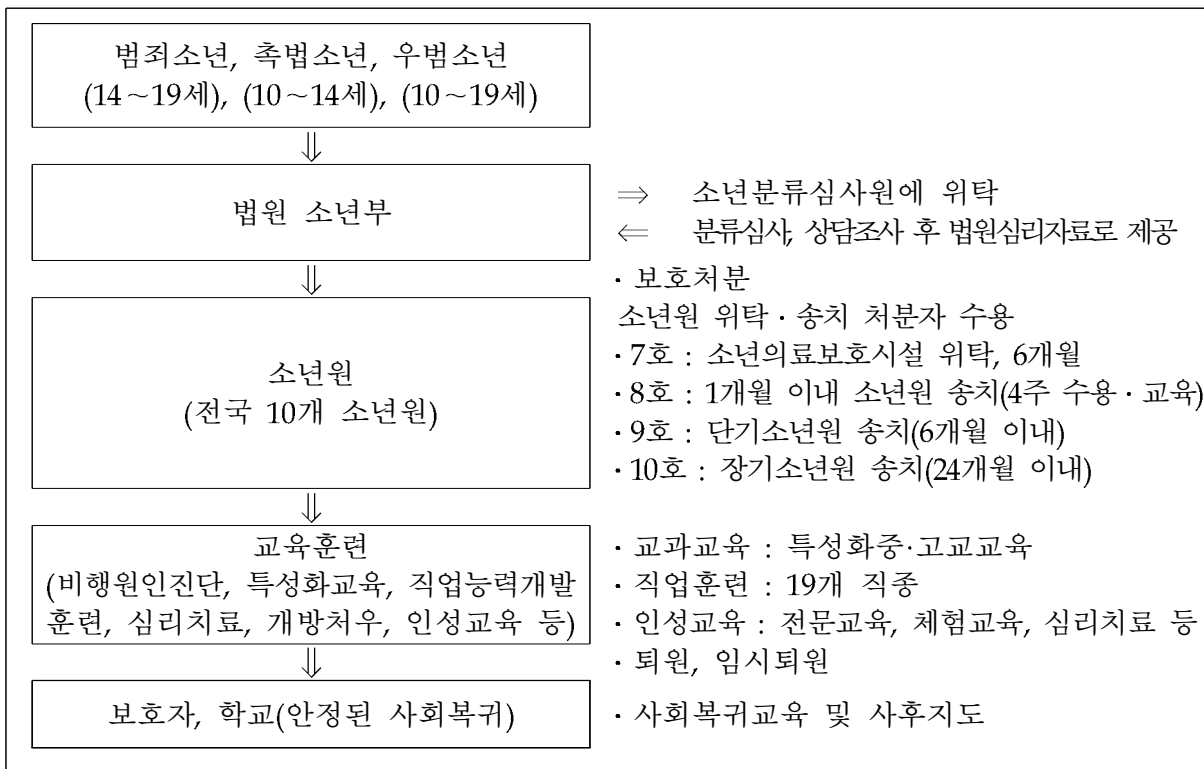
## ② 추진경위

- 1942. 4. 서울소년원
- 1958. 8. 소년원법 제정
- 1977. 4.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2004. 1. 소년원법 개정(소년원 학교의 정규화)
- 2007.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소년원법」) 개정
- 2008. 6.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과정 신설(안양, 대덕소년원)
- 2009. 7. 청주소년원 교육과정 운영(소년원 10, 소년분류심사원 1개)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소년보호 11개 기관(소년원 10개, 분류심사원 1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소년원생, 자립생활관 교육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청소년비행예방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4  | 범죄예방정책국 | 일반회계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범죄예방정책국 | 일반회계 |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600   | 1632 | 301     |
| 명칭 | 범죄예방활동 | 소년보호 | 청소년비행예방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청소년비행예방 | 5,051        | 5,277        | 5,277 | 5,057        | 5,057 | △220        | △4.2                |

### 4. 사업목적

- 일탈행동 및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위기 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과 재비행방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② 추진경위

- 2003. 7. 보호소년 상담조사제 도입

※ 보호소년상담조사제 : 청소년비행예방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법원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하는 제도

- 2007. 7. 부산, 광주 등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 2012. 7. 서울북부, 서울남부 등 4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13. 11. 순천, 전주, 춘천 등 3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14. 12. 수원, 부산동부, 울산 등 3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16. 5. 제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17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비행초기청소년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교 육 의 려

### 학교 · 교육청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  
적응학생 등 교육  
※ 학교장 수시 의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검 찰 청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교육 및 특별  
준수사항 집행  
※ 소년법 제49조의3 제2호

### 법 원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  
의뢰  
※ 소년법 개정시안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한 대안교육



## 교 육 실 시

### 특별교육

•교육의뢰 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별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안교육(단기)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체험교육, 집단상담 등

### 대안교육(장기)

•비행원인 진단, 상담  
•문제분석, 지도방법 등



## 교육과정 이수 등 통보

• 교육과정 이수 등 통보(해당학교 및 교육청)  
※ 재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에 통보, 출석 처리토록 조치

| 사 업 명  |
|--------|
| 갱생보호활동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4  | 범죄예방정책국 | 일반회계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      |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600   | 1633 | 300    |
| 명칭 | 범죄예방활동 | 갱생보호 | 갱생보호활동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갱생보호활동 | 28,183       | 28,110       | 28,110 | 29,110       | 29,110 | 1,000       | 3.6                 |

## 4. 사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인 무의탁·무연고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보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원호지원, 가족희망사업,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교육, 멘토링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갱생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뜻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 및 갇혀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항(국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 **제65조 제1항(갱생보호의 방법)** 갇혀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갇혀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갇혀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 **제9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1942. 3. 사범보호회 설립(조선사범보호사업령)
- 1953. 3. 사)중앙사범보호협회 설립(법무부 공고 제25호)
- 1961. 9. 갇혀보호회 설립(갱생보호법)
- 1995. 1. 한국갱생보호공단 설립(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1995.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칭 변경
- 2016.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본부 경북 김천혁신도시 이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53년 ~ 계속
- 사업규모 : 교정기관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 94,394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7개 민간갱생보호법인
- 사업 수혜자 : 형사처분자 및 보호처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br>7개 민간법인 | 70.1%<br>(수지차보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항, 94조 |

## 7. 사업 집행절차

■ 법무부 감독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사업자 사업수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교정시설<br/>출소 예정자<br/>사전상담</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보호신청</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보호실시</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보호종료</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호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실시</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본인의 신청 및 보호관찰소, 검찰, 교정기관 등의 보호의뢰</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보 호 방 법</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padding: 5px;">숙식제공</td> <td style="padding: 5px;">생활관에서 무의탁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일정기간 숙식 및 의복제공, 기초생활비 지원, 취업 및 생활지도, 사회성 향상 교육 등을 통해 자립유도<br/>※ 보호기간 : 최장 2년 범위 내 가능</td> </tr> <tr> <td style="padding: 5px;">직업훈련</td> <td style="padding: 5px;">기술이 없거나 부족한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업 또는 위탁교육 실시</td> </tr> <tr> <td style="padding: 5px;">취업알선</td> <td style="padding: 5px;">지역사회 기업가 및 고용센터, 보호위원 등을 통해 갱생보호대상자의 취업 알선 및 근속취업 지도</td> </tr> <tr> <td style="padding: 5px;">취업지원<br/>(허그<br/>일자리)</td> <td style="padding: 5px;">취업 취약계층인 갱생보호대상자와 고용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연하게 하는 종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td> </tr> <tr> <td style="padding: 5px;">창업지원</td> <td style="padding: 5px;">자격증 취득 또는 관련 직종 취업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자금 지원(최대 5,000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5px;">주거지원</td> <td style="padding: 5px;">범죄와 구금으로 해체된 가정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갱생 보호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국토부·LH공사 연계)<br/>※ 지원기간 : 최장 10년 범위 내 가능</td> </tr> <tr> <td style="padding: 5px;">긴급원호</td> <td style="padding: 5px;">질병, 실직, 장애 등 어려움에 처한 갱생보호대상자가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취업교통비, 긴급생계비, 구호양곡 등 응급 구호금품 지원</td> </tr> <tr> <td style="padding: 5px;">멘토링및<br/>사후관리</td> <td style="padding: 5px;">갱생보호대상자들에게 직원 또는 보호위원 등이 면접통신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정·주거·교우관계 환경을 조정개선 및 선행장려</td> </tr> <tr> <td style="padding: 5px;">가족희망<br/>복원</td> <td style="padding: 5px;">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갱생보호대상자 가정을 위해 취·창업지원, 자녀 학습 멘토링 등 가족 단위의 통합지원 실시</td> </tr> <tr> <td style="padding: 5px;">심리상담<br/>및 치료</td> <td style="padding: 5px;">개인, 가족상담, 심리검사 등 출소 후 겪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 진행</td> </tr> <tr> <td style="padding: 5px;">사 회 성<br/>향상교육</td> <td style="padding: 5px;">사회복귀에 필요한 기본소양, 행정절차, 약물남용 교육, 원예·미술치료 등 사회 적응력 향상 교육</td> </tr> <tr> <td style="padding: 5px;">기타지원</td> <td style="padding: 5px;">사회복지시설에 위탁알선, 호적취적 및 주민등록 재등록, 의료시혜, 생계보조금 지급, 가정환경 조정 등 대상자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td> </tr> </table>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자립한 사람, 보호기간 만료된 사람 등</p> </div> | 숙식제공 | 생활관에서 무의탁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일정기간 숙식 및 의복제공, 기초생활비 지원, 취업 및 생활지도, 사회성 향상 교육 등을 통해 자립유도<br>※ 보호기간 : 최장 2년 범위 내 가능 | 직업훈련 | 기술이 없거나 부족한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업 또는 위탁교육 실시 | 취업알선 | 지역사회 기업가 및 고용센터, 보호위원 등을 통해 갱생보호대상자의 취업 알선 및 근속취업 지도 | 취업지원<br>(허그<br>일자리) | 취업 취약계층인 갱생보호대상자와 고용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연하게 하는 종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 | 창업지원 | 자격증 취득 또는 관련 직종 취업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자금 지원(최대 5,000만원) | 주거지원 | 범죄와 구금으로 해체된 가정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갱생 보호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국토부·LH공사 연계)<br>※ 지원기간 : 최장 10년 범위 내 가능 | 긴급원호 | 질병, 실직, 장애 등 어려움에 처한 갱생보호대상자가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취업교통비, 긴급생계비, 구호양곡 등 응급 구호금품 지원 | 멘토링및<br>사후관리 | 갱생보호대상자들에게 직원 또는 보호위원 등이 면접통신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정·주거·교우관계 환경을 조정개선 및 선행장려 | 가족희망<br>복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갱생보호대상자 가정을 위해 취·창업지원, 자녀 학습 멘토링 등 가족 단위의 통합지원 실시 | 심리상담<br>및 치료 | 개인, 가족상담, 심리검사 등 출소 후 겪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 진행 | 사 회 성<br>향상교육 |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본소양, 행정절차, 약물남용 교육, 원예·미술치료 등 사회 적응력 향상 교육 | 기타지원 |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알선, 호적취적 및 주민등록 재등록, 의료시혜, 생계보조금 지급, 가정환경 조정 등 대상자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 숙식제공                                                                                                                                                                                                                                                                                                                                                                                                                                                                   | 생활관에서 무의탁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일정기간 숙식 및 의복제공, 기초생활비 지원, 취업 및 생활지도, 사회성 향상 교육 등을 통해 자립유도<br>※ 보호기간 : 최장 2년 범위 내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업훈련                                                                                                                                                                                                                                                                                                                                                                                                                                                                   | 기술이 없거나 부족한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직업 또는 위탁교육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알선                                                                                                                                                                                                                                                                                                                                                                                                                                                                   | 지역사회 기업가 및 고용센터, 보호위원 등을 통해 갱생보호대상자의 취업 알선 및 근속취업 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지원<br>(허그<br>일자리)                                                                                                                                                                                                                                                                                                                                                                                                                                                    | 취업 취약계층인 갱생보호대상자와 고용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연하게 하는 종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창업지원                                                                                                                                                                                                                                                                                                                                                                                                                                                                   | 자격증 취득 또는 관련 직종 취업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자금 지원(최대 5,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거지원                                                                                                                                                                                                                                                                                                                                                                                                                                                                   | 범죄와 구금으로 해체된 가정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갱생 보호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지원(국토부·LH공사 연계)<br>※ 지원기간 : 최장 10년 범위 내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긴급원호                                                                                                                                                                                                                                                                                                                                                                                                                                                                   | 질병, 실직, 장애 등 어려움에 처한 갱생보호대상자가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취업교통비, 긴급생계비, 구호양곡 등 응급 구호금품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멘토링및<br>사후관리                                                                                                                                                                                                                                                                                                                                                                                                                                                           | 갱생보호대상자들에게 직원 또는 보호위원 등이 면접통신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정·주거·교우관계 환경을 조정개선 및 선행장려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희망<br>복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갱생보호대상자 가정을 위해 취·창업지원, 자녀 학습 멘토링 등 가족 단위의 통합지원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리상담<br>및 치료                                                                                                                                                                                                                                                                                                                                                                                                                                                           | 개인, 가족상담, 심리검사 등 출소 후 겪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회 성<br>향상교육                                                                                                                                                                                                                                                                                                                                                                                                                                                          |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본소양, 행정절차, 약물남용 교육, 원예·미술치료 등 사회 적응력 향상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지원                                                                                                                                                                                                                                                                                                                                                                                                                                                                   |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알선, 호적취적 및 주민등록 재등록, 의료시혜, 생계보조금 지급, 가정환경 조정 등 대상자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제1절 제65조 (갱생보호의 방법)

- ## ○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

- 제2장 제1절 제4조 (보호방법의 결정)

- ※ 지부장, 보호사업과장, 지부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직원 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보호심사회를 통해 보호결정

| 사 업 명      |  |  |  |  |  |  |
|------------|--|--|--|--|--|--|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4  | 범죄예방정책국 | 일반회계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범죄예방정책국 | 일반회계 |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600   | 1634    | 300       |
| 명칭 | 범죄예방활동 | 치료감호자수용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 7,363        | 7,307        | 7,307 | 7,432        | 7,432 | 125         | 1.7                 |

## 4. 사업목적

- 치료감호법에 의해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심신장애, 마약·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 및 정신성적 장애 범죄자에 대해 특수한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
- 임상연구 및 선진 외국의 치료감호제도 연구를 통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효과 극대화 도모
- 검찰·법원·경찰로부터 의뢰한 자에 대한 형사정신감정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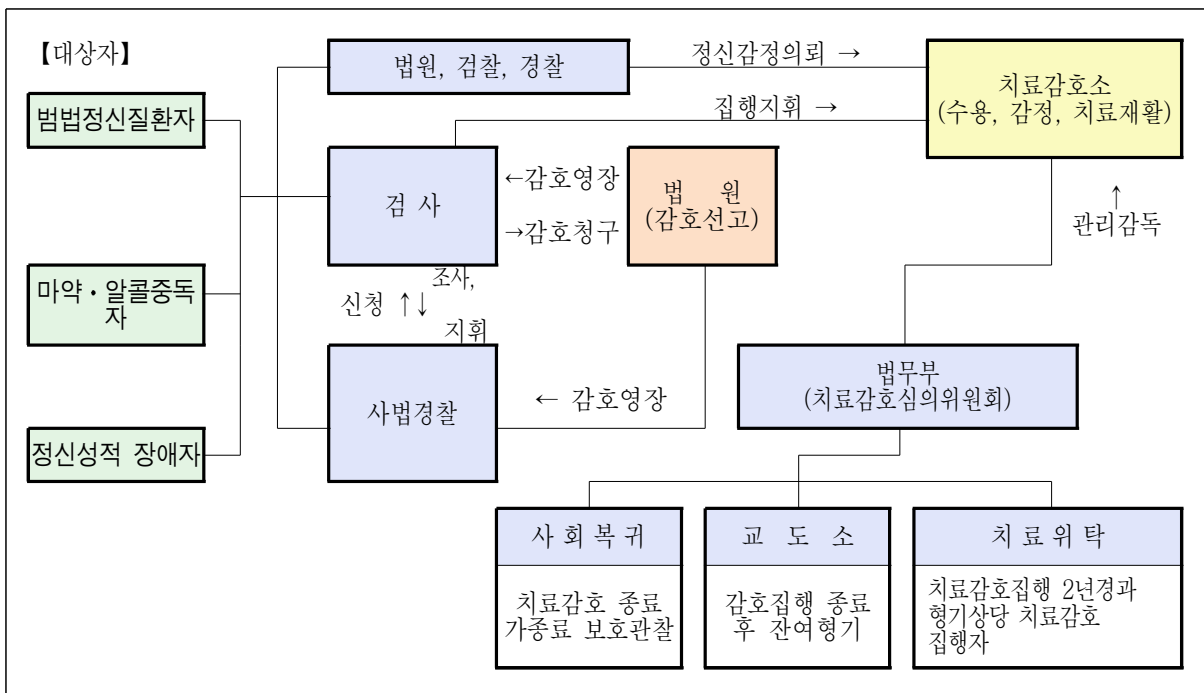


- 1987.11. 치료감호소 개청
- 1993.11.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 1997. 1. 병원명칭사용(국립감호정신병원, 법무부훈령 제385호)
- 2004. 1.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18252호)
- 2005. 8. 치료감호법 제정
- 2006. 7. 병원명칭변경(국립법무병원, 법무부훈령 제560호)
- 2008.12. 인성병동 개설
- 2015. 8. 국립부곡법무병원 개설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치료감호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치료감호처분 대상자, 정신감정 의뢰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보호관찰 활동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4  | 범죄예방정책국 | 일반회계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      |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600   | 1635 | 300    |
| 명칭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 보호관찰활동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보호관찰활동 | 10,150       | 10,832       | 10,832 | 11,689       | 11,689 | 857         | 7.9                 |

## 4. 사업목적

-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
-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르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에게 치료명령을 실시,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 보호
-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독거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실시로 사회적 약자 등 지원강화,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 성폭력, 아동학대 등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외부강사 등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 구축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소년법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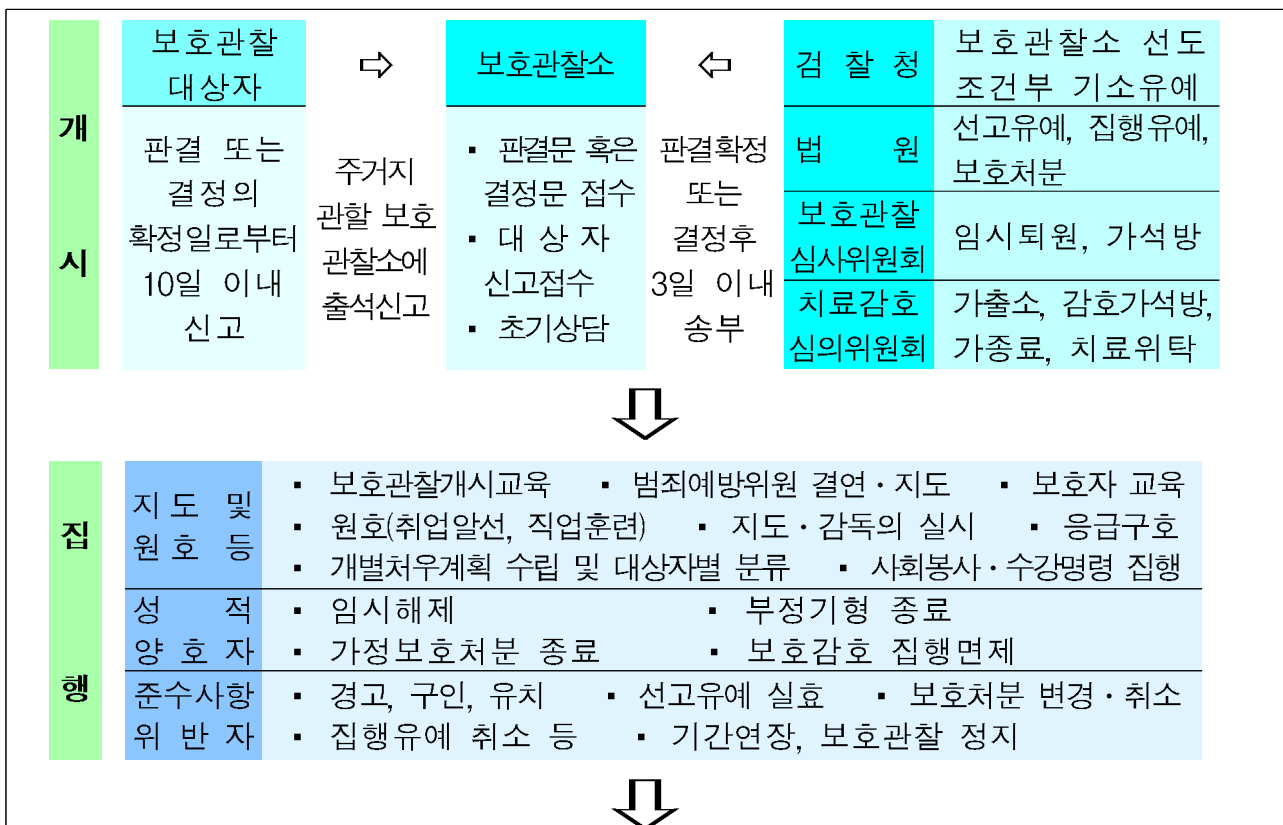
- '88. 12. 31. 보호관찰법 제정
- '89. 7. 1. 전국 보호관찰소·심사위원회 설치
- '95. 1.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97. 1. 1. 성인범 보호관찰 확대 실시
- '01. 1. 1. 보호관찰 기피자 지명수배제도 실시
- '04. 9. 22.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실시
- '09. 9. 25.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 실시
- '10. 5. 11. 사회봉사 농촌지원 실시(대통령 지시사항)
- '10. 4.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이수명령 도입
- '13. 6. 19.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살인·성폭력·미성년자유괴·강도죄) 실시
- '13. 6. 19. 성폭력사범 판결전 조사 확대 실시
- '13. 6. 19. 성폭력 사범 수강(이수)명령 의무적 부과 및 부과시간 확대
- '14. 1. 28. 아동학대 이수명령 도입
- '14. 9. 29.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결정전조사 실시
- '16. 12. 2. 주취·정신질환 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실시
- '18. 1. 7. 벌금형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실시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 보호관찰 104,850건 실시('18년)
  - 사회봉사명령·수감명령 등 집행 131,066건 집행('18년)
  - 조사 26,528건 실시('18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보호관찰대상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          |                  |

## 7. 사업 집행절차



|        |                |                                                                                                                                                                                                      |
|--------|----------------|------------------------------------------------------------------------------------------------------------------------------------------------------------------------------------------------------|
| 종<br>료 | 보호관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고유예자(1년)    ▪ 가석방자(잔형기간, ※무기형은 10년)</li> </ul>                                                                                                             |
|        | 기관경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출소, 가종료자(3년)</li> <li>▪ 집행유예자(집행유예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li> <li>▪ 임시퇴원자(6월~2년), 소년법상 보호처분자(단기 1년, 일반 2년)</li> <li>▪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1급 1년, 2급 6월)</li> </ul> |
|        | 결    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기형 종료                    ▪ 가정보호처분 종료</li> <li>▪ 보호감호 집행면제            ▪ 치료감호 종료</li> </ul>                                                                 |
|        | 취소 및<br>결    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처분 변경            ▪ 가석방, 임시퇴원, 가출소, 가종료 취소</li> <li>▪ 선고유예 실효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취소    ▪ 집행유예 취소</li> </ul>                                           |
|        | 형의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li> </ul>                                                                                                                           |

| 사 업 명  |
|--------|
| 특정범죄관리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4  | 범죄예방정책국 | 일반회계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      |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600   | 1635 | 301    |
| 명칭 | 범죄예방활동 | 보호관찰 | 특정범죄관리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특정범죄관리 | 14,622       | 17,072       | 17,072 | 17,500       | 17,500 | 428         | 2.5                 |

## 4. 사업목적

-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정보를 24시간 확인·감독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의 재범 억제 도모
-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형기에 따라 10년에서 30년 간 등록·관리하여 성폭력범죄 예방에 기여
-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재범 억제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② 추진경위

- '05. 4. 한나라당 국회 대표연설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추진 제시
- '05. 7.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95인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 '06. 9. 법무부장관 성폭력사범 전자팔찌제도 도입 추진 지시
  - ※ '06. 12.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법무부 수정법률안 제출
- '07. 4.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07. 10.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 '08. 5.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08. 9. 1. 시행)
- '08. 9. 박민식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발의
- '10. 3.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10. 7. 16. 시행)
  - ※ 법률개정으로 살인범 확대, 최근 3년간 소급적용, 부착기간 10년 → 30년 확대 실시
- '10. 3.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등 13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10.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회 통과
- '10.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11. 4. 16. 시행)
- '10. 7.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공포('11. 7. 24 시행)
- '11. 4.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공개 · 고지제도 도입
- '12. 11. 법명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개정안 국회 통과
- '13. 3.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약물치료 청구 가능
- '13. 6. 신상정보 등록 업무 법무부로 일원화(공개 · 고지 업무는 여가부로 일원

화) 및 3년 이내('08. 4. 16. ~ '11. 4. 15.) 성폭력범죄자 소급 적용

- '13. 6. 신상정보 등록범죄 추가
  -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13.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제도' 시행
- '14. 1. 산업부와 협업 '외부정보 감응형 전자발찌' 사업 착수
- '14. 6. 전자감독 부착 대상 강도죄 추가
- '15. 8.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 예비사업 실시완료
- '16. 12.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완료
- '16. 12.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1차 개발 완료
- '16. 12. 등록기간 차등화 시행(일괄 20년 → 형기에 따라 10~30년)
- '17. 11.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완료
- '17. 12.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구축 완료
- '18. 1. 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재심사 절차 마련,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살인·치사죄 등 추가
- '18.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부착기간 연장사유에 미귀국 행위 등 추가
- '18. 9. 일체형 전자발찌 순차 보급 및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시범 운영(연중)

##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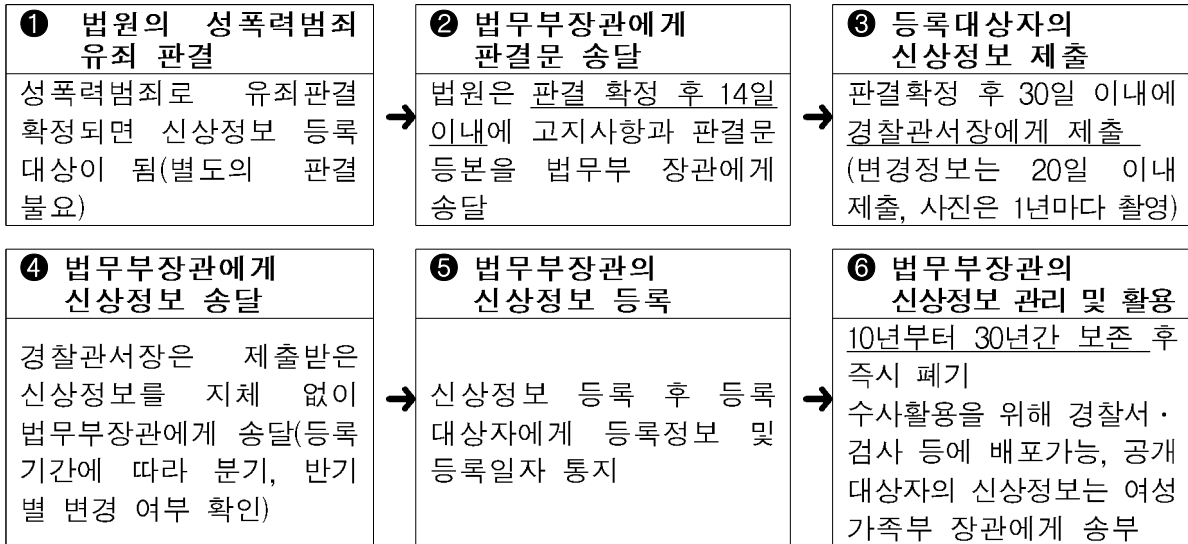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 전자감독 대상자 3,118명('18년)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70,066명('18년)
  -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19명('18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아동 및 여성 등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          |                  |
|---------------|----------|------------------|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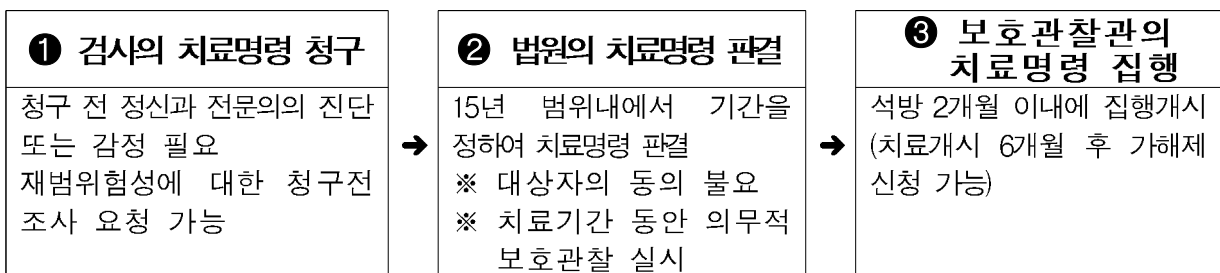
## 7. 사업 집행절차

###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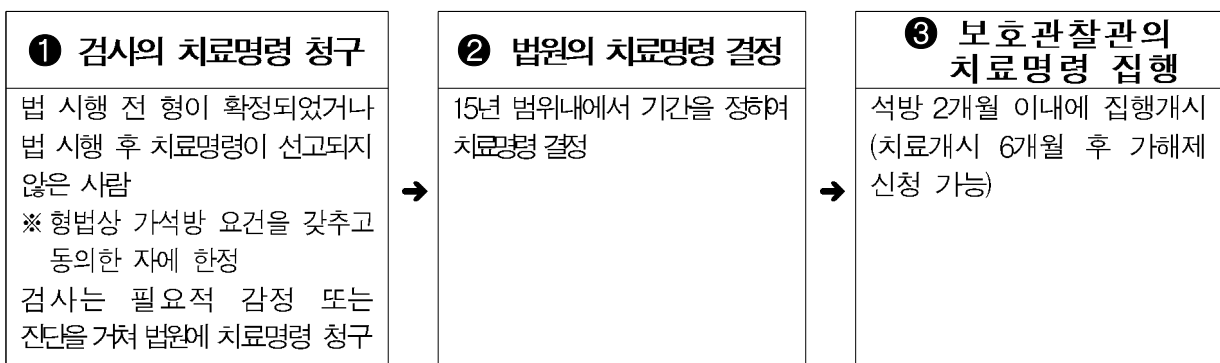


### □ 성충동 약물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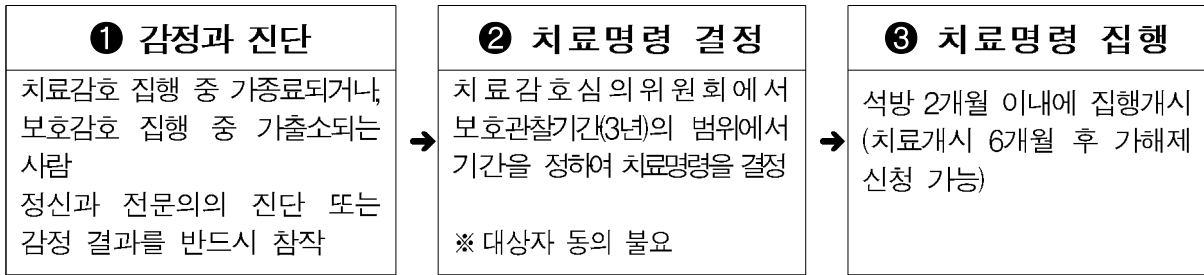
#### 【징역형 등 종료자에 대한 치료명령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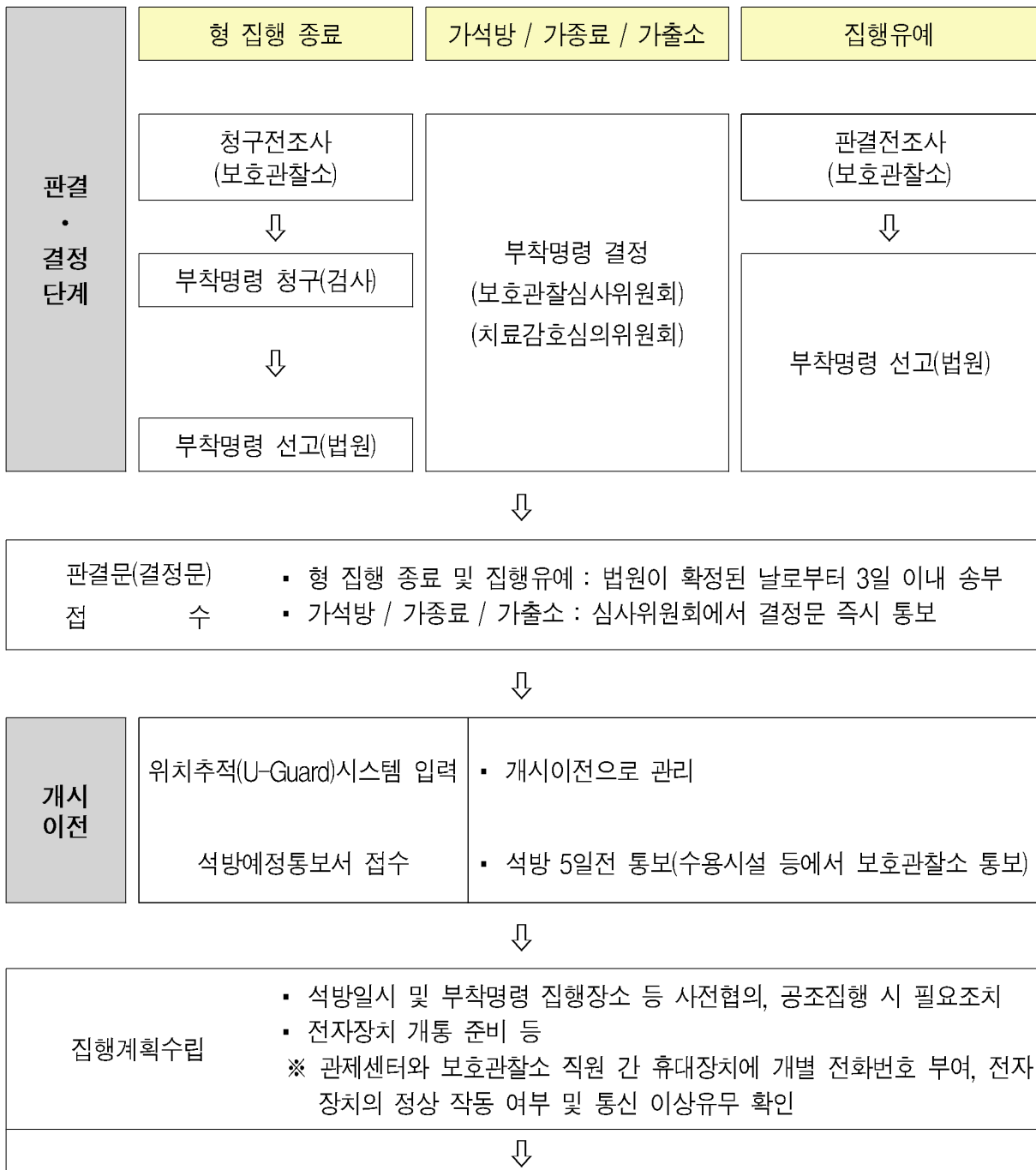
####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절차】



## 【가중료자·가출소자에 대한 치료명령 절차】



### □ 특정범죄자 위치관리



|            |                           |                                                                                                                                                                                                                                |
|------------|---------------------------|--------------------------------------------------------------------------------------------------------------------------------------------------------------------------------------------------------------------------------|
| 부착명령<br>집행 | 형 집행 종료, 가석방,<br>가중료, 가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방 직전 부착장치 부착 및 휴대용 추적장치 교부</li> <li>▪ 부착명령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 재택감독장치 설치<br/>(단 외출제한자는 지체없이 설치)</li> <li>※ 전담직원이 수용기관에 출장, 전자발찌 부착 후 정상작동 여부를 관제센터와 확인하고 출소 후 거주지에 가서 재택 감독장치 설치</li> </ul> |
|            | 집행유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 후 10일 이내 부착장치 부착 및 휴대용 추적장치 교부</li> <li>▪ 지체 없이 재택감독장치 설치</li> </ul>                                                                                                               |



|           |                                                                                                                                                      |                                                                                           |
|-----------|------------------------------------------------------------------------------------------------------------------------------------------------------|-------------------------------------------------------------------------------------------|
| 집행감독<br>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우계획 수립, 수시·불시 접촉면담하며 지도</li> <li>▪ 의무 및 (특별)준수사항 관리·감독</li> <li>▪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지침에 따른 지도·감독 실시</li> </ul> | <p>가해제 신청<br/>(보호관찰소장 또는 피부착자·<br/>법정대리인 신청, 보호관찰<br/>심사위원회 결정)</p> <p>※ 3개월 주기로 신청가능</p> |
|-----------|------------------------------------------------------------------------------------------------------------------------------------------------------|-------------------------------------------------------------------------------------------|



|    |             |                                                                                                                                          |
|----|-------------|------------------------------------------------------------------------------------------------------------------------------------------|
| 종료 | 종료사유 발생시 종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착명령 기간 경과</li> <li>▪ 형 선고효력 상실(사면)</li> <li>▪ 가석방 실효 또는 취소</li> <li>▪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li> </ul> |
|----|-------------|------------------------------------------------------------------------------------------------------------------------------------------|

| 사 업 명           |  |  |  |  |  |  |
|-----------------|--|--|--|--|--|--|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4  | 범죄예방정책국 | 일반회계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범죄예방정책국 | 일반회계 |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600   | 1636         | 304             |
| 명칭 | 범죄예방활동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법질서 준수 및<br>법교육 활동 | 4,726        | 4,632        | 4,632 | 6,079        | 6,079 | 1,447       | 31.2                |

### 4. 사업목적

- 지역 네트워크 및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스포츠 단체를 활용한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 실시, 부처간 협업과 주민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의 확산 도모 및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 법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온라인 법체험 포털 '법사랑 사이버랜드',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 '대전·부산 솔로몬로파크' 운영 등을 통해 생활실천형 법교육 실시 및 법교육 인프라 확대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교육지원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6조(법교육 연구 개발),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② 추진경위

- '07. 7.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문화진흥팀' 신설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솔로몬 로파크)를 법교육 특화기관으로 지정·운영
- '08. 2. 29. '법질서·규제개혁 담당관실' 직제 신설  
※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운동에 대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역량집중을 위해 6명으로 구성
- '08. 3. 법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교육지원법' 제정·시행
- '10. 2. 24. 차관 직속 전담부서 「법질서 선진화 기획단」 발족
- '11. 9. 1.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통합 발족
- '11. 12. 법사랑 사이버랜드 오픈
- '12. 4.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자치법정 전국적 확대
- '13. 9. 1. 어린이 로스쿨 실시
- '14. 11. 19. 제1회 중·고생 헌법토론대회 개최
- '14. 11. 25. 제1회 초·중·고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 '15. 3. 27. 학생자치법정 1,720개 학교 대상 운영지원 워크숍 개최
- '15. 9. 7. 한국인의 법과 생활 전면 개정판 발간
- '15. 11. 9. 제10회 고교생 모의재판경연대회 개최
- '16. 2. 3. 법무부·국토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공동 추진 MOU 체결
- '16. 3. 1. 법사랑학교 프로그램 전국 초·중학교 2,205개 학급 운영
- '16. 7. 8.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칭
- '16. 12. 28. 법사랑 사이버랜드 전자도서관 개설
- '17. 3. 20.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1,023개교 모집 및 프로그램 권역별 워크숍 개최
- '17. 4. 3. 제8회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온라인 예선 실시
- '17. 5. 17. 제12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본 심사 등 예선 실시
- '17. 5. 22. 제4회 헌법사랑 토론대회 토론요지 심사 등 예선 실시
- '17. 6. 12. 찾아가는 법교육, 울릉도 학생·주민 대상 법체험 축제 개최
- '17. 7. 24. 하계 초·중등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실시
- '17. 8. 24. 제8회 중학교 생활법 퀴즈대회 개최

- '17. 10. 20.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준공식(전남 광양)
- '17. 11. 14. 제4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 '17. 11. 21. 제12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17. 11. 29. 2017년 헌법사랑 토론대회 개최
- '17. 12. 14. 법교육위원회 제18차 정기회의 개최
- '18. 1. 9. ~ 1. 11. 정부부처 연계 자유학기 진로체험 페스티벌 참가
- '18. 4. 13.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956개교 모집 및 권역별 워크숍 19회 개최
- '18. 6. 12. 제9회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4개 권역) 지역예선 실시
- '18. 6. 22. 제2회 고등학생 생활법동아리 경연대회 운영보고서 심사
- '18. 6. 15. 제13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2개 권역) 지역예선 실시
- '18. 6. 15. 제5회 헌법사랑 토론대회(2개 권역) 지역예선 실시
- '18. 6. 4. ~ 7. 17. 찾아가는 법교육, 경기 안성, 전남 신안 등 진로체험 페스티벌
- '18. 7. 24. 하계 초·중등교사 법교육 직무연수 실시
- '18. 8. 2. ~ 8. 3.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 개최
- '18. 8. 7. 제13회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 '18. 8. 7. 제5회 고교생 헌법토론대회 개최
- '18. 8. 9. ~ 8. 10. 제2회 전국 고등학생 생활법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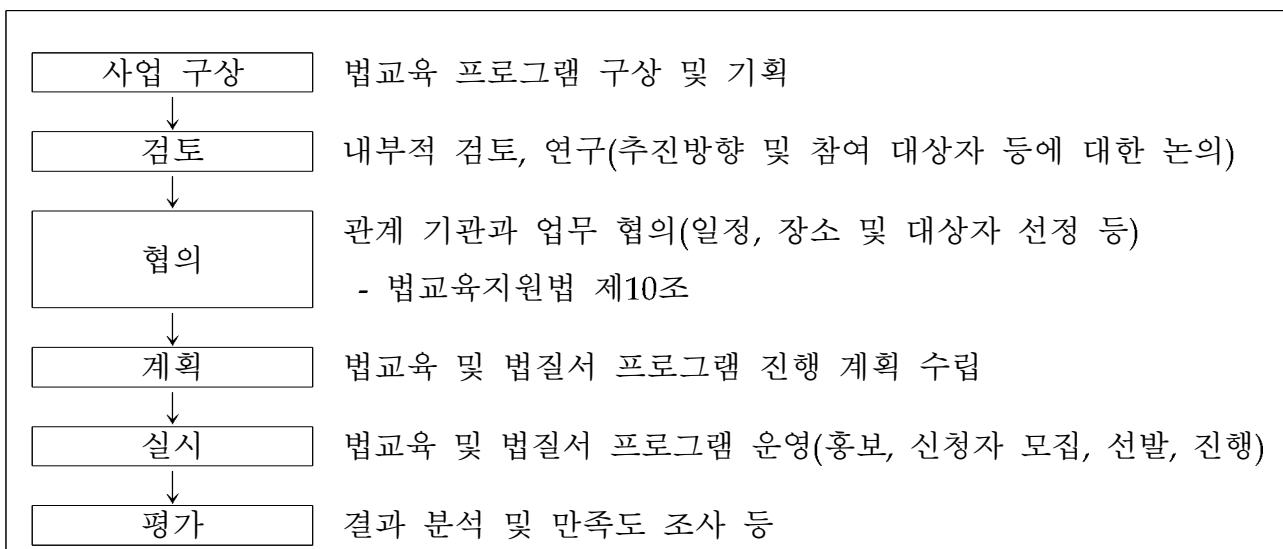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 전국 단위 5개 대회형 법교육 프로그램 개최
  - 학생자치법정, 법사랑학교 등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아, 청소년,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법교육 강연 프로그램 운영
  - 시민·어린이로스쿨, 법률콘서트 등 생활법 프로그램 운영
  - 법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 법교육 관련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콘텐츠 등 개발·보급
  - 법교육 교재 및 온라인 콘텐츠 등 개발·보급
  - 솔로몬로파크 2개 기관(대전, 부산) 운영
  -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유아, 청소년, 성인 등 전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          |                  |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연수원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5100   | 5131  | 300        |
| 명칭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연수원시설관리및운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O  |    | 정액보조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연수원시설관리및<br>운영 | 4,331        | 3,872        | 3,872 | 4,375        | 4,375 | 503         | 13.0                |

### 4. 사업목적

- 법무연수원 교육생 식당 직영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 및 청소용역 위탁 운영을 통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생 만족도와 교육 효과 극대화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② 추진경위
  - '99. 7월 : 정부 구조 조정 시 시설관리 및 급식 등 민간위탁



- '01. : 급식관리 직영 전환
- '15. 3월 : 충북 혁신도시 기관 이전, 용인·진천 이원화 운영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7년 ~ 계속
- 사업규모
  - 교육생 급식관리 식당조리원 25명, 연간급식인원 243,828명(1일 평균 668명)
  - 부지 847,997㎡(256,519평), 건물 91,882㎡(27,794평, 32개동)
  - 공동 직장어린이집 이용 원아 : 6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부·검찰·유관기관 공무원, 법무연수원 직원 및 공무원  
근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꿈나래어린이집       | 정액보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37조 |

## 7. 사업 집행절차

- 법무연수원 예산 수요파악(전년도) → 예산확보 및 편성(전년도) → 예산집행(당해 연도) → 결산(차년도)

|                     |  |  |  |  |  |  |
|---------------------|--|--|--|--|--|--|
| 사 업 명               |  |  |  |  |  |  |
|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연수원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5100   | 5131  | 301                    |
| 명칭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법무·검찰공무원등<br>교육운영 및 개선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법무·검찰공무원등<br>교육운영 및 개선 | 1,320        | 1,483        | 1,483 | 1,413        | 1,413 | △70         | △4.7                |

### 4. 사업목적

- 법무부 및 검찰 소속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무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검찰 인재 양성
- 직무 전문교육과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가관·공직관 및 인권·양성평등·청렴 등 소양 교육 확대 실시
- 저년차 검사 보수 교육을 통해 직무교육과 성장비전을 제시하고, 사례와 실무 중심의 타겟형 교육을 실시하여 실제 일선의 업무 기법과 착안 사항을 압축적으로 교육
- 검사 고위 및 중견관리자 과정, 검찰·보호·출입·교정 중간관리자 과정 등 법무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 신규 공무원에게는 기본소양 및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함양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실시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인재 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2007년 상시학습제도 도입, 2008년 「형사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인한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 인프라 구축
- 2009년 식품·환경·소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특별 사법경찰 교육 과정 및 2011년 국가송무 수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신설·운영
- 2013년 행정안전부의 9급 신규자 공채 시험방식 변경, 하위직 신규자 기본 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교육과정 확대 개편 추진
- 2018년 직무교육 체계를 개편, 신규임용자, 승진자 등 단계별 역량을 강화 하고 전문분야 교육은 목표중심 단기교육(타겟형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 효과 제고
- 2019년 사시출신 신입검사 교육 이관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 ~ 계속(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2013 ~ 계속(법무핵심리더양성교육)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부·검찰·유관기관 공무원

## 7. 사업 집행절차

- |                                 |
|---------------------------------|
|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실시 ⇒ 평가 및 결과 환류 |
|---------------------------------|

| 사 업 명        |  |  |  |  |  |  |
|--------------|--|--|--|--|--|--|
|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연수원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5100   | 5131  | 311          |
| 명칭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단위: 백만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증감          |                     |
|                 |              |              |     |              |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법무연수원<br>수입대체경비 | 511          | 486          | 486 | 460          | 460 | △26         | △5.3                |

### 4. 사업목적

- 양질의 급식제공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생 만족도 제고 및 교육 효과 극대화
- 교육생에게 식비, 생활관 사용료(공공요금) 등으로 교육기간 및 숙박여부에 따라 징수된 교육비를 국고로 납입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수입대체경비에서 집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료로 2011회계연도부터 수입 대체경비로 지정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검찰 공무원 및 유관기관 공무원 교육생

##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교육수요과목 및 예산편성 ⇒ 교육신청시 교육비 등 징수 및 국고납입 ⇒ 교육실시 ⇒ 교육비용 지출</li></ul> |
|----------------------------------------------------------------------------------------------------------|

| 사 업 명           |  |  |  |  |  |  |
|-----------------|--|--|--|--|--|--|
|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법무연수원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5100   | 5131  | 312             |
| 명칭 | 법무교육훈련 | 연수원운영 |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신임검사 양성 및<br>교육 지원 | 891          | 843          | 843 | 941          | 941 | 98          | 11.6                |

※ 2019년도 예산안부터 사업명칭 변경

(‘18년) 로스쿨출신 신임검사교육 및 로스쿨 지원 → (‘19년)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 4. 사업목적

-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 후 임관된 신임 검사에 대한 교육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 지원으로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12. 4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신입검사 42명 임용(2013년 37명, 2014년 35명, 2015년 45명, 2016년 48명, 2017년 50명), 법무연수원에서 1년 과정으로 교육운영
- 로스쿨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국가적 과제로서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
- '16년 과목구조 개편으로 로스쿨지원 및 국제협력(5131-308), 로스쿨출신 신입검사교육 (5131-312) 2개 사업을 로스쿨출신 신입검사교육 및 로스쿨지원 (5131-312) 사업으로 통합
- '18년부터 사시출신 신입검사 교육체계가 개편되어 당초 상·하반기 총 2개월 (전반기 5주+후반기 3주) 진행하던 교육이 변호사시험 출신 신입검사 교육 중 전반 5개월간 통합교육 실시로 개편됨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9 ~ 계속(로스쿨 지원 및 국제협력)  
2012 ~ 계속(로스쿨 출신 신입검사 교육)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신입검사 및 로스쿨 재학생

## 7. 사업 집행절차

- |                                 |
|---------------------------------|
|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실시 ⇒ 평가 및 결과 환류 |
|---------------------------------|

| 사 업 명          |  |  |  |  |  |  |
|----------------|--|--|--|--|--|--|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기획조정실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7000      | 7032   | 300          |
| 명칭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행정 효율성증진<br>및 능력개발 | 694          | 681          | 681 | 613          | 613 | △68         | △10.0               |

### 4. 사업목적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무조직의 지속적인 변화 및 개선 추진
  -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추진
  - 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을 위한 변화관리 교육·학습 프로그램 운영
  - 소통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05년~계속, 정부부처 공통 사업(주관 : 행정자치부)

② 추진경위

- '04년 정부 공통조직인 혁신(인사)기획관실 신설, 운영
-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방안(인사위원회, '04.10.22.)
- 「2015년도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지침 및 생활불편 개선 추진계획 통보」  
(행정자치부, '15.3.16.)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및 대검찰청
- 사업 수혜자 : 직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          |                  |

## 7. 사업 집행절차

### ○ 변화관리 교육

수요조사 실시 → 연간 교육계획 수립 → 교육과정별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 교육업체 선정 및 계약 → 교육 실시

### ○ 제도개선 추진

기본계획 수립 → 과제 발굴(수시) → 우수제안 포상 → 이행상황 점검

| 사 업 명                 |  |  |  |  |  |  |
|-----------------------|--|--|--|--|--|--|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기획조정실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7000      | 7032   | 301                      |
| 명칭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br>민원·정책 피드백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금액<br>(B-A)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             |
| 국민불편 해소를<br>위한 민원·정책<br>피드백 | 133          | 135          | 135 | 122          | 122 | △13 | △9.6        |

## 4. 사업목적

- 민원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민원업무 처리역량 강화 및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민원 제도 발굴·개선 등 고개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13. 3. 대통령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시 말씀 “한 사람의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최대한 노력해 달라. 한 가지가 해결되면 동일한 문제를 가진 10만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정책 민원 해결

### 효과가 나타남”

- 2013. 4.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국무총리 승인, 안행부 시행)
- 2013. 6.~10. 「법무부 국민행복 민원 피드백 강화 추진단」 구성·운영
- 2013. 6.~10.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피드백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추진
- 2013. 12.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출범
- 2018. 2.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행안부 시행)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
- 사업규모 : 일반 국민 대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7. 사업 집행절차

-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민원 친절도 점검 등
  - 사업계획수립 → 계약체결 → 사업추진 → 검사 및 검수 → 사업완료
- 민원현장점검 및 민원행정서비스 선진사례 자료 수집 등
  - 사업계획수립 → 민원현장점검 및 선진사례 자료수집 → 결과분석
- 기타 민원서류 접수·처리 등

| 사 업 명       |  |  |  |  |  |  |
|-------------|--|--|--|--|--|--|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기획조정실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7000      | 7032   | 303         |
| 명칭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개선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금액<br>(B-A)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             |
| 행정서비스지원<br>인력경비 | 3,213        | 4,943        | 4,943 | 5,557        | 5,557 | 614 | 12.4        |

### 4. 사업목적

- 검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등 법무부 각급 시설에 배치된 사회복지요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 ② 추진경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계속

- 사업규모 : 18년 사회복지요원 규모 832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 사 업 명         |  |  |  |  |  |  |
|---------------|--|--|--|--|--|--|
| 정책연구개발사업(R%D)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기획조정실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7000      | 7033     | 300           |
| 명칭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정책연구개발사업 | 정책연구개발사업(R&D)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금액<br>(B-A)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             |
| 정책연구개발사업<br>(R%D) | 53           | 48           | 48 | 48           | 48 | -  | -           |

## 4. 사업목적

- 법무행정 수행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연구 개발
- 정책현안 연관성, 자체 연구용역비 활용가능성 등 평가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1999년 출연기관 경영혁신 방안에 의거, 법무부 산하단체인 형사정책연구원이 국무조정실로 이관됨에 딸 행정원 연구개발비 예산 중 일부를 매년 법무부 연구개발비로 계상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5~계속
- 사업규모 : 법무·검찰 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 사 업 명        |  |  |  |  |  |  |
|--------------|--|--|--|--|--|--|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11   | 14  | 기획조정실  |    | 020       | 022     |
| 명칭 | 일반회계 | 법무부 |        |    |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7000      | 7034    | 500          |
| 명칭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법무행정정보화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법무행정정보화<br>(정보화) | 26,868       | 31,217       | 31,217 | 30,595       | 30,595 | △622        | △2                  |

### 4. 사업목적

-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법무부의 비전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한 법무행정 구현
- 정보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와 내부행정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 및 국민의 편의성 제고
-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
- 법무부 주요 정보시스템(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호, 교정, 출입국) 구축 및 운영·유지 관리
- 법무부 및 198개 소속기관 정보통신망, 전산장비 운영·유지 관리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사업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 「출입국관리법」, 「보호관찰법」, 「보호소년법」, 「형집행법」 등

### □ 추진경위

- 1981. ~ : 각 실·국별로 독자적인 전산화 추진  
<출입국('81), 교정('88), 보호('91), 본부('95)>
- 2000. 3월 : 정보화추진체계 통합을 위한 정보화담당관 신설
- 2000. 12월 : 법무정보화 종합발전계획 수립
  - 1단계 :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2001년)
  - 2단계 : 지식정보화 토대 구축(2002년)
  - 3단계 : 지식기반 활용 정착(2003년)
- 2001. 12월 : 법무정보화 5개년 계획 수립
- 2003. 8월 : 법무정보화 로드맵 2007 수립
  - 정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IT-KOREA)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
  - 법무정보화 종합발전계획을 로드맵 2007로 확대
- 2008. 5월 : 차세대 법무정보화 5개년(2008~2012) 계획 수립
  - 정보인프라확충, 대국민서비스개선, 정보보호체계확립 등 2008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
- 2013. 12월 : 법무정보화 중장기 발전 전략(5개년 계획, 2014~2018) 수립
  - 법무정보화 비전 수립(디지털 법무 3.0), 법무정보개방, 빅데이터·신기술 등 5대 전략분야, 68개 정보화 과제 마련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법무부(4실(본부) 3국 9관, 47개 부서) 및 198개 소속기관(법무연수원 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범죄예방 93, 교정 56, 출입국 46) 정보화업무 지원
  - 법무부 21,825명(본부 679명, 소속기관 21,146명) 전산장비 지원
  - 대민서비스(보호관찰 18만명, 교정 5만명, 출입국자 8,000만명, 체류외국인 204만명) 이용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체류외국인, 출입국자, 법무부 및 198개 소속기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          |                  |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 → 조달계약 의뢰 → 조달공고 및 입찰 → 기술평가 및 협상 → 조달계약체결 (조달청) → 사업추진 → 감리 → 검사 및 검수 → 사업완료

### ※ 근거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 전자정부법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 사 업 명                |  |  |  |  |  |  |
|----------------------|--|--|--|--|--|--|
|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대변인실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7000       | 7037                   | 300                    |
| 명칭 | 법무및검찰 행정지원 | 서민·사회적약자 지원<br>법무정책 홍보 | 서민·사회적약자 지원<br>법무정책 홍보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서민·사회적<br>약자 지원<br>법무정책 홍보 | 833          | 919          | 919 | 1,036        | 1,036 | 117         | 12.7                |

### 4. 사업목적

-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각종 법무정책을 수혜 대상들이 접근하기 쉬운 매체를 활용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강화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2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 2

## ② 추진경위

- 법무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9988 법률지원단 등 각종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제도 시행과 내용을 알리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정책 시행 사실조차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10년부터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서민들이 접하기 쉽고 알기 쉬운 홍보매체를 통해 법무부 시행 각종 서민지원 정책의 시행사실과 내용을 알려 보다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서민 등 사회적 약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          |                  |

##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 사 업 명            |  |  |  |  |  |  |
|------------------|--|--|--|--|--|--|
|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정보화)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기획조정실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br>및 안정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7000        | 7038        | 300                  |
| 명칭 |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 |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br>(정보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형사사법공동<br>시스템운영 | 7,968        | 9,118        | 9,118 | 10,024       | 10,024 | 906         | 9.9                 |

### 4. 사업목적

-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사사법 공동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
- 사건관계인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건의 실시간 진행정보,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등 민원 서비스, SMS 등 통지서비스 등 온라인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관리
- 운영환경
  - 서비스 환경 :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 24시간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상담창구 운영

- 서비스 대상 기관 및 사용자
  - 형사사법기관 : 약 15만명 이상
- 경찰, 해경,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
- 일반 국민 : 사건관계인 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동의 및 철회) ① 제3조제1항의 동의는 피의자가 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서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라 있는 사실을 통지받을 전자적 수단(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말한다)을 적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제3조제1항의 동의를 철회하려면 약식명령 청구 전까지 종이 문서나 전자문서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철회를 접수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그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해당 사건의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동의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는 전자서명을,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제3항의 철회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때 피의자는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전자정부」 핵심사업으로 추진, 2010년 7월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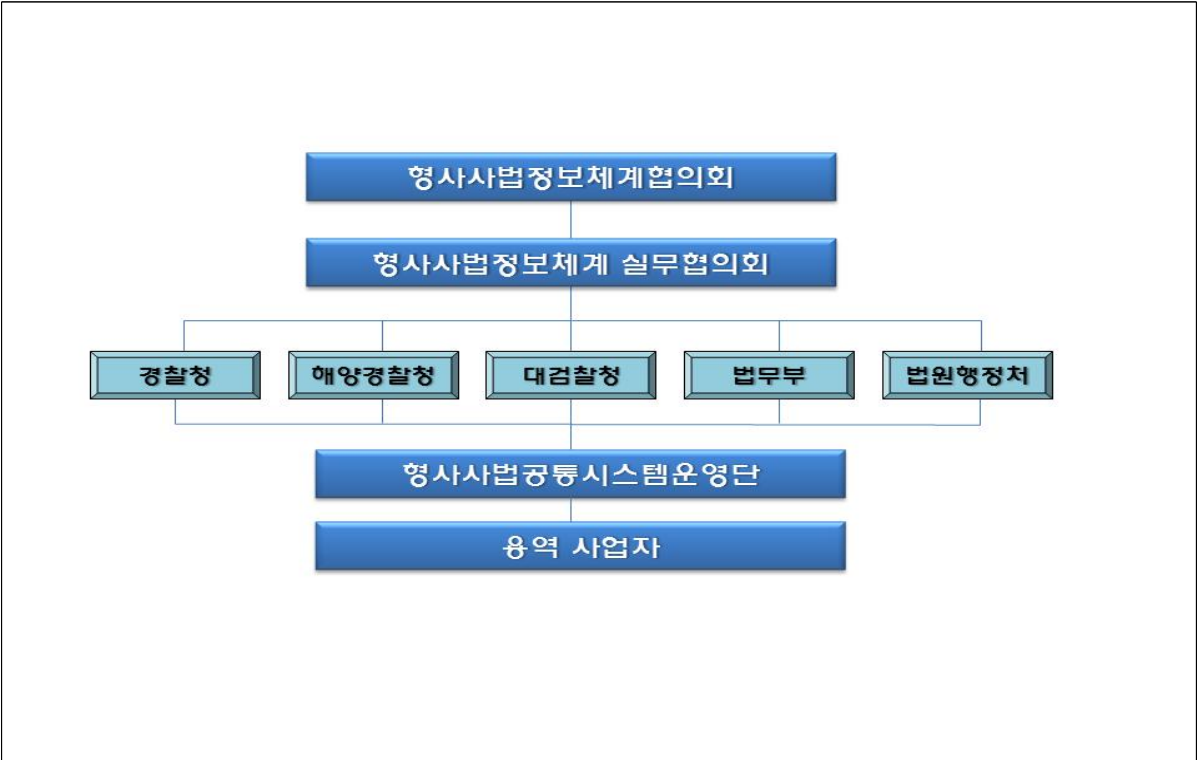
- ‘04년부터 법무부, 검찰, 경찰, 법원 공동으로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09. 10. 시스템 구축 완료
- ‘10. 05. 형사사법기관 및 대국민 서비스 시행
  - 경찰, 해경, 검찰, 법원, 법무부 등 주요 형사사법기관 대상
  - 사건관계인 대상(피의자,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 기존 종이중심의 업무환경을 전자화를 통하여 신속·투명한 형사사법서비스 환경으로 개선
  - 기존의 비효율적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단순 약식사건의 경우도 사건접수부터 선고까지 약 47일 소요되던 것을 약 32일로 대폭 단축
- 형사사법 비용절감 효과 발생
  - 전자적 업무처리에 따른 단위 업무시간 단축, 종이절감·우편송달 및 벌과금 집행 관련 사회비용 절감 등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1,027억원 (2005~2019년)
- 사업기간 : 2005~2009년, 계속(2010이후 운영)
- 사업규모 : ’19년 100억원(’ 18년까지 기투자액 : 927억원)
  - ※ ’ 05 - ’ 09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구축(269억원)
  - ※ ’ 10 - ’ 19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등)(758억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 사업 수혜자 : 형사사법 관련기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해             | 당        | 없 음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기획조정실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7000      | 7039     | 300             |
| 명칭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기타법무시설조성 |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기타법무시설<br>개보수 및 확충 | 13,973       | 12,631       | 12,631 | 9,260        | 9,260 | Δ3,371      | Δ26.7               |

## 4. 사업목적

- 검찰청, 소년원,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 기타법무시설의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 리모델링 및 개보수를 통한 사무환경 개선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② 추진경위
  - 2013년 신규사업으로 인정
  - 노후 청사 및 시설 개보수를 위한 매년 연차별 소요액을 투입하여 사무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
- 사업규모 : 일반 국민 대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무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          |                  |

## 7. 사업 집행절차

○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 사업구상 → 예산평성 → 설계발주 → 공사발주 → 공사준공

| 사 업 명    |  |  |  |  |  |  |
|----------|--|--|--|--|--|--|
| 법무시설행정지원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일반회계 | 법무부 | 운영지원과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7000      | 7039     | 301      |
| 명칭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기타법무시설조성 | 법무시설행정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법무시설행정지원 | -            | -            | -  | 2,697        | 2,697 | 2,697       | 순증                  |

### 4. 사업목적

- 정부과천청사 1동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입주기관 청사 임시 이전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지진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② 추진경위
  - '2019년 정부과천청사 1동 내진보강 공사를 위해 행정안전부(과천청사관리소)에서 입주기관의 청사 임시이전 요구(1동⇒5동)
  - '행정안전부(과천청사관리소)에서 2019년 정부과천청사 1동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 공사가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 등 입주기관의 이전비용 또한 반영
  - \* 임시 이전기간 : 2019. 10. ~ 2020. 3.(6개월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2020
- 사업규모 : 2,697백만원\*2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본부 소속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법무시설행정지원

- 예산편성 → 공사발주 → 공사준공

## Ⅱ. 교도작업특별회계

# 1. 세 입

|        |
|--------|
| 사 업 명  |
| 교도소 수입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br>(B-A) | (B-A)/A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         |
| 교도소 수입 | 66,483       | 75,966    | 75,966 | 74,809 | 74,809 | △1,157      | △1.5    |

#### 가.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 ① 특별회계의 세입(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작업수입 등)
  -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나. 세입 개요

- 교도작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수입

####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55,881 | 62,381 | 66,483 | 65,814 |

| 사 업 명  |
|--------|
| 기타 잡수입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기타 잡수입 | 243          | 338       | 338   | 338   | 338   | -     | -       |

#### 가.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 나. 세입 개요

○ 작업부산물, 불용품 매각,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356  | 157  | 243  | 92   |



|         |
|---------|
| 사 업 명   |
| 전년도 이월금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br>(B-A) | (B-A)/A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         |
| 전년도 이월금 | 18,218       | 8,000     | 8,000 | 7,268 | 7,268 | △732        | △9.2    |

#### 가.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잉여금의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나. 세입 개요

- 전년도 세계잉여금(전년도 총세입액 - 전년도 총세출액)

####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17,379 | 31,968 | 18,218 | 7,268 |

|        |
|--------|
| 사 업 명  |
| 예탁원금회수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예탁원금회수 | 12,000       | 43,642    | 43,642 | 42,000 | 42,000 | △1,642 | △3.8    |

## 가. 법적 근거

###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및 제7조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 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나. 세입 개요

###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단기 예탁 후 원금회수 수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11,952 | 9,770 | 12,000 | 43,642 |

|          |
|----------|
| 사 업 명    |
| 기금예탁이자수입 |

(단위: 백만원, %)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 |       | 2019년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A) | 본예산   | 추경(B) | (B-A) | (B-A)/A |
| 기금예탁이자수입 | 622          | 1,979     | 1,979 | 2,402 | 2,402 | 423   | 21.4    |

## 가. 법적 근거

###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및 제7조

####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 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나. 세입 개요

###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다.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납액 | 233  | 186  | 622  | 1,309 |

## 2. 세 출

| 사 업 명 |  |  |  |  |  |  |
|-------|--|--|--|--|--|--|
| 교도작업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교도작업 | 법무부 | 교정본부   |    | 020     | 022   |
| 명칭 | 특별회계 |     |        |    | 공공질서및안정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500 | 1535        | 300  |
| 명칭 | 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교도작업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교도작업  | 49,548       | 52,881       | 52,881 | 53,517       | 53,517 | 636         | 1.2                 |

### 4. 사업목적

- 정부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납품, 작업장려금 지급 등 일련의 작업운영 지원
- 수행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습득을 통한 사회 적응능력 배양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76조, 교도 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형집행법

제65조(작업의 부과)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6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68조(외부통근 작업 등)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①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제68조의 작업, 제69조제2항의 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한 때에는 휴일이나 그 밖에 해당 수용자의 작업이 없는 날에 접견 또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거나 훈련을 받게 하기 전에 수형자에게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71조(휴일의 작업)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청소·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제72조(작업의 면제)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부상·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다.



제73조(작업수입 등)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위로금·조위금)①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1.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한 때
2.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75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로금 또는 조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6조(위로금·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①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74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公課金)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 ② 추진경위

- 1961년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과 함께 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으로 시작
- 전국 교정시설내 수형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 수익금으로 작업재료 구입,

작업직종 개발, 경제적 자립기반 자금인 작업장려금 지급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행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22천명의 수행자가 교도작업 참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행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수주활동 → 정부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주문접수 → 원가계산 → 작업명령 → 소요재료 불출 → 제품생산 → 제품운송 → 납품/작업장려금 계산고 지급 → 고지서 발부 → 징수

| 사 업 명 |  |  |  |  |  |  |
|-------|--|--|--|--|--|--|
| 직업훈련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교도작업 | 법무부 | 교정본부   |    | 020     | 022   |
| 명칭 | 특별회계 |     |        |    | 공공질서및안정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500 | 1535        | 301  |
| 명칭 | 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직업훈련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직업훈련  | 5,298        | 5,826        | 5,826 | 5,426        | 5,426 | △400        | △6.9                |

### 4. 사업목적

- 수형자에게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출소 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기술교육 사업으로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
- 수형자 출소 후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률 제27조

#### ○ 형집행법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

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② 추진경위

- 1969년부터 전국 교도소에 노동부 인가 공공직업훈련교도소를 설치하여 수형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함
- 추진배경 :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 및 출소 후 재범방지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35개 교정시설에서 17개 직종 17종목 6,922명 직업훈련 참여, 여성 및 장애인 특성화 전문직업훈련 실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교정기관별 직업훈련 직종, 인원 등 계획수립→ 법무부장관 승인→ 직업훈련 시설·장비확보→ 교정기관별 직업훈련 실시 → 기술자격 검정응시 → 직업훈련 수료

| 사 업 명 |  |  |  |  |  |  |
|-------|--|--|--|--|--|--|
| 시설보완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교도작업 | 법무부 | 교정본부   |    | 020     | 022   |
| 명칭 | 특별회계 |     |        |    | 공공질서및안정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500 | 1535        | 302  |
| 명칭 | 교정활동 |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 시설보완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시설보완  | 2,126        | 7,297        | 7,297 | 10,930       | 10,930 | 3,633       | 49.8                |

## 4. 사업목적

- 작업장 신·증축, 작업장 환경개선,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생산성 제고능력 배양
- 교도작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신설, 개량, 확충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교도작업의 효율성 제고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 내지 제76조
- ② 추진경위
  - 1961년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과 함께 교도작업 수익금으로 작업시설 신·증축, 작업환경 개선, 최신 장비 설치 등 교도작업 발전기반 조성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22천명의 수형자가 참여하는 교도작업 작업장의 신축·개축, 노후작업장 환경개선 및 최신 생산장비 교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교도작업 실시기관 시설보완 청구 → 예산재배정 → 집행 → 노후장비 교체, 신규설비 투자 등의 순환과정

|            |
|------------|
| 사 업 명      |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교도작업 | 법무부 | 교정본부   |    | 020     | 022   |
| 명칭 | 특별회계 |     |        |    | 공공질서및안정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7000      | 8910       | 890        |
| 명칭 | 법무및검찰행정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공공자금관리기금<br>예탁 | 32,787       | 63,335       | 63,335 | 56,376       | 56,376 | △6,959      | △11.0               |

### 4. 사업목적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교도작업 운영자금 기간별 소요일정에 따른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 도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및 제7조
- ② 추진경위
  - 교도작업특별회계 여유 운영자금 활용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세계잉여금 규모를 감안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교특회계 효율적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국고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예수계획 제출요청 → 법무부 직업훈련과 교도작업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예수계획 수립 제출 → 한국은행에 교특회계 여유자금 공자기금으로 예탁

### Ⅲ.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 수 입

|         |
|---------|
| 사 업 명   |
| 기타 재산수입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기타 재산수입 | 520          | -            | -  | 426          | 426 | 426         | 순증                  |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 세입 개요

- 기금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과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수납액 | 182   | 10    | 686   | 520   |

|       |
|-------|
| 사 업 명 |
| 변 상 금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변상금 | 1,198        | 1,075        | 1,075 | 1,281        | 1,281 | 206         | 19.2                |

1. 법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4조

2. 세입 개요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구조금을 선지급하고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가해자에게 재산 등 강제환수 추진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수납액 | 209   | 678   | 1,014 | 1,198 |

|          |
|----------|
| 사 업 명    |
| 기타경상이전수입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기타경상이전수입 | 2,004        | -            | -  | 1,949        | 1,949 | 1,949       | 순증                  |

### 1. 법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4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2. 세입 개요

-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세입조치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수납액 | 1,479 | 2,034 | 2,725 | 2,004 |

|               |
|---------------|
| 사 업 명         |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통화금융기관<br>예치금 회수 | 16,712       | 19,960       | 19,960 | 15,006       | 15,006 | △4,954      | △24.8               |

### 1. 법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3조

### 2. 세입 개요

- 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원금 중 일부를 기금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회수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2015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수납액 | 1,837 | -     | 6,882 | 16,712 |

|         |
|---------|
| 사 업 명   |
| 일반회계전입금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일반회계전입금 | 80,110       | 80,110       | 80,110 | 82,440       | 82,440 | 2,330       | 2.9                 |

### 1. 법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2. 세입 개요

- 해당연도 예상 벌금수납액의 6%를 바탕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을 산출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수납액 | 53,006 | 86,014 | 94,856 | 80,110 |



## 2. 지출

| 사 업 명           |  |  |  |  |  |  |
|-----------------|--|--|--|--|--|--|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범죄피해자<br>보호기금 | 법무부 | 인권국    | 기금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br>및 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100 | 1135                | 300                |
| 명칭 | 인권활동 | 강력범죄 등 피해자<br>보호·지원 | 범죄피해자 치료<br>및 자립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100, 10~15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범죄피해자 치료<br>및 자립지원 | 16,449       | 21,189       | 21,189 | 19,620       | 19,620 | △1,569      | △7.4                |

### 4. 사업목적

-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 기타(법률구조안내, 현장정리, 홍보·교육)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돕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범죄의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
- 국가 위탁운영기관인 스마일센터 통해 강력범죄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으로 심리적 안정을 요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및 임시 거처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움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복구지원 등), 제34조(보조금의 교부)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 범죄피해자보호법

#####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제34조(보조금의 교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자산
  2. 1년 이상의 사업운영 실적
  3. 사업수행 능력
  4. 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 ②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2006. 11.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무부에 등록하여 활동중임
- ※ 2008. 9.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전국적인 홍보 및 지원 등의 수행을 위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설립,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총괄 업무를 담당

### <스마일센터>

- 2009년 연구용역 결과,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스트레스장애환자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심하고 정신질환자집단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확인
- \* 강력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김지영, 박형민)
- 이에 따라, '10. 7. 국가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치료 및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스마일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2017년까지 11개소 설치됨

### <치료비 지원>

-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제공의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

- 그러나 지금까지 성폭력·가정폭력의 경우에만 관련 법령에 의거 치료비를 전액지원하고, 다른 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자구조금 외에 국가적 지원은 전무
- 이에 따라 '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설립을 계기로 전체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을 추진

####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 주요 강력범죄 피해현장에 대한 정리를 지원하여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는 피해자와 유족의 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 도모('16년부터 경찰청에서 사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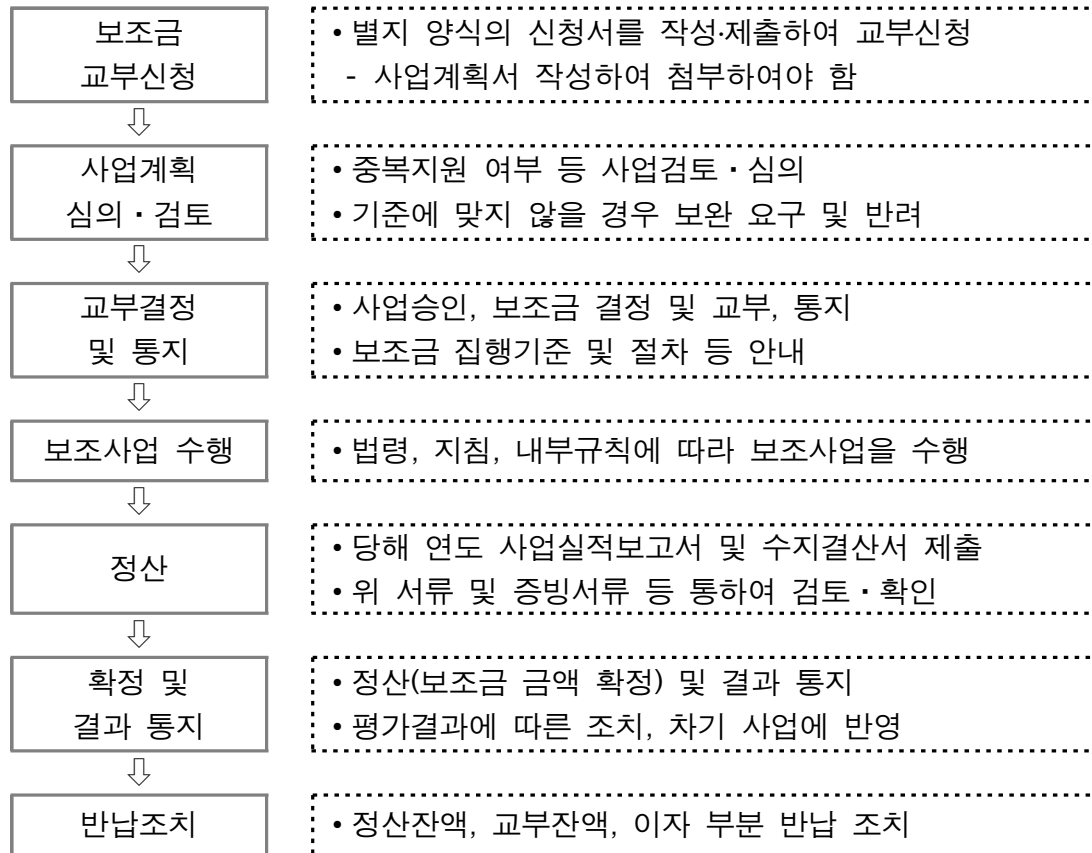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사업규모 : 60개 전국 피해자지원센터 및 13개 스마일센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 검찰청, 경찰청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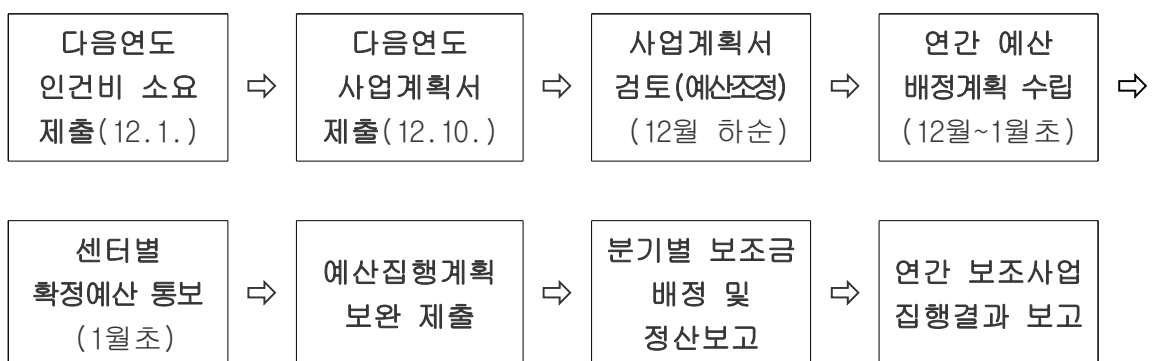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약 10~15%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       |
| 스마일센터         | 100%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및 제34조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약 50%<br>(신체상해<br>피해자의<br>변호사보수<br>지원) | 법률구조법 제4조           |

##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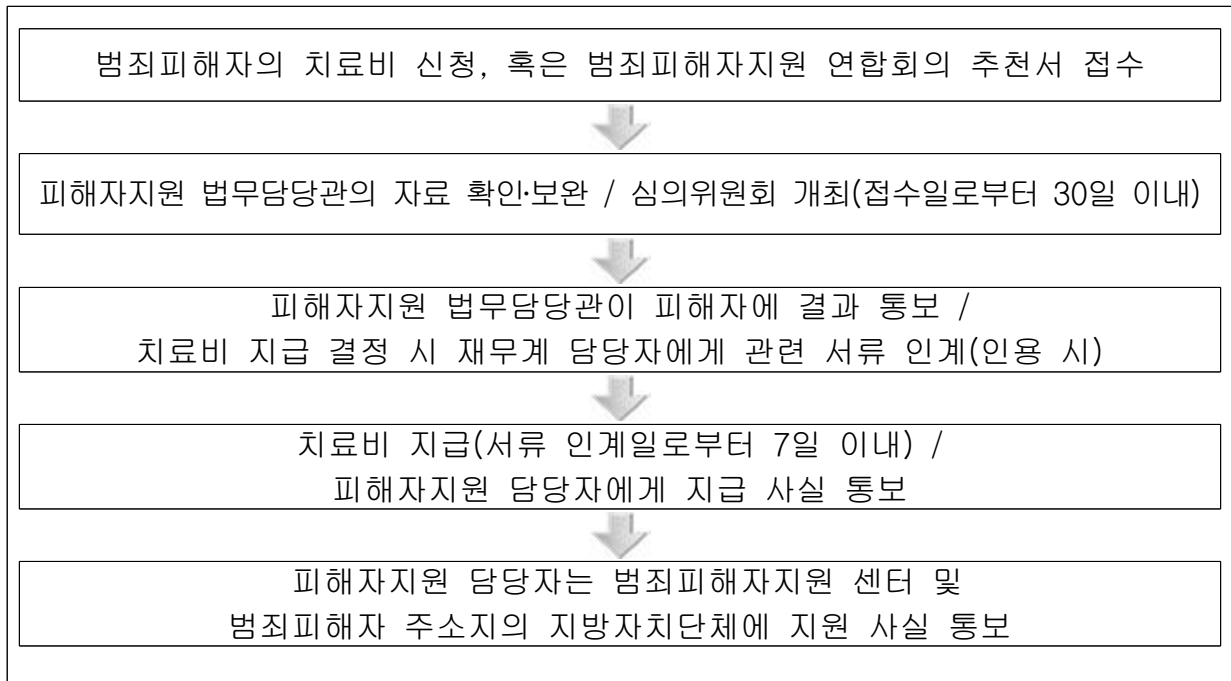
### 가.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운영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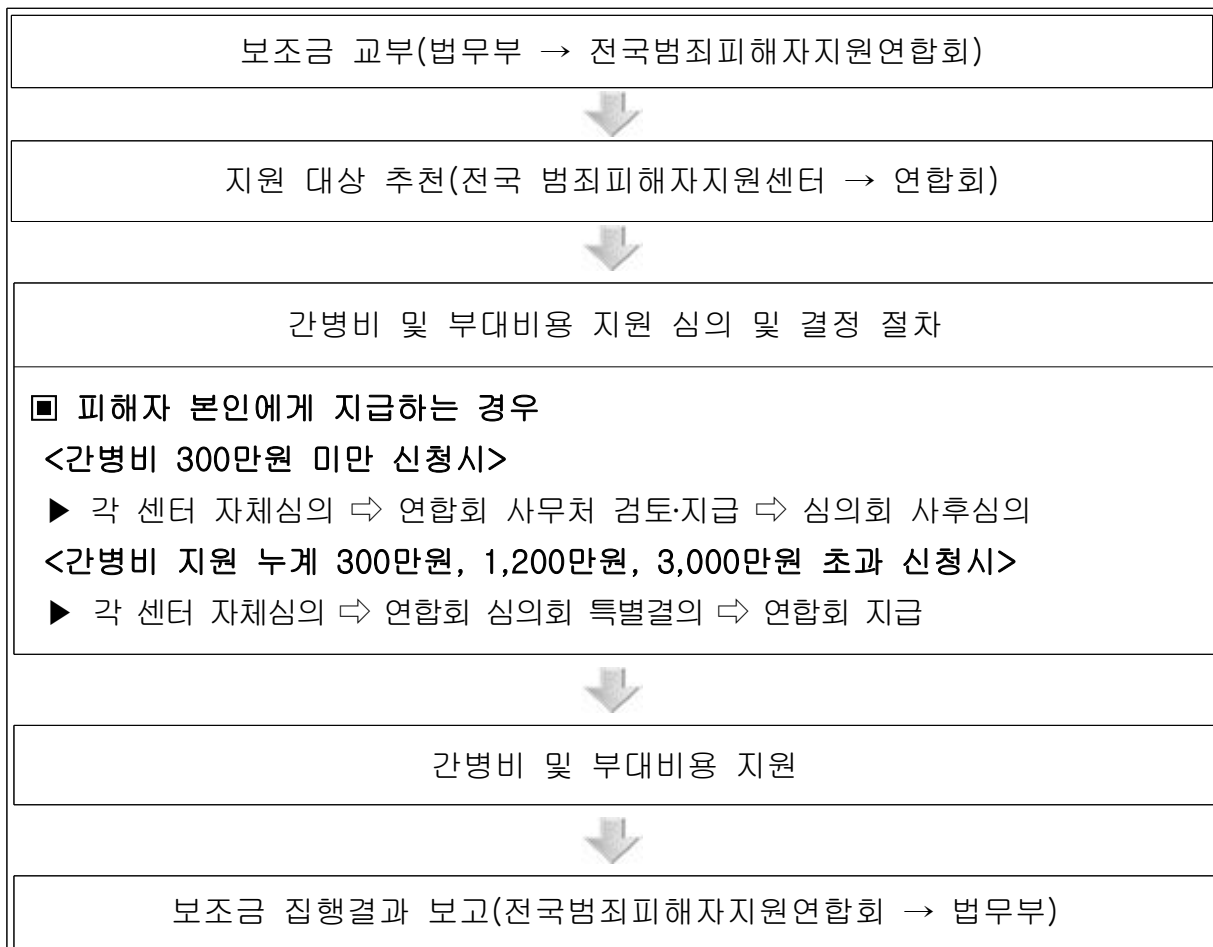
### 나. 스마일센터 운영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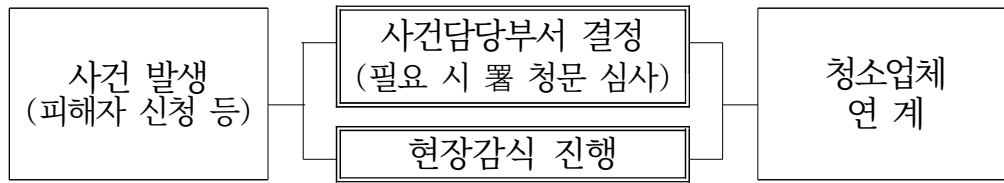
다. 범죄피해자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지원(검찰청)



라. 범죄피해자 간병비 및 치료부대비용 지원



마.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지원





| 사 업 명   |  |  |  |  |  |  |
|---------|--|--|--|--|--|--|
| 범죄피해구조금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범죄피해자<br>보호기금 | 법무부 | 인권국    | 기금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br>및 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100 | 1135                | 302     |
| 명칭 | 인권활동 | 강력범죄 등 피해자<br>보호·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범죄피해구조금 | 9,414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 -                   |

### 4. 사업목적

-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 및 생활안정을 도모

※ 범죄피해구조금은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근거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7조, 제16조 ~ 제32조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 제40조

## ② 추진경위

-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으로 구조금 지급 개시('87)
-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05. 12. 29.)
  - 구조요건 완화→범죄피해자의 「생계유지곤란사유」 삭제
-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보호법 통합 법률안 국회제출('08.11.28.)
  - 국민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양 법률을 「범죄피해자보호법」 하나의 법률로 통합
- 범죄피해자구조금 업무 검찰국 → 인권국 이관('09. 1.)
-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09. 4. 20.)
  - 유족구조금 :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상향
  - 장해구조금 : 300~600만원 ⇒ 600~3,000만원 상향
  - 장해구조대상 확대 1~3급 ⇒ 1~6급
-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10. 5. 14.)
  - 유족구조금 : 최대 3,000만원 ⇒ 5,400만원
  - 장해구조금 : 최대 3,000만원 ⇒ 4,500만원
  - 장해구조 대상 확대 1~6급 ⇒ 1~10급
  - 가해자불명, 무자력 요건 삭제, 중상해구조금 신설, 신청기간 연장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12. 6. 29.)
  - 범죄피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 중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던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배수 1/6을 곱하여 구조금 산정 ⇒ 위 사람들 중 피해자의 부모, 자녀의 경우에는 3/6으로 배수 상향조정
-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14. 10. 15.)
  - 친족간 범죄에도 구조금 '전부' 지급 가능
-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14. 12. 15.)
  - 구조금 지급액 상향 조정(평균노임 36개월 ⇒ 48개월, 33% 증가)
- 범죄피해자 권리 의무고지제도 시행('15. 4. 14.)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17. 12. 19.)
  - 장해등급을 '1~10급 → 1~14급'으로 확대
  - 정신적 피해 보상 기준을 '일주일 이상 입원치료 → 3일 이상 입원치료'로 확대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지방검찰청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          |                  |

## 7. 사업 집행절차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신청→  
 → 심의회 심의 → 구조금 지급  
     → 기각  
     → 기각 → 재심신청 →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구조금 심의 후,  
         지급·기각 결정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24조~제27조

| 사 업 명            |  |  |  |  |  |  |
|------------------|--|--|--|--|--|--|
|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범죄피해자<br>보호기금 | 법무부 | 인권국    | 기금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 및<br>안전 | 법무 및 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100 | 1135        | 306                 |
| 명칭 | 인권활동 |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br>강화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범죄피해자 등의<br>신변보호 강화 | 1,060        | 1,086        | 1,086 | 1,086        | 1,086 | -           | -                   |

### 4. 사업목적

- 성폭력범죄, 흉악범죄 등 중대범죄의 범죄피해자나 증인이 보복범죄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위치확인장치를 작동시켜 보복범죄 피해를 줄이는 신변보호강화 조치
- 보복범죄를 피하고자 거주지를 변경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이전비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 2011. 5. 30.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2012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및 확정

- 2012. 4. 16.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지침 제정, 시행

#### ○ 임시숙소 지원

- '13년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강력범죄 피해자 등 대상 임시숙소 숙박비 요구, 예산 확정되어 '14년부터 사업 시작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검찰청, 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강력범죄 피해자 등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범죄피해자나 신고자, 증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 위치확인장치

- (검찰) 피해자에게 보복 우려 및 희망의사 확인 ⇨ 희망시 피해자지원담당관실로 안내(관련서류 인계) ⇨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피해자에게 신청서 접수 및 담당검사 결재(전결) 받아 비상호출기 지급, 사용방법 설명
- (경찰) 기기 지급 → 112시스템 신변보호대상자 등록 → 긴급상황 시 보호 요청(기기 작동) → 상황실 접수 → 지령 및 실시간 위치확인 → 경찰 출동 → 안전 확보

○ 이전비

- ▣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다른 곳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이사비 실비 지원

|      |                                                                                                                                                            |
|------|------------------------------------------------------------------------------------------------------------------------------------------------------------|
| 신청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해 사건을 수사중 또는 기소한 각 청 피해자지원담당자</li> <li>- 피해자 등으로부터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이전비 관련 영수증,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된 신청서 접수</li> </ul> |
| 지원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담당 검사에게 신청서 인계</li> <li>- 검사는 신청서를 인계받은 후 소속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신속히 지원 여부에 대해 결정</li> </ul>              |

○ 임시숙소 지원

- 범죄피해 발생 → 임시숙소 연계 → 지방청·경찰청 보고 → 숙박비·긴급부대비 지급

| 사 업 명            |  |  |  |  |  |  |
|------------------|--|--|--|--|--|--|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범죄피해자<br>보호기금 | 법무부 | 인권국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 및<br>안전 | 법무 및 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100 | 1135        | 301                 |
| 명칭 | 인권활동 |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br>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O  |    |    |    |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형사조정을 통한<br>피해회복 지원 | 5,159        | 4,531        | 4,531 | 4,531        | 4,531 | -           | -                   |

### 4. 사업목적

- 검찰청내에 지역사회에서 신뢰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및 소년·의료·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피의자간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사적영역에서의 분쟁 해결능력을 증대하고, 형사사법의 비용을 절감하며,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범죄피해자의 종국적이며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도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장 형사조정 제41조 ~ 46조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4. 8. 26.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안' 의결
  - 2006. 4. 20. 대검찰청 '고소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마련
  - 2007. 1. 1. 형사조정제도 전국청 자율적 확대 지시, 같은 해 8. 전국청 시행
  - 2010. 4. 21.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형사조정 근거규정 신설
  - 2017. 4. '형사조정 조기 활용 확대 방안' 시행 : 검찰 직수 고소사건 및 경찰 접수 고소사건 등에 대해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형사조정 제도 활용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검찰청(형사조정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고소사건 분쟁당사자, 범죄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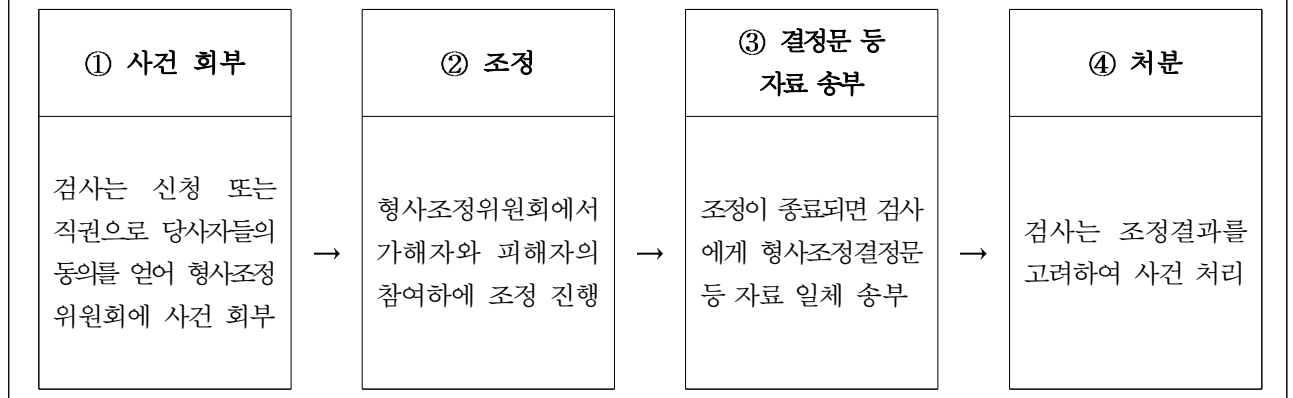
### ○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장 형사조정 제41조 ~ 46조

※ 형사조정실무운용지침(대검예규 제493호, 2009. 10. 29.) 제정하여, 그동안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시행해온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를 2009. 11. 10.부터 검찰청으로 이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이 위원장 및 위원 등 위촉



○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범죄피해자<br>보호기금 | 법무부 | 인권국    | 기금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 및<br>안전 | 법무 및 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100 | 1136            | 300           |
| 명칭 | 인권활동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100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진술조력인 양성<br>및 배치 | 612          | 675          | 675 | 874          | 874 | 199         | 29.5                |

### 4. 사업목적

- 법무부장관이 진술조력인\*을 양성 및 배치하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 \* 진술조력인 :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수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와 수사기관, 법원 간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준용)
- 「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27호)」 등

### ② 추진경위

#### < 제도 도입 및 시행 과정 >

- 여성가족부에서는 ‘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진술조사전문가 제도를 운용
- ‘12년 국가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 위해 여성가족부의 진술조사전문가 사업은 ‘13년까지 유지 후 폐지, 법무부 진술조력인 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여·야 합의<sup>1)</sup>
- ‘12. 11. 22. 국회 결과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여성가족부의 진술조사전문가 제도는 ‘13년까지 유지 후 폐지, ‘14년부터 법무부의 진술조력인 제도로 일원화
- ‘13. 12. 19.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 < 제도 추진 경과 >

- ‘13.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실시
- ‘13. 12. 진술조력인 48명 자격부여
- ‘14.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진술조력인 제도 지원 범위를 아동학대범죄까지 확대
- ‘19. 1. ‘현재 진술조력인 총 107명 양성, 상근 진술조력인 12명 전국 배치

##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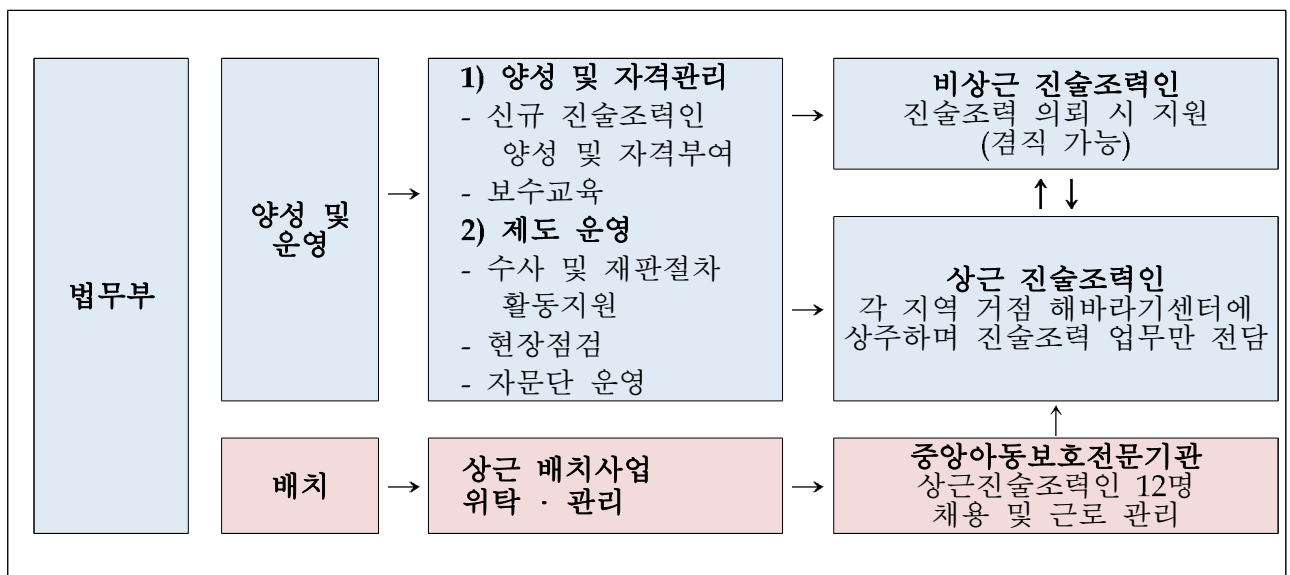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1) ‘12. 11. 22. 국회본회의 회의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표결 전에 이러한 내용의 발언 기록

- 사업규모 : '18년 1,722건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양성]직접수행, [배치]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양성]법무부, [배치]법무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사업 수혜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피해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10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br>아동복지법 제45조, 제46조, 제59조 |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범죄피해자<br>보호기금 | 법무부 | 인권국    | 기금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 및<br>안전 | 법무 및 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100 | 1136            | 305          |
| 명칭 | 인권활동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100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진술조력인 양성<br>및 배치 | 5,458        | 4,203        | 4,203 | 5,636        | 5,636 | 1,433       | 34.1                |

### 4. 사업목적

- 검사가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조력을 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 보장
-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만을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자 지원 도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30호) 등

② 추진경위

< 제도 도입 및 시행 과정 >

- '10. 10. 국가인권위,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등 법무부 등에 권고
- '10. 12. 법무부 인권국,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11년도 대통령연두 업무보고
- '11. 1. 법률조력인 도입방안 연구 용역 의뢰 및 '11. 5. 입법공청회 개최
- '11. 7. - 8.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및 부처 협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1. 9. 15),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조력인 지원 제도 규정
- '12. 3. 검사의 국선변호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공포
- '12. 3. 법률조력인(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제도 추진 경과 >

- '13. 6.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전체 성폭력 범죄피해자로 확대
- '13. 7.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 '14.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까지 지원대상 확대
- '16 1.~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17명 배치(해바라기센터 6개소, 법률구조공단 지부 1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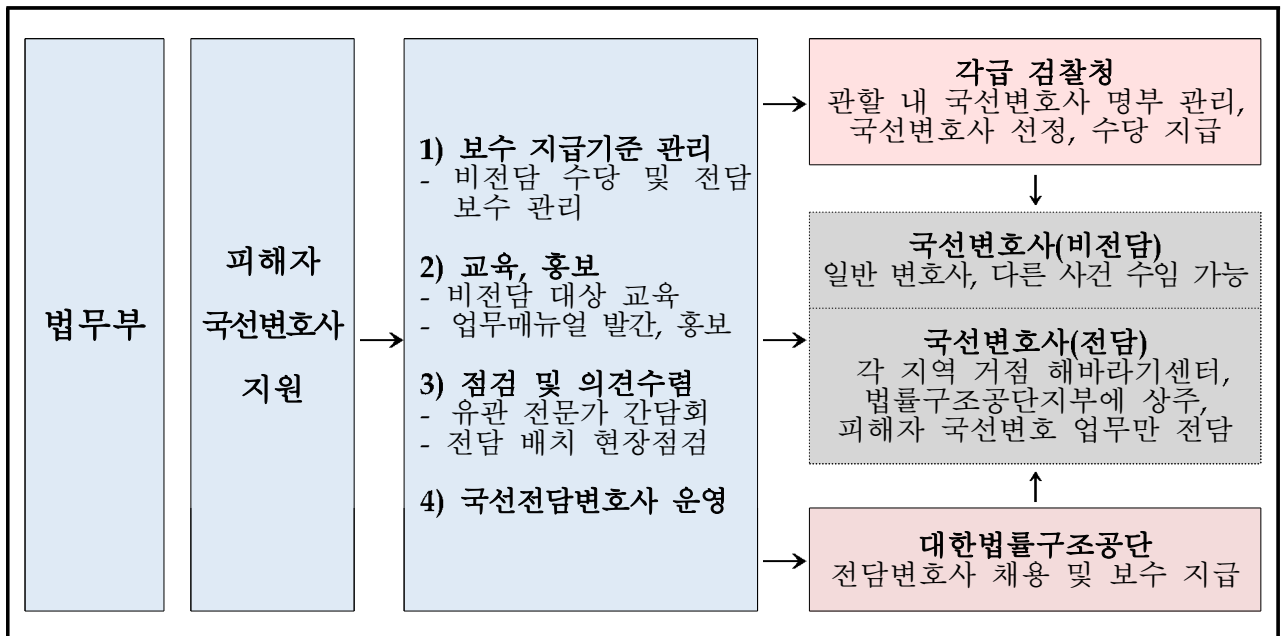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사업규모 : '18. 11. 기준 21,089건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전담]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비전담]법무부→각급 검찰청, [전담]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수혜자 :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00%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15호 |

## 7. 사업 집행절차



| 사 업 명      |  |  |  |  |  |  |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범죄피해자<br>보호기금 | 법무부 | 권익증진국<br>(여성가족부) |    | 020         | 022   |
| 명칭 |               |     |                  |    | 공공질서및안<br>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100 | 1136               | 303       |
| 명칭 | 인권활동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br>지원 | 성폭력피해자 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 ○  |    | 50~100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28,969       | 27,018       | 27,018 | 31,345       | 31,345 | 4,327       | 16.0                |

### 4. 사업목적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② 추진경위
  - '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95년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신규 지원('19.1월 현재 104개소)
  - '95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지원('19.1월 현재 31개소)



- '02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성폭력 응급키트 제작 지원
  - ※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개선대책, 2002년』의 일환
- '04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당초 복권기금)
- '08년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수립('08.4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지원
- '09년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09.10월)
- '10년 아동안전 보완대책 수립('10.6월), 친족피해자아동청소년전용쉼터 신규 설치 지원 ('19.1월 현재 4개소)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
  - '04년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시작('19.1월 현재 7개소)
  - '05년 원스톱지원센터(위기지원형) 운영시작('19.1월 현재 16개소)
  - '10년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통합형) 운영시작('19.1월 현재 16개소)
- '10년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 시작
- '1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11.10월) 및 보완 대책('11.12월) 수립
  - ※ 법 제정에 따라 의무경비 지원 시행(시설입소자 생계비, 퇴소자자립지원금 등)
-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13.6월)
-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돌봄비용·치료동행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지원('14년)
- 3종류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15.1월)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15.3월)
- 4대악근절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수립('16.1월)
-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수립('18.3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4년~(계속)
- 사업규모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31개소), 상담소(104개소), 해바라기센터(39개소),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1개소) 운영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100%), 지자체보조(50~10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 10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 지자체 보조        | 50~100%  |                                               |

## 7. 사업 집행절차

-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지자체 보조사업)

여성가족부(예산 편성 및 배정) → 시·도, 시·군·구(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관리)  
→ 상담소, 보호시설, 센터(피해자 상담 및 정산 보고 등)

- 성폭력 응급키트 제작·보급

· 여성가족부(키트 제작, 배포) → 시도·시군구(키트 배부 요청) → 의료기관(키트 사용)

-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 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중앙지원단) →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사업비 교부  
(여성가족부) → 사업 추진 및 정산보고(중앙지원단)

| 사 업 명           |  |  |  |  |  |  |
|-----------------|--|--|--|--|--|--|
|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  |  |  |  |  |  |

### 1.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계정 | 분야      | 부문    |
|----|--------|-------|--------|----|---------|-------|
| 코드 | 범죄피해자보 |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실  |    | 020     | 022   |
| 명칭 | 호기금    |       |        |    | 공공질서및안전 | 법무및검찰 |

| 구분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1100 | 1137            | 300             |
| 명칭 | 인권활동 |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 출자 | 출연 | 보조 | 융자 | 국고보조율(%) | 융자율 (%) |
|----|----|----|----|----|----------|---------|
|    |    |    | O  |    | 50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2017년<br>결산액 | 2018년 예산액(A) |        | 2019년 예산액(B) |        | 증감          |                     |
|---------------------|--------------|--------------|--------|--------------|--------|-------------|---------------------|
|                     |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금액<br>(B-A) | 증감률(%)<br>((B-A)/A) |
| 아동학대 피해자<br>보호 및 지원 | 18,266       | 19,302       | 19,302 | 22,500       | 22,500 | 3,198       | 16.6                |

### 4. 사업목적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설치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및 동법 제59조(비용보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용도)제1항 제4호

#### ② 추진경위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 마련(2000. 1. 아동복지법 개정)
- '00. 아동학대예방센터 17개소 설치
- '01. 10.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운영
- '06. 6.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
  - \* '00년 국가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사용하였으나 피해아동 낙인, 행위자 저항 심화 및 피해의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6년부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
- '13. 2. 국민 안전 관련 국정과제로 채택
  - \* (국정과제 80-1) 아동인권 및 안전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아동인권 기구를 설치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지원 및 동등한 출발 기회 제공
- '13. 12. 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회 통과, '14.1.28 공포, '14.9.29 시행
- '15. 1월 전국 52개소(중앙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17. 7월 현재 전국 61개소(중앙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17. 7월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 관련 국정과제로 채택
  - \* (국정과제 48)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강화
- '17. 12월 전국 61개소(중앙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18. 12월 현재 전국 63개소(중앙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업규모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60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100%), 지자체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만18세미만의 학대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1~단년도 계속 사업
- 사업규모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6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사업 수혜자 : 아동학대피해자, 피해자 가족 및 가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100%     |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9조<br>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 및 같은법<br>시행령 제5조                          |
| 지자체 보조        | 50%      |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9조<br>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 및 같은법<br>시행령 제5조<br>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 7. 사업 집행절차

